

발 간 등 록 번 호

11-1450000-00003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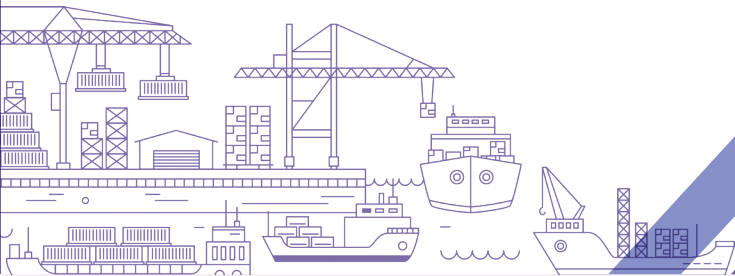
www.motie.go.kr

2021 ~ 2022

산업통상자원백서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통상편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자유무역협정정책관·자유무역협정교섭관·다자통상법무관

FTA 경제 네트워크



美·中·EU 등 거대 경제권, 인도·베트남 등 신흥시장과의 FTA 등 폭 넓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해외시장 확보 및 산업 경쟁력 제고

관련 현황

- ▶ '23.1.1일 기준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발효 기준), 세계 GDP 8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확보



구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고	의의
발효 (21건, 59개국)	 칠레	발효('04.4.1.)	'03.2.15. 서명 '04.2.16. 국회비준동의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06.3.2.)	'05.8.4. 서명 '05.12.1. 국회비준동의	ASEAN 시장 교두보
	 EFTA ¹⁾	발효('06.9.1.)	'05.12.5. 서명 '06.6.30. 국회비준동의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²⁾	발효('07.6.1.)	'07.6.1. 상품 / '09.5.1 서비스 '09.9.1. 투자발효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발효('10.1.1.)	'09.8.7. 서명 '09.11.6. 국회비준동의	BRICs국가, 거대시장
	 EU	잠정 발효('11.7.1) 전체 발효('15.12.13)	'10.10.6. 서명 '11.7.1. 국회비준동의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발효('11.8.1)	'11.3.21. 서명 '11.6.29. 국회비준동의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12.3.15.) 개정개정서 발효('19.1.1.)	'07.6.30. 서명 '10.12.3. 추가협상타결 '18.9.24. 개정개정서 서명 '18.12.7. 국회비준동의	세계 최대경제권 시장 진출 기반
	 터키	기본·상품협정발효('13.5.1.) 서비스·투자협정 발효('18.8.1.)	'12.8. 기본·상품협정 서명 '12.11. 기본·상품 협정 국회비준 동의 '15.2.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15.11. 서·투협정 국회 비준 동의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14.12.12.)	'14.4.8. 서명 '14.12.2. 국회비준동의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발효('15.1.1.)	'14.9.22. 서명 '14.12.2. 국회비준동의	북미 선진시장
	 중국	발효('15.12.20.)	'15.6.1. 서명 '15.11.30. 국회비준동의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구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고	의의
발효 (21건, 59개국)	 뉴질랜드	발효('15.12.20.)	'15.3.23. 서명 '15.11.30. 국회비준동의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발효('15.12.20.)	'15.5.5. 서명 '15.11.30. 국회비준동의	우리의 주요 투자대상국
	 콜롬비아	발효('16.7.15.)	'13.2.21. 서명 '14.4.29. 국회비준동의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온두라스, 니카라과('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파나마('21.3.1.) 중미 5개국 ³⁾		'18.2.21. 서명 '19.8.2. 국회비준동의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발효('21.1.1.)	'19.6.10. 원칙적타결선언 '19.8.22. 서명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 ⁴⁾	발효('22.2.1.)	'20.11.15. 서명 '21.12.2. 국회비준동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발효('22.12.1.)	'21.5.12 서명 '22.9월 국회비준동의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발효('22.12.1.)	'21.10.26. 서명 '22.9. 국회비준동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인도네시아	발효('23.1.1.)	'20.12.18. 서명 '21.6. 국회비준동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타결	 필리핀	타결('21.10.)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3)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4)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포함 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6)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7)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인니, 베트남, 말련,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피지
- 기존 FTA와는 상이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정으로, 직접적인 시장개방 요소 미포함

8) PA(태평양동맹)(4개국) :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9) CPTPP(포괄적·점진적한태평양동반자협정) :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



Part 01

수출 플러스 추진

제1절 수출입 동향	1
1. 주요 특징 및 성과	1
2. 품목·지역별 동향	2
제2절 수출 플러스 전략	5
1. 개요	5
2. 추진 현황	5
3. 향후 계획	13

Part 02

외국인 투자 및 유턴 활성화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성과	14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4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성과	15
제2절 투자환경 개선 및 지원 강화	17
1.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수립	17
2.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추진	18
3. 현금지원제도 개선	19



제3절 국내기업 복귀 지원	21
1. 국내복귀 지원제도	21
2. 국내복귀 동향	25

Part 03

통상정책 방향

제1절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에 적극 대응	28
1. 개요	28
2. 추진 현황	30
3. 향후 계획	34
제2절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협력 추진	35
1. 개요	35
2. 추진 현황	36
제3절 신시장 미래협력 기반 구축	43
1. 개요	43
2. 추진 현황	43
제4절 신통상규범 주도	52
1. 개요	52
2. 추진 현황	53
3. 향후 계획	57

Part 04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대

제1절 전략적 FTA 추진 59

- 1. 개요 59
- 2. 추진 현황 60

제2절 다자간 통상 네트워크 강화 77

- 1. 개요 77
- 2. 추진 현황 77
- 3. 향후 계획 87

제3절 다자협력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 88

- 1.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88
- 2.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복원 노력 95
- 3. 주요 다자경제협력체 무역·투자분야 논의 대응 99
- 4. WTO 통상분쟁 대응 103



Part 05

급변하는 환경 속 무역안보 강화

제1절 환경변화에 따른 무역안보 정책 추진 108

1. 개요 108
2.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09

제2절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113

1. 개요 113
2.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14

제3절 수출통제체제 대응 126

1. 개요 126
2. 추진 현황 127
3. 향후 계획 129

제4절 기술유출 방지 강화 130

1. 개요 130
2. 추진 현황 131
3. 향후 계획 133

Part 06

공정·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용

제1절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현황 134

1. 개요 134
2. 관련 제도 135
3. 한국 무역위원회 현황 135

제2절 반덤핑,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137

1. 덤핑방지관세 제도 137
2. 상계관세 제도 140
3. 세이프가드 제도 142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144

제3절 무역구제분야 국제협력 146

1. 무역위원회 양자협력 146
2. 서울국제포럼 148

Part 07

부산엑스포 유치 추진

제1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150

1. 개요 150
2. 추진 현황 152
3. 향후 계획 154

표차례



[표 1-1] 15대 주요 품목 수출 동향	3
[표 1-2] 9대 주요 지역 수출 동향	4
[표 1-3]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실적	6
[표 1-4] 미래 신산업 분야 무역금융 지원실적	6
[표 1-5] GTEP 사업 기수별 주요 추진실적	11
[표 1-6]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계 운영 현황(2021~2022년)	12
[표 1-7] 수출현장지원단 현장애로 해소 사례	13
[표 2-1] 현금지원제도 개요	20
[표 2-2] 투자보조금 지원비율	23
[표 3-1] 바이든 정부의 주요 예산 입법 현황('21~'22)	29
[표 3-2] 주요 대미 아웃리치	31
[표 3-3] 한미 교역 및 투자액	32
[표 3-4] 한-EU 교역 및 투자액	32
[표 3-5] 한-중, 한-일 교역액	38
[표 3-6] 중앙아 ODA 추진 사업	42
[표 3-7] CIS 지역 교역액	42
[표 3-8] 중동지역 국가별 원유 도입 현황	44
[표 3-9] 중동지역 국가별 천연가스 도입 현황	44
[표 3-10] 대 중동 교역현황	45
[표 3-11] 대 중동 수출입 품목 현황(2022년)	45
[표 3-12] 중동 주요국 산업다각화 전략 주요내용	45
[표 3-13]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 유형별 특징	47
[표 3-14] 대 아프리카 연도별 교역 현황	48
[표 3-15] 대 아프리카 품목별 교역 현황('17~'22년)	48
[표 3-16] 대 중남미 연도별 교역 현황	49
[표 3-17] 대 중남미 품목별 교역 현황('17~'22년)	50
[표 3-18]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54
[표 4-1]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	60
[표 4-2]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내용	61
[표 4-3]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62

[표 4-4]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현황	64
[표 4-5] 한-에콰도르 연도별 교역현황	65
[표 4-6] 한-메르코수르 연도별 교역현황	66
[표 4-7]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동향	66
[표 4-8] FTA 발효 후 對美 서비스 교역 동향	67
[표 4-9] 한-EU 교역 동향	68
[표 4-10] 한-중 교역 동향	70
[표 4-11] 한-영 연도별 교역현황	71
[표 4-12] 한-칠레 연도별 교역현황	71
[표 4-13] 한-아세안 연도별 교역현황	72
[표 4-14] 한-호주 연도별 교역현황	72
[표 4-15] 한-튀르키예 연도별 교역현황	73
[표 4-16] 한-콜롬비아 연도별 교역현황	73
[표 4-17] 최근 3년간 취업연계형 FTA 실무과정 수료생 취업률 현황	76
[표 4-18] IPEF 4개 분야별 주요 의제(2022.9월, 각료선언문 중심)	78
[표 4-19] 한·IPEF 연도별 무역 현황	79
[표 4-20] IPEF 4개 분야별 기대효과	80
[표 4-21] CPTPP 가입시 경제적 영향	81
[표 4-22] RCEP 주요 내용	82
[표 4-23] RCEP 활용실적('22.2.1~12.31)	84
[표 4-24] RCEP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 성공 사례	85
[표 4-25] 강원 지역 RCEP 활용 설명회 개최 사례	86
[표 4-26] 최근 5년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현황	88
[표 4-27] 對韓 수입규제 현황('23.3월 기준)	89
[표 4-28] 규제형태별·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23.3월 기준)	92
[표 4-29]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23.3월 기준)	93
[표 4-30] 제12차 각료회의 합의사항	97
[표 5-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111
[표 5-2] 전략물자 지정현황(2022년 기준)	115
[표 5-3] 전략물자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115

CONTENT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표 5-4] 전략물자 판정신청 추이(2018~2022)	116
[표 5-5] 항목별 제출서류 및 주요 검토·확인 내용	119
[표 5-6]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 추이(2018~2022)	120
[표 5-7]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등급별 특례	122
[표 5-8]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규모별·등급별 현황	123
[표 5-9] 4대 수출통제체제 개요	126
[표 5-10] 기술분야별 전략물자 해당품목	127
[표 5-11] 주요국 기술보호 정책 현황	130
[표 6-1]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135
[표 6-2]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조정요소	138
[표 6-3] 연도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139
[표 6-4]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140
[표 6-5] 품목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140
[표 6-6] 보조금의 종류	142
[표 6-7] 연도별 세이프가드 현황	144
[표 6-8]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신청현황	145
[표 6-9] 지재권 유형별 신청현황	145
[표 6-10]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결과	145
[표 6-11] 역대 포럼주제	149
[표 7-1] BIE 공인박람회 구분	150
[표 7-2]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151

그림차례

[그림 1-1]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2
[그림 2-1] '19~'21 글로벌 FDI 동향	14
[그림 2-2] '19~'21 국내 업종별 FDI 실적	15
[그림 2-3] '18~'22 국내 FDI 실적	16
[그림 2-4]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상의 간담회 활동	18
[그림 2-5] 연도별 유턴기업 투자계획 규모	25
[그림 2-6] 연도별 유턴기업 고용계획 규모	25
[그림 2-7] 유턴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26
[그림 2-8] 2022년 유턴기업 업종별 분포	26
[그림 2-9] 2014~2022년 유턴기업 업종별 분포	26
[그림 2-10] 2022년 유턴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27
[그림 2-11] 2014~2022년 유턴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27
[그림 2-12] 2022년 유턴기업 복귀국가별 분포	27
[그림 2-13] 2014~2022년 유턴기업 복귀국가별 분포	27
[그림 3-1] 한미 주요 파트너십 활동 내역	31
[그림 3-2] 컨퍼런스 개최 등 주요 활동 내역	33
[그림 3-3] 동남아·서남아 지역 교역액	40
[그림 4-1]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 및 설명회	61
[그림 4-2] 한-인니 CEPA 서명식 및 설명회	62
[그림 4-3]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 및 설명회	63
[그림 4-4]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69
[그림 4-5] 2022년 5월 23일 IPEF 출범 화상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	78
[그림 4-6] CPTPP 가입 절차	82
[그림 4-7] RCEP 이행 관련 회의	83
[그림 4-8] RCEP 활용 공동 가이드북	86
[그림 4-9] 수입규제 대응 종합 체계도	90
[그림 4-10]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94
[그림 5-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115
[그림 6-1]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143
[그림 7-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체계	152

Part 01

수출 플러스 추진



제1절 ▶ 수출입 동향

수출입과 사무관 홍승범

1. 주요 특징 및 성과

최근 우리 수출은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연간 최고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강국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

① 2021년,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 3년 만에 수출 증가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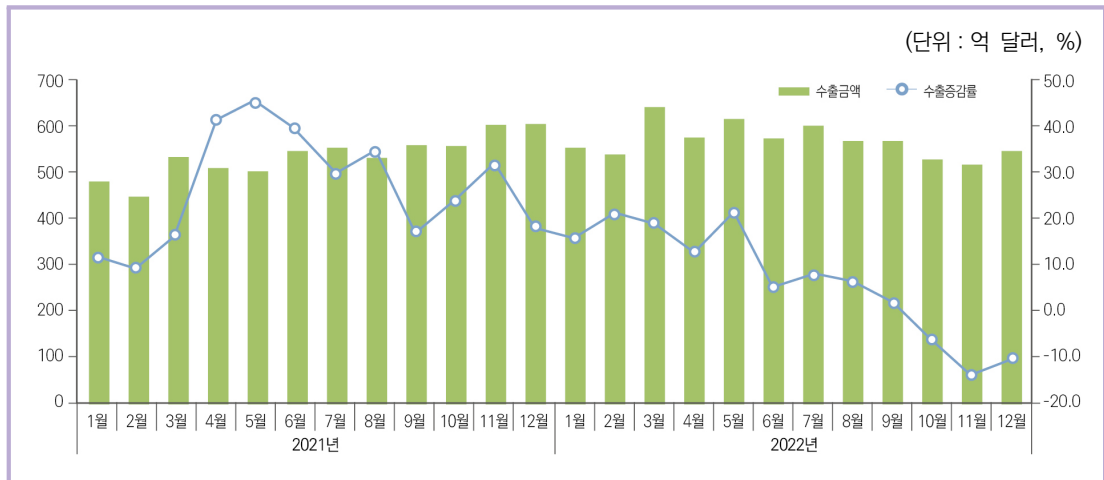
2021년 수출은 전년 대비 25.7% 증가한 6,444억 달러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종전 최고치인 2018년 실적을 400억 달러가량 웃돌며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6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하였다.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고르게 성장하였고, 중국·아세안·미국·EU 등 4대 시장으로의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연간수입이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무역규모도 전년 대비 28.5% 증가한 1조 2,59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② 2022년,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출실적·무역규모 달성

2022년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6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경신하였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며 10월 이후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1~9월까지의 해당 월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수출의 높은 기저와 미국의 통화긴축,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 순위는 세계 6위로 상승하였다. 수출과 함께 연간 수입도 전년비 18.9% 증가하면서, 최단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9.13일)하였다. 연간 무역규모도 종전 최고치인 2021년 실적 대비 12.3% 증가한 1조 4,1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1-1]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2. 품목·지역별 동향

1 품목별 동향

2021년 15대 주요품목 수출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를 넘어 21세기 들어 최초로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대표 수출품목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바이오헬스 등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화장품·플라스틱 등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고부가가치 품목인 시스템반도체와 OLED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며 우리 산업의 속도감 있는 구조전환에 기여하였다.

2022년에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9월까지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하였다.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애로를 넘어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을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2022년 석유제품 수출은 2대 품목으로 도약하였다. 이차전지 수출은 선진시장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달성, 최고실적을 경신하였다.

또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품목 외에 신산업, 유망품목 수출까지 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스템반도체·전기차·OLED 등의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위 품목 내 비중도 확대되며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반영하였다. 2016년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 온 농수산물품 수출도 2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실적 경신에 기여하였다.

[표 1-1] 15대 주요 품목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21년					2022년				
순 위		수출액	증감률	비 중	순 위		수출액	증감률	비 중
1	반도체	1,280	29.0	19.9	1	반도체	1,292	1.0	18.9
2	석유화학	551	54.8	8.5	2	석유제품	629	64.9	9.2
3	일반기계	501	9.5	7.8	3	석유화학	543	△1.4	7.9
4	자동차	465	24.2	7.2	4	자동차	541	16.4	7.9
5	석유제품	381	57.7	5.9	5	일반기계	511	2.0	7.5
6	철 강	364	36.9	5.6	6	철 강	384	5.7	5.6
7	선 박	230	16.4	3.6	7	자동차부품	233	2.4	3.4
8	자동차부품	228	22.2	3.5	8	디스플레이	211	△1.1	3.1
9	디스플레이	214	18.9	3.3	9	선 박	182	△20.9	2.7
10	무선통신	192	24.7	3.0	10	무선통신	172	△10.4	2.5
11	컴퓨터	167	25.5	2.6	11	바이오헬스	163	0.2	2.4
12	바이오헬스	163	16.8	2.5	12	컴퓨터	160	△4.7	2.3
13	섬 유	128	14.0	2.0	13	섬 유	123	△4.0	1.8
14	이차전지	87	15.5	1.3	14	이차전지	100	15.1	1.5
15	가 전	87	24.0	1.3	15	가 전	80	△7.4	1.2
15대 합계		5,036	28.0	78.2	15대 합계		5,325	5.7	77.9
기타 품목		1,408	18.2	21.8	기타 품목		1,511	7.4	22.1
총 계		6,444	25.7	100.0	총 계		6,836	6.1	100.0

한편, 2021년 주요국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증가, 인프라 투자 확대에 고르게 성과를 창출한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중간재 부문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정체되었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과 2021년의 높은 기저 등 영향으로 가전·무선통신기기 수출도 2022년에 감소하였다.

2 지역별 동향

2021년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중국·미국·EU·아세안·인도로의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였다. 대미 수출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 주도의 인프라투자 확대에 힘입어 자동차·가전 등 소비재와 일반기계·철강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다. 중국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요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최대 수출대상국 지위를 견고히 유지하였다.

9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제로코로나 정책과 대러 제재 등의 영향으로 중국·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세안·미국 등 여타 주요 지역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대중 수출의존도가 완화되었다.

우리의 2위 수출시장인 아세안은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제품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2년 연속으로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하였다. 대미 수출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과 연계된 자동차·이차전지·기계 등 수출증가로 2022년 실적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불안 등으로 EU 경기 전반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석유제품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EU 수출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였다. 2021년에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대중 수출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표 1-2] 9대 주요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21년					2022년				
순 위		수출액	증감률	비 중	순 위		수출액	증감률	비 중
1	중 국	1,629	22.9	25.3	1	중 국	1,558	△4.4	22.8
2	아 세 안	1,088	22.3	16.9	2	아 세 안	1,249	14.8	18.3
3	미 국	959	29.4	14.9	3	미 국	1,098	14.5	16.1
4	EU(27)	636	33.9	9.9	4	EU(27)	681	7.0	10.0
5	일 본	301	19.8	4.7	5	일 본	306	1.8	4.5
6	중 남 미	258	32.4	4.0	6	중 남 미	266	3.0	3.9
7	중 동	156	6.3	2.4	7	중 동	189	20.9	2.8
8	인 도	156	30.7	2.4	8	인 도	175	12.3	2.6
9	C I S	137	19.8	2.1	9	C I S	113	△17.8	1.6
9대 합계		5,320	24.9	82.6	9대 합계		5,634	5.9	82.4
기타 지역		1,124	29.7	17.4	기타 지역		1,202	7.0	17.6
총 계		6,444	25.7	100.0	총 계		6,836	6.1	100.0

제2절 ▶ 수출 플러스 전략

무역정책과 사무관 하원석

1. 개요

2021년 한국 무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사상 최단기 무역 1조불 달성, 역대 최대 무역·수출액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주력 품목, 신성장 품목, 소비재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동남아, 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결과였다. 2022년에는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주요국 통화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하반기에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수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① 수출 3대 애로(무역금융, 수출입 물류, 마케팅), ② 디지털·서비스·청년무역 활성화 등 무역구조 혁신, ③ 범정부 수출 총력지원 체계 가동 등 수출 활력 제고 및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이행하였다.

2. 추진 현황

① 수출 3대 애로 해소

1) 무역금융 지원 강화

수출입과 사무관 노승구

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교역환경이 악화하고 불확실성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21년 195.9조원의 무역보험 지원과 함께 30,874개 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6.6조원을 지원하였다. 2022년에는 역대 최대 무역보험 지원실적인 238.4조원과 더불어 31,129개사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76.8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 이행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만기 연장, 보증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과 신규 수출 판로 발굴을 위한 신용조사 무료, 수출 애로 해소 컨설팅 등의 수출 다변화 지원을 추진했다. 아울러 러·우 전쟁 등 중소·중견기업이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대외 위험에 대해서는 위기 고조 지역 동향 안내, 신규 바이어 판로개척 지원, 보험금 신속 보상 등의 노력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1-3]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개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무역보험 총 지원실적	165.1	195.9	238.4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	59.6	66.6	76.8
중소·중견기업 지원기업 수	28,931	30,874	31,129

②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지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 고 현상,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대내외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신에너지 등 고부가 가치 미래 신산업 분야에 2021년 22.2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30.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신산업 시장 선점을 지원했다. 우리나라 미래 수출 먹거리를 차지하는 배터리, 반도체 등 수출 전략산업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하여 책정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의 정책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 또한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 상황에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인 비대면 무역금융 상품인 다이렉트 보험 및 보증 상품도 출시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태양열, 풍력 등 신에너지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중장기 상품 보장한도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실시했다.

[표 1-4] 미래 신산업 분야 무역금융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무역보험 총 지원실적	165.1	195.9	238.4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실적	18.7	22.2	30.5

2) 수출입 물류 애로 총력지원

무역정책과 사무관 이도안

①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가동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회복세를 이어나가던 수출은 2020년 하반기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해상운임 상승과 선박(船腹,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 부족 등의 해상물류 애로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유럽·동남아 등 타 항로도 확대되었다. 이에,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해운협회, HMM,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간합동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를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선박 및 공(空) 컨테이너 수급, 운임변동 추세 등 수출입물류 동향을 파악하고, 선박 추가공급, 중소화주 전용(專用) 선박량 배정, 항만사용료 감면 등의 선사

인센티브 제공 등 범정부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한편, 중소화주 물류애로 접수와 신속한 해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수출입 물류애로 해소 긴급대책 수립·지원

2021년은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항만 적체에 따른 선박 부족 등 수급 불균형 등으로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등 단기간에 물류애로가 해소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 및 중소기업 전용선박 공급,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단기 및 중장기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물류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다. 지원대책을 통해 '23.3월까지 중소화주 전용선적공간 총 284회, 22,794TEU, 장기운송계약 총 96회, 6,008TEU, 농수산식품 선적공간 우선제공 총 104회, 1,646TEU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은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항만 적체도 다소 완화되는 등 물류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고 있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해 등 중국 주요 도시 봉쇄, 국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으로 수출입물류 애로가 지속되었으며 정부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류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 해운·항공 운임비가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국제 물류비 지원을 위해 60억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현지 물류사와 협력하여 해외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통관부터 보관, 포장, 배송까지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3) 전시회 등 현지 마케팅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무역진흥과 사무관 이의만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각종 전시회가 중단 또는 취소되어, 전시업계는 위약금, 매물 비용 발생, 일감 부족으로 산업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중 금융, 고용, 세제, 예산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전시회 정상 개최와 전시업계의 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에서도 참여 기준을 확대(8㎡당 1명 → 6㎡당 1명)하였으며, 전시기간 중 방역요원을 배치하여 전시회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으로 30개 전시회에 4.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규모가 영세한 지방 전시회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전시회 개최를 신규로 지원(40억원)하였다.

해외전시회도 상황이 다르진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기존 오프라인 전시회 지원 방식을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했다. buyKOREA 내 온라인 한국관을 개설하여 화상상담 및 KOTRA 무역관 대리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기업 상품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샘플 운송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전시회 한국관의 시설방역을 강화하고 버추얼 한국관 구축, 대규모 화상상담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해외전시회

참가 기회를 마련하였고, 이는 전시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들어 전시산업은 회복기에 들어섰다. 피해 누적으로 단기간 회복은 어려웠으나, 전시회 개최가 속속 재개되어 개최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70~80%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전시산업의 특성상 오프라인 전시회가 활력을 되찾았으며, 그에 더하여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화된 전시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머스 시대를 맞이하여 전시장에도 라이브커머스가 들어오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전시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메타버스 전시회 구축 시도, 전시산업에서의 ESG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활발히 이뤄졌다.

2 무역구조 혁신

1) 디지털 무역 활성화

무역진흥과 사무관 이민석

① 국가 수출 디지털 플랫폼(바이코리아) 고도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마케팅이 어려워지자, 산업부는 국내기업들의 디지털 무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B2B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바이코리아(buyKOREA)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중장기 고도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바이코리아는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홍보하고, 바이어 구매 수요(인콰이어리)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B2B 기업자원 공공 플랫폼이다. 바이코리아는 국내기업의 상품등록 및 온라인 홍보, 인콰이어리 발굴, KOTRA 해외 마케팅사업과 연계한 전용관 구축을 통해 바이어의 제품 검색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연간 약 2,600만 명이 바이코리아 플랫폼을 방문했으며, 약 2만4,000건의 인콰이어리를 발굴해 1억 1,000만 달러의 수출 성약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약 4만 4,000건의 인콰이어리를 활용하여 해외지역별·산업별 수출직결 화상상담을 실시, 약 6만 5,000건의 화상상담을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9,951만 달러의 수출 성약을 지원했다.

②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 구축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무역이 새로운 수출 방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는 바이코리아 상품등록을 위한 이미지 또는 실사촬영 지원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디지털 마케팅 등 디지털 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상시 디지털 무역 상담창구 운영, 디지털 브랜드 개발, 관리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에는 마케팅 지원기능에 초점을 둔 「K-스튜디오」를 6개 지역에서 운영해왔으며, 「K-스튜디오」가 수출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2022년도에는 '무역인력 양성 및 상시상담' 기능을 추가한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전국 3개 지역에 추가로 신설, 확대 개편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디지털 무역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출 초보기업들의 디지털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③ 국가전자무역 지원시스템 고도화

무역정책과 사무관 이도안

전자무역이란 무역업체와 세관, 은행, 항만 등 무역관계기관이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물품·서비스 등의 수출입이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일컫는다. 정부는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무역 인프라인 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2004년부터 구축·운영해 왔다. 2022년에는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수출입 화물의 선적·운송·추적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차세대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uTradeHub 2.0은 ▲디지털 수출입물류,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스마트 무역원장, ▲디지털전자문서유통 등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무역업체, 물류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시험평가기관 등의 업무 편의성과 신속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2) 서비스 수출 활성화

무역정책과 사무관 하원석

서비스 무역은 상품 무역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비중은 2021년 기준 15.8%로 전세계 평균(21.4%)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치 또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며 상품무역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운송·건설업 중심의 전통적인 서비스 무역에서 탈피하여 콘텐츠, 교육 등 유망 분야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상품 수출 통계와 달리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통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통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서비스 수출의 경우 관세청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외환거래자료를 통해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외환거래자료와 과세정보를 결합한 서비스 수출통계 구축 방안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비스 주요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청취하였고,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 오면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였다. 2022년 7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서비스 주요 업종별(콘텐츠, 헬스케어, ICT 서비스, 에듀테크 등)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12월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서비스 수출 활성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출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3) 청년 무역인 양성

무역정책과 사무관 권영무

대학의 무역 교육과 수출입 현장실습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무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 시작해 2013년까지 매 기수마다 800여명의 무역예비인력을 양성하며 제1기부터 제6기까지 운영했다. 2013년 1월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전문가의 양성 및 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글로벌 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3년 7월(제7기) 지역전문가 육성 및 공급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개편한다는 방침 하에, 신흥시장 등 특화지역 집중을 통해 각 지역의 언어, 상관습, 법령 및 무역실무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전문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으로 개편하여 현재 제17기까지 운영 중에 있다.

GTEP 사업은 각 대학의 사업단장,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1년 3개월 동안 기본교육 50시간, 심화교육 250시간, 현장무역실습 180시간으로 구성된 총 480시간 이상의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이 교육기간 중 참가 학생들에게 15학점 이상을 부여토록 하여 학업과 무역실무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2020년 말 공모를 통해 제15기~제17기(3개년) 참여대학으로 20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2021년 1월 722명을 선발, 제15기 사업단을 출범했다. 출범식을 겸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부터 심화교육 및 현장무역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하기까지(2022. 3. 31) 48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무역실무와 현장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대학 선정 단계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유럽, 중남미, 중동 등 6개 시장별 특화 사업단을 지정, 지역특화 집중 교육과 심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2022년 1월에는 20개 대학이 707명의 학생을 선발, 제16기 사업단이 출범하였으며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기본교육, 무역현장 마케팅 실습, 지역특화교육, 전자상거래 교육, 전자상거래 경진대회, 현장컨설팅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업단별로 담당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수출입 전 과정에 대한 실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협력업체 발굴 및 수출 ITEM선정 등 실제 발생하는 무역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무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는데, 전통방식의 무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컨설팅을 병행하여 온·오프라인 무역에 모두 능통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무역현장 마케팅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력기업과 함께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현장 마케팅, 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체결, 물류, 통관 등 전 수출과정을 함께하며 무역실무능력을 향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누적(제1기~제16기) 약 8,4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표 1-5] GTEP 사업 기수별 주요 추진실적

기수	사업 기간	참가 대학(개)	참여 인원(명)	수료 인원(명)	수료율 (%)	산학협력활동	
						협력기업 수	수출실적 (만불)
1	'07.7~'08.12	19	805	493	61.2	384	163
2	'08.7~'09.12	17	629	389	61.8	196	253
3	'09.7~'10.12	25	888	618	69.6	252	333
4	'10.7~'11.12	24	852	661	77.6	351	375
5	'11.7~'12.12	24	817	677	82.9	541	388
6	'12.7~'13.9	24	757	652	86.1	622	459
7	'13.7~'14.9	24	776	684	88.1	652	518
8	'14.7~'15.9	24	745	676	90.7	656	535
9	'15.1~'16.3	24	701	639	91.2	681	548
10	'16.1~'17.3	24	731	681	93.2	866	612
11	'17.1~'18.3	23	698	676	96.8	806	833
12	'18.1~'19.3	20	594	557	93.7	788	800
13	'19.1~'20.3	20	786	749	95.3	896	799
14	'20.1~'21.3	20	781	711	91.0	654	269
15	'21.1~'22.3	20	722	681	94.3	779	411
16	'22.1~'23.3	20	707	674	95.3	827	1,103
계		-	11,989	10,218	-	9,951	8,399

3) 범정부 수출 총력지원체계 가동

무역정책과 사무관 하원석

1) 숏부처 수출지원체계 운영

2021년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교역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2022년 1월 산업부 장관 주재 「무역·공급망 점검회의」를 통해 공급망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물류난 해소 총력대응, 차세대 수출유망품목 육성 및 지원, 신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 강화, 탄소중립·ESG 대응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무역 전망 및 진흥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는 관련 업계 간담회(2월), 수출상황 점검회의(5월) 등을 통해 교역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무역수지 적자가 3월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수출 동력 또한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도 검토하였다.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8월)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수출 현안을 챙기기 시작하였고, 11월에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수출시장별 특화전략 및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의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회」, 「수출지원기관 협의회」 등을 운영하였고, 「해외인증 취득 관련 원스톱 지원 MOU」 체결(코트라, 보건산업진흥원 등 총 10개 기관) 등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할 수 있었다.

[표 1-6]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계 운영 현황(2021~2022년)

연번	시기	정 책 명	회의명	비고
1	21.01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국무총리
2	21.10	수출현장 애로해소 및 미래무역기반 확충방안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국무총리
3	22.01	2022년도 무역 전망 및 진흥대책	무역·공급망 점검회의	산업부장관
4	22.02	-	러-우 사태 관련 업계간담회	교섭본부장
5	22.05	-	긴급수출입상황 점검회의	교섭본부장
6	22.07	수출입 동향 및 대응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장관
7	22.08	-	무역상황점검회의	교섭본부장
8	22.08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통령
9	22.11	주요 수출시장별 특화전략 및 지원강화방안	제1차 수출전략회의	대통령
10	22.11	방위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제2차 수출전략회의	대통령

2) 범부처 수출현장지원단

무역진흥과 사무관 이민석

산업부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비상경제민생회의, '22.8.31)의 후속조치로서 성과 창출 및 기업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 밀착형 「수출현장지원단」을 운영하였다. 정부 및 수출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수출걸림돌을 제거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의욕을 고취하였다. 2022년 9월 14일 대전에서 제1차 수출현장지원단을 시작으로 광주, 창원, 천안, 인천 등 총 14차례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해소가 어려운 과제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표 1-7] 수출현장지원단 현장애로 해소 사례

구분	건의사항 및 대응 내용
A社	• 해외전시회 지원 정산 기준 완화 → 정산횟수 제한 폐지, 허용기간 확대 등 정산기준 완화
B社	• 의료기기 규제 및 정보교육(RA) 비용 지원 요청 → 수출바우처, RA 교육과정 지원
C社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통한 자금 융통 → 기업 면담을 통해 재무상황 및 필요 자금 확인,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
D社	• 수출초보기업 지원 확대 → 수출바우처, 지원요건 완화(수출실적 10만불 이하 기업 지원)
E社	• 원자재 수입 시 매번 부과세를 납부하는 제도 완화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안내

3)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무역정책과 사무관 이도안

2022.11.23(수)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원스톱 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등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민관합동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원단의 단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겸임하고, 부단장(산업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 :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의 4개 부서로 구성하였다. 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하며,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무역수지 적자 및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산업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모든 지원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추진하면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작동하는 한편, 산업부장관이 주재하고 18개 수출유관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목표 달성 및 지원실적, 애로해소 성과, 부처간 협업과제 이행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3년도에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수립한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지원예산(1.5조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4.5조원의 무역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원전, 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밀착 지원하는 등 유망 신산업 수출 기회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우리 주력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기술혁신 지원, 전문 인력 공급 등의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Part 02 외국인 투자 및 유턴 활성화



제1절 ▶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성과

투자정책과 사무관 정 슬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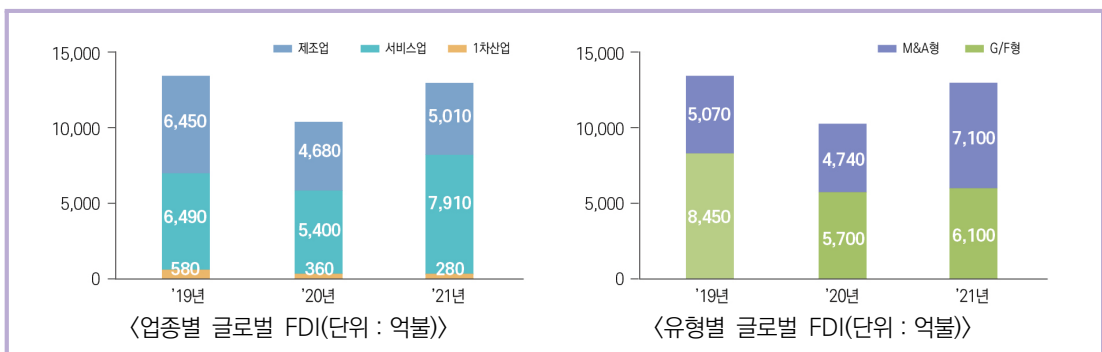
1 2021년도 세계 FDI 동향

미국·EU 등 주요국의 저금리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20년 역성장에서 벗어나 '21년 +5.9%(IMF, '22.1)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회복과 맞물려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FDI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21년도 전세계 FDI는 '20년의 0.93조불 대비 77% 증가한 1.65조불을 기록하였고,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의 1.47조불 수준을 넘는 반등세이다.

특히,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199% 증가하여, 개도국(+30%)과 후진국(+19%)의 증가율을 대폭 넘어섰고, M&A형(7.1천억불, +50%) 투자가 그린필드형(6.1천억불, +7%) 투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19~'21 글로벌 FDI 동향



2 2022년도 세계 FDI 동향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Covid-19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22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WB, '23.1)에 그쳤다.

각국의 유동성 긴축 기조, 지속되는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심리 또한 위축되었는데, 특히 1분기의 FDI 실적은 양호하였으나, 2분기부터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여파가 글로벌 FDI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M&A형 투자가 감소하였고, 반대로 그린필드형 투자는 개별기업 주도의 대형 투자사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 대비 54% 증가('21년 7.1→'22년 10.8천억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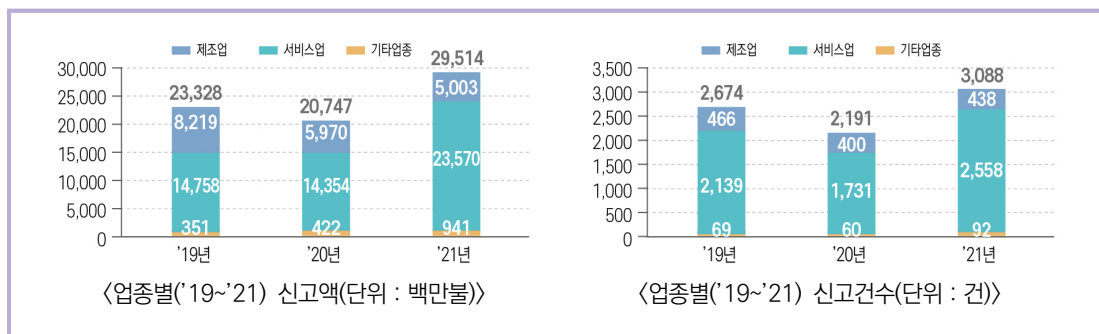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성과

1 2021년도 국내 FDI 동향

국내 경제는 2021년 반도체 호조, 신산업 수요 확대 등 높은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4%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21년도 국내 FDI는 신고기준 295.1억불(+42.3%), 도착기준 180.3억불(+57.5%)로 신고·도착 기준 모두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다.

공급망, 백신 및 바이오, 수소경제 등에 대한 투자유입으로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제조업은 +81.8% 증가하였고, O2O,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서비스 투자의 유입으로 정보통신업 분야는 +317.2%나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실적을 견인하였다.

[그림 2-2] '19~'21 국내 업종별 FDI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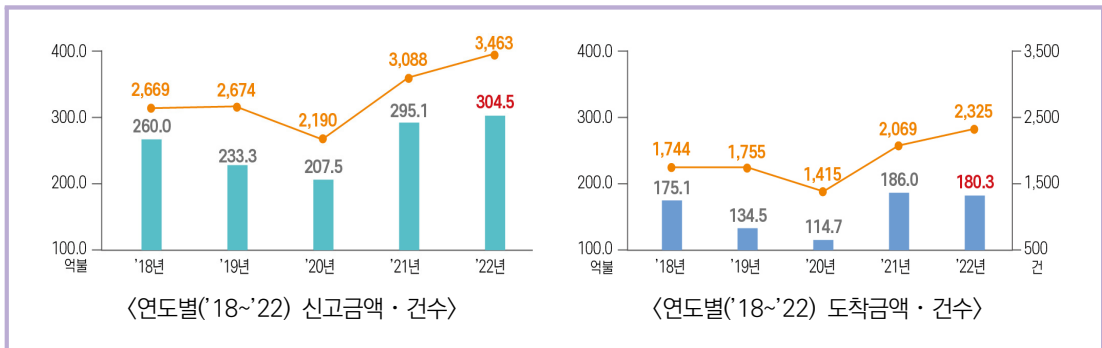


2 2022년도 국내 FDI 동향

2022년 하반기 글로벌 FDI 위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 유치 실적은 오히려 하반기에 증가하며 호전 추이를 보였는데, 상반기 111억불 수준이던 국내 FDI 유치 실적은 하반기 194억불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도의 국내 FDI 유치실적은 304.5억불(신고 기준)로, 2021년도에 이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실적을 재차 갱신하였다. 특히 신규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금액(+23.3%)·건수(+14.8%) 모두 증가하며, 투자 및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3] '18~'22 국내 FDI 실적



제2절 ▶ 투자환경 개선 및 지원 강화

투자정책과 사무관 정 솔

1.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수립

1) 2021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위주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K-뉴딜, 소부장 등 핵심분야와 품목을 집중 타겟팅 할 수 있도록 유치기반 고도화를 위한 2021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1년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 시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 해당 품목의 해외의존도, 기술격차 등을 기준으로 투자유치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룹핑하고, 그 중에서도 국내진출 현황, 한국시장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국내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해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굴된 기업에는 1:1 방식으로 고위급 및 실무급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그 외 지역연계 외국인투자 유치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영역을 넓히고, 지자체의 유치활동(IR)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등의 계획도 권역별 지역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2) 2022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통해, 공급망·탄소중립 등 핵심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자체 및 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계획, 그리고 전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애로지원 계획을 담았다.

동 촉진시책을 통해 '22.7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현금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첨단기업의 직접화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었다.

'100대 핵심기업' 지정을 통해 정책 기여도와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유치역량을 집중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코트라·KITIA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였고, 각 지역별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역 비전과 연계되는 유치 주력업종에 대해 중점유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 주요국 투자유치 기관 간 협력 강화, 국가별 관심분야 중심의 투자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의 대외협력 강화, 고충처리 전문성 제고, 외투기업 청년고용 지원 등, 투자유치 단계 뿐 아니라 투자 이후 기업들의 전반적인 국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2.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추진

투자정책과 서기관 정종윤

1 의견수렴 및 규제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기업상회의 고위급 및 실무자급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정부와 외국인투자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투자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해소를 추진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국무총리,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간담회, 주요 권역별 간담회, 대규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0개 규제개선과제를 발표(2022.12월)하였다.

[그림 2-4]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상의 간담회 활동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유럽계 외국상의 및 외투기업들의 투자애로를 청취하였다.(’22.6)



• 국무총리 주재로 외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22.9)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국내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애로해소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 외국인투자주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제고를 위하여 해외 잠재 투자기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투자매력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외국인 투자주간(Foreign Investor Week)을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동 행사를 통해 방한 해외투자자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요산업의 동향과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국내기업 및 지자체와의 투자상담과 현장방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한국투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투자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1년 외국인 투자주간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101개국을 대상으로, 아리랑TV 방송과 온라인(웹,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혁신성장 포럼에서는 대통령의 환영사와 함께 세계 석학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경제지형의 변화와 한국의 혁신성장전략을 공유하고, 최적의 투자처로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집중 조명하였다. 한국의 주요 지역거점별 중점산업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지역중심산업 포럼, 글로벌 투자가, 국내기업 등 300여개사가 참여한 투자상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회를 모색하였다.

2022년은 2019년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3대 첨단산업을 핵심 테마로 선정하고 관련 분야 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기회를 집중 소개하였다. 또한 통상 교섭본부장 주재 해외언론 15개 매체가 참여한 외신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투자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투자상담회에서는 글로벌 투자가 70개사, 국내기업 130개사 등 200여개사가 참여하여 250여건의 투자상담을 진행하였다.

3. 현금지원제도 개편

투자유치과 사무관 오유경

1 현금지원제도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 중 현금지원제도는 신성장동력기술 수반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사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사업,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 R&D센터 또는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를 설립하는 경우 등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및 협상을 거쳐 외국인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이후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주요 인센티브 제도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2-1] 현금지원제도 개요

- **목적**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센터,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공고, '07년 제정)
- **최대지원한도**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의 30~50% 이내
- **절차** 현금지원 신청(외투기업) → 평가위원회(전문가) → 한도산정위원회(산업부, 지자체, 전문가)
→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 → 현금지원 계약체결(산업부↔지자체↔외투기업)

2 2022년 현금지원제도 개편내용

2022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경제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국비 부담비율도 10%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내 산업에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현금지원 대상에서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법인을 통해 다시 국내에 재투자 하는 우회 투자분을 배제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3 2023년 이후 현금지원제도 운영방향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 경쟁 심화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금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첨단전략업종 등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첨단전략기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한도 확대(40→50%) 및 국비분담률 10%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 외투기업의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 활용 절차 마련, ▲첨단산업 전환형 외국인투자(기존 공장내 공정전환형 설비투자)를 현금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3년 내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및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3절 ▶ 국내기업 복귀 지원

해외투자과 사무관 박주형

1. 국내복귀 지원제도

① 도입취지 및 의의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COVID 19에 이어 어느덧 발발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우·러 전쟁까지, 지난 3년간 세계 산업 정책의 뜨거운 감자는 ‘공급망’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서 ‘리쇼어링’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제정한 이래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내지 국내복귀(이하 ‘유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유턴법 제정(2013년 12월)

상기에 언급한 바와 달리, 유턴법 제정은 공급망 안정화가 아닌 해외에 진출한 한계 기업들의 구제를 위해 이루어졌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규제 강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저렴한 인건비를 노리고 진출했던 섬유, 주얼리 업체들의 중국 철수가 시작되었는데, 까다로운 현지 청산 절차 등으로 인하여 대표만 국내로 몸을 피하는 이른바 ‘야반도주’ 기업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야반도주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기업들의 안전한 철수, 국내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턴법이 제정되었다. 정책수요가 집중되는 제조업체 중 해외사업장을 청산 또는 축소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세제감면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였다.

2)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2018년 9월)

섬유, 주얼리 업체들의 脫중국 러쉬가 안정화되면서 유턴기업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고 그 결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체계의 목적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투자, 고용 창출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였다.

① 업종 확대(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추가), ② 해외사업장 축소비율 완화(50% → 25%), ③ 투자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중소·중견 → 대기업 추가) 등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제도 홍보를 위해 Kotra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였다.

3) 소부장 2.0 대책, 2021년 경제정책방향 등(2020년 이후)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 수출규제, COVID 19 등 공급망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유턴기업 지원정책은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는다. 유턴기업이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요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고부가가치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크게 강화되었다.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연계하여 첨단, 공급망 핵심기업을 별도로 분류하여 해당 기업들에 대해 해외사업장 청산·축소·양도 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첨단기업에 한하여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투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원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국비 기준, 사업장당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였다.

2 유턴기업 확인요건

상기한 제도 변천 과정을 거쳐 정착된 현재의 유턴기업 확인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 관련 업종의 국내 모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실질적 지배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사업장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해외사업장을 청산·축소하는 등 구조 조정해야 한다. 해외사업장 축소를 선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축소 개시일을 기준으로 25% 이상 축소해야 하며, 상기한 바와 같이 첨단·공급망 핵심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조조정 의무가 면제된다.

셋째, 국내사업장 신·증설이 요구된다. 국내사업장 신·증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① 공장 신설, ② 공장 증설, ③ 타인 공장 매입 이후 제조설비 설치, ④ 기존 공장의 유희면적 내 설비투자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대상인 해외사업장과 신·증설 대상인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간 국가표준 산업분류(KSIC) 소분류 기준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업종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요 소재·부품, 생산 공정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주요 인센티브

유턴기업은 현금지원의 성격을 갖는 투자·이전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고용창출장려금, 입지지원 등 총 12가지 항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산업부만이 아닌 대표적인 범부처 차원의 과제에 해당한다.

1) 투자·이전보조금 등 현금지원

투자보조금의 경우,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등이 지원 대상이며 국비 기준으로 사업장당 300억원, 기업당 600억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비율은 복귀지역에 따라 11~44% 차등 지급되며, 국비 보조율 역시 복귀지역을 기준으로 40~75%에 이른다.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첨단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표 2-2] 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지역	지원비율(대·중견·중소 동일)	국비 보조율(대·중견·중소 동일)
수도권 * 첨단산업 한정	11%	40%
수도권인접지역	21%	45%
일반지역	24%	65%
지원우대지역	34%	75%
산업위기대응지역등 * 소부장핵심전략품목	44%	75%

* 사업장당 수도권 150억, 비수도권 300억, 이전비용 4억 한도

** 고용·투자액 등으로 지원비율 가감

이전보조금의 경우,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의 보조금으로서 운송비용, 설비 해체·재설치 비용 등이 지원 대상이며 국비 기준으로 최대 4억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비율 및 국비보조율은 투자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복귀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2) 법인세·관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경우, 신·증설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 가능하나, 해외·국내사업장 간 업종이 국가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

관세의 경우, 유턴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100%를 감면한다. 다만, 해외사업장을 축소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50%로 제한된다.

3) 고용창출장려금

유턴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고용인원 100명을 한도로 2년간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720만원을 한도로 지원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가 360만원을 한도로 지급된다.

4) 입지지원

유턴기업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최장 50년간 국·공유지 임대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이며 우선 입주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다. 다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유턴기업을 수의계약, 우선 입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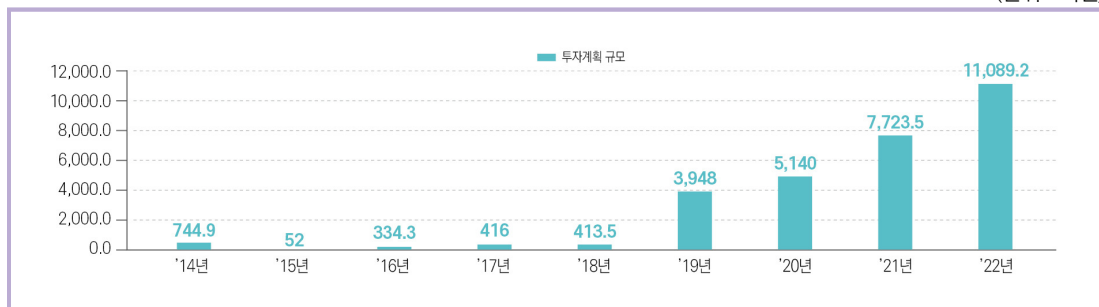
2. 국내복귀 동향

1 총괄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18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하여 2022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였다. 총 투자규모는 1조 1,089.2억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43.6%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2-5] 연도별 유턴기업 투자계획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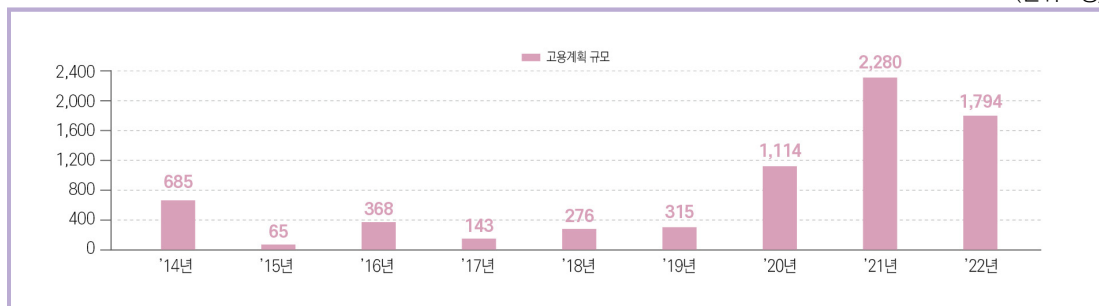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유턴기업의 고용계획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여 1,794명에 그쳤으며 이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자본집약적 업종이 유턴기업의 주를 이룬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2-6] 연도별 유턴기업 고용계획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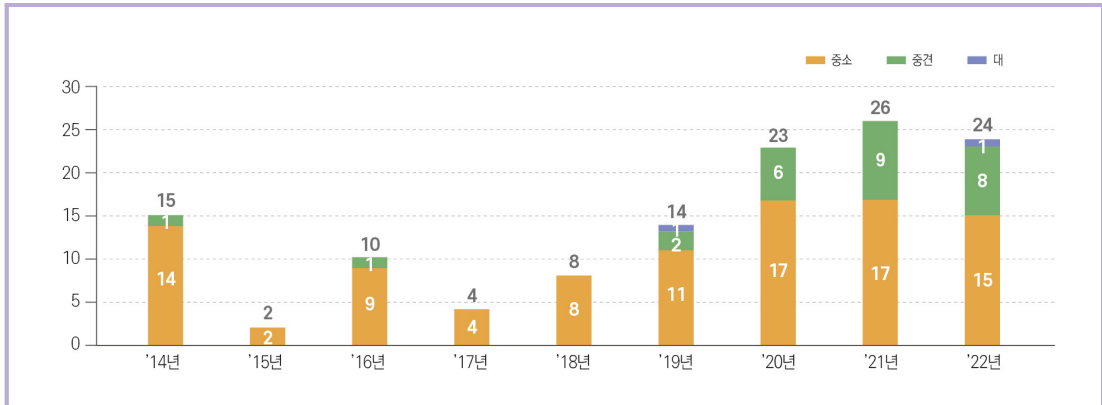
(단위 : 명)



유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수는 연간 2번째로 높은 수준인 24개사이며, 이로써 확인된 누적 유턴기업 수는 126개사에 이른다. 2018년 종합지원대책 이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힘입어 2019년을 기점으로 유턴기업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업규모 역시 중견·대기업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37.5를 기록하였다.

[그림 2-7] 유턴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단위 :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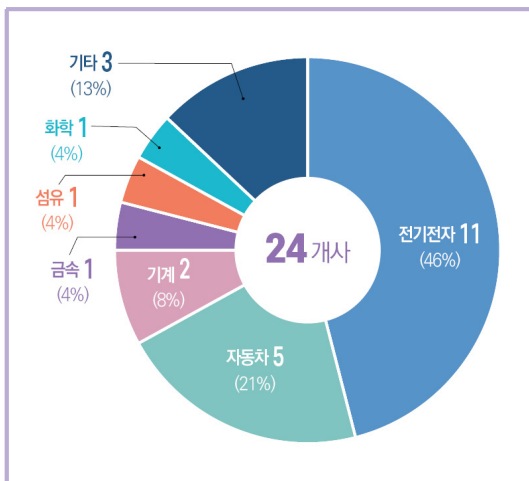


한편,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반도체용 화학제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첨단기업,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역시 6개사로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2 세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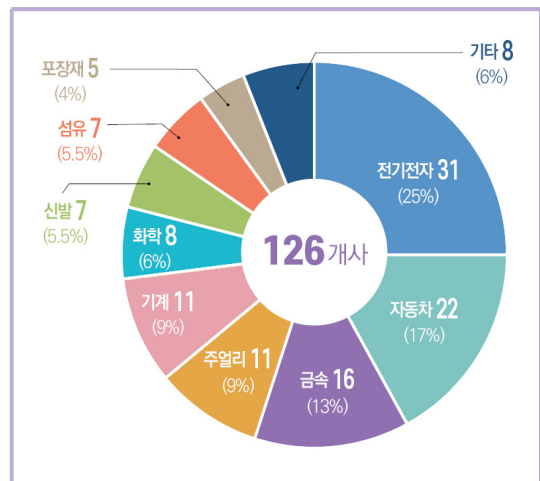
유턴기업의 업종 구성은 전기전자(11개사), 자동차(5개사), 기계(2개사) 순으로 주력업종이 2022년도에 유턴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83.3%를 차지하였다.

[그림 2-8] 2022년 유턴기업 업종별 분포



* 단위 : 업종, 개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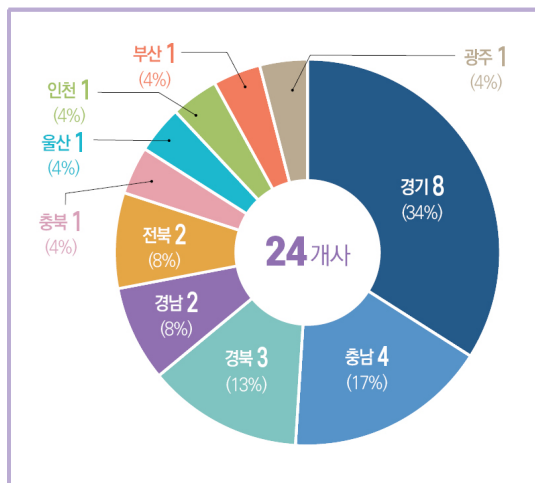
[그림 2-9] 2014~2022년 유턴기업 업종별 분포



* 단위 : 업종, 개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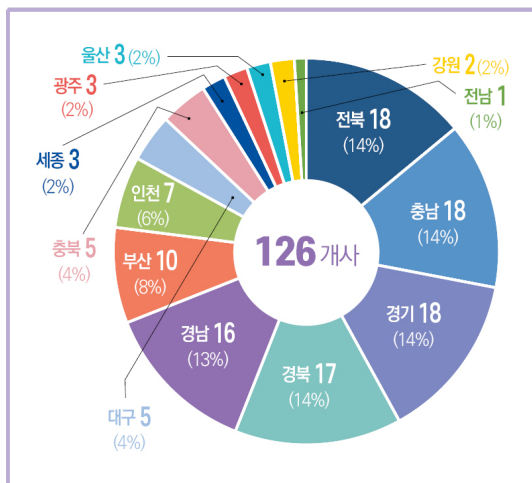
유턴기업의 복귀지역은 경기(8개사), 충남(4개사), 경북(3개사), 경남·전북(각 2개사) 순으로 구성된다.

[그림 2-10] 2022년 유턴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 단위 : 지역, 개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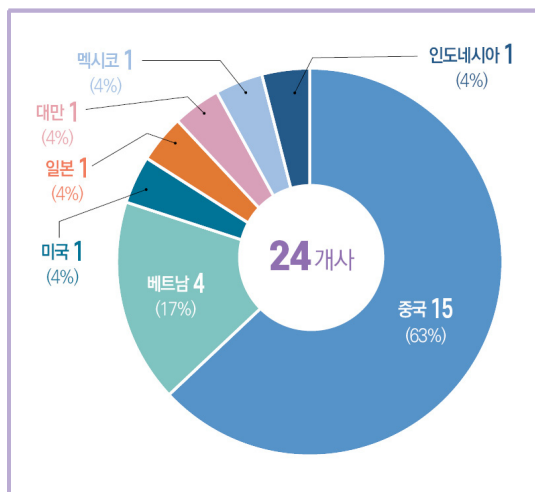
[그림 2-11] 2014~2022년 유턴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 단위 : 지역, 개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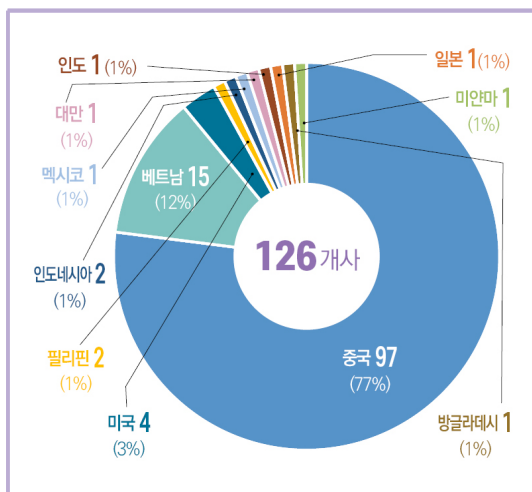
유턴기업이 복귀한 국가는 중국(15개사), 베트남(4개사) 순으로 중국·베트남발 유턴기업이 2022년 전체 유턴기업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그림 2-12] 2022년 유턴기업 복귀국가별 분포



* 단위 : 국가, 개사, 비중

[그림 2-13] 2014~2022년 유턴기업 복귀국가별 분포



* 단위 : 국가, 개사, 비중

Part 03 통상정책 방향



제1절 ▶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에 적극 대응

통상정책총괄과 형건우 사무관
미주통상과 윤경민 사무관
구주통상과 정다연 사무관

1. 개요

최근 통상환경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역의 빗장을 걸고 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간 무역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자국우선주의 확산 기조는 단순히 무역수지를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목적을 넘어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심화되었다. 공급망 사슬 전반을 스스로 갖추기 위한 움직임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전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논리가 우선시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자국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국제 교역과 공급망의 원활한 흐름을 위축시키는 형태로 전개되며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 미국의 주요 산업·통상 정책

1) 산업정책 본격화

바이든 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정책적 기조 하에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의 틀과는 다른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중이다. 2022년, 미 의회가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포함한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차례로 통과시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자국의 제조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JA)」 제정('21.11월),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통한 미국산 철강 및 자재 등의 구매 우대, 「바이오 기술 및 제조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22.9월)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 바이든 정부의 주요 예산 입법 현황('21~'22)

- ❶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21.3월) : 1.9조불, 재난지원금 등
 - ❷ 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1.11) : 1.2조불, 전통 인프라 투자
 - ❸ 반도체지원·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2.8) : 반도체 지원에 527억불
 - ❹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22.8) :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불
 - ❺ 우크라이나 지원('22.12) : 440억불('23년 예산 반영분)
- * 기존 지원금액 포함시 1조불

2) 중국의 기술굴기 차단

미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 정책과 동시에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기술 수준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견제 정책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이러한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중국을 겨냥한 수출통제 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양자컴퓨팅, AI, 고성능 반도체, 첨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의 중국 유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 기술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수출통제 조치를 역외 적용을 통해 타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에도 적용하며 수출통제에 있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 EU의 주요 산업·통상 정책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통상전략

2021년 2월 18일,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이라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2006년 EU가 처음으로 통상백서를 발표한 이후 내놓은 4번째 통상 전략이다.

동 전략은 미·중 기술경쟁, 다자주의 약화 등 국가간 무역 관계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이다. 다자주의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EU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WTO 개혁, ▲녹색 전환 ▲디지털 무역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무역 대상국 확대 및 교류 강화 ▲공정경쟁을 위한 무역협정 집행 강화라는 6가지 분야에서의 행동 강령을 규정하였다. 특히, 환경, 디지털, 필수 의약품 등 산업에서 리쇼어링(re-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촉진하고,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TSD) 조항의 시행과 디지털 무역 규제 강화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강조한다.

2)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 발표

유럽연합(EU)이 2021년 7월 14일 발표한 “Fit for 55”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도입되는 입법 패키지이다. 12개의 법 제·개정과 1개 기금 신설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탄소흡수원의 확대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에 도달 등이 주요 내용이다.

3)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및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추진

EU집행위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중립산업법 제정('22,3월~)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기후중립 전략기술’에 대한 규제 간소화, 인력·연구개발 지원, 정부조달 친환경 기준 강화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산업에서 한시적으로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여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략원자재의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허가 간소화, 자원 접근성 개선, 공급망 관리,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핵심원자재법 제정('22,3월~)도 추진중이다.

2. 추진현황

정부는 점증하는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조치에 대응하여 무역과 공급망 활동의 주체인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차별적인 통상조치로부터 국내 기업의 겪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회 요인도 최대한 발굴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 對美 통상 협력

1) 우리 기업의 이익 확보를 위한 對美 아웃리치 전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별적인 통상조치에 대해 기업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22년 9월, 미국이 자국 내 생산되는 전기차에게만 세액공제(보조금)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공개된 이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대미 협의에 나섰다. 한미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정부-국회 합동 방미 등을 통해 미 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를 전개하였다. 결과적으로 IRA 하위 규정을 통해 우리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북미내 최종조립이 없는 일부 경우(리스, 렌트 등)에도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원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생산/투자 세액공제가 마련되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과 재정지원 세부지침(NOFO),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왔다. 美 상무장관 앞 서한 발송('22.8월), 한미 산업장관 회의('22.9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22.11월) 등 각급에서 협의를 이어간 결과 미국은 가드레일 세부지침 초안 등에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 투자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첨단반도체 제조시설의 경우 10년간 5% 캐파 확장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에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장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표 3-2] 주요 대미 아웃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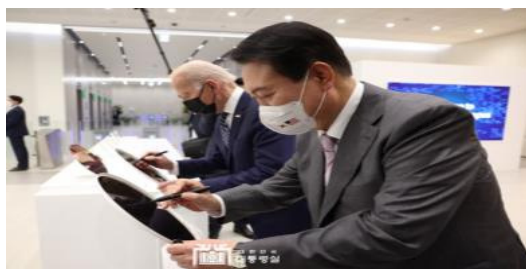
산업부 장관 방미('22.9)	• 美 상무장관과 반도체, 전기차 현안 협의, 美 의회 면담
통상교섭본부장 방미('22.9)	• 美 무역대표부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 등 협의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방미('22.12)	• 美 의회, 정부 대상 IRA 법안 개정 촉구, 하위규정 협의

2) 첨단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미 파트너십 구축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제조 능력과 첨단 기술 역량 보유한 미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필요성과 잠재력이 크다.

지난 '22년 5월, 바이든 美 대통령의 한국 순방을 계기로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공급망·산업 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를 신설하였다. 동 채널은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확대한 것이다. 산업협력·경제안보 이슈와 함께, 연구개발, 비즈니스 원활화 및 여타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3-1] 한미 주요 파트너십 활동 내역



〈한미 정상 반도체 공장 방문('22.5)〉



〈공급망 산업대화 출범('22.5)〉

3)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안정적 교역·투자 관계 형성

한미 양국은 '22년 발효('12.3~) 10주년이 된 한미 FTA를 통해 안정적으로 교역·투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양국은 FTA를 통해 상품, 서비스 교역에서 관세와 규제 장벽을 낮추고 공동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 FTA 체결 이후 11년간 양국간 교역은 FTA 발효전에 비해 90% 증가('11년, 1,100억불 → '22년, 1,916억불)하였으며, 상호 투자 역시 두배 넘게 증가('02~'11년, 682억불 → '12~'21년 1,975억불)하였다.

FTA 현안은 분과별로 20개에 달하는 FTA 이행채널을 활발히 가동하여 해소하였다, 또한 업계의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FTA활용센터 등을 통해 지원하였다.

[표 3-3] 한미 교역 및 투자액

구 분	'17	'18	'19	'20	'21	'22
교역량 (상품, 억불)	1,194	1,316	1,352	1,316	1,691	1,916
상호 투자 (억불)	165	150	168	161	304	271 (3분기누적)

* 출처 : 산업부, 수출입은행

2) 對EU 통상 협력

1) EU 통상현안에 체계적·선제적 대응

양국 정부는 한-EU FTA 무역위원회, 이행위원회 등 공식채널을 통해 양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다. 한-EU간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장관급 협의체인 한-EU FTA 무역위원회('22.11월 제10차 무역위 개최)를 통해 FTA 이행현황을 점검해왔다. 최근에는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도 논의하고 있다. 활발한 통상협력을 통해 '22년 기준으로 EU는 한국의 1위 투자 파트너이자 3위 교역국이며, 양국간 투자 및 교역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 한-EU 교역 및 투자액

구 분	'17	'18	'19	'20	'21	'22
교역량 (억불)	969	1,068	989	1,027	1,295	1,363
상호 투자 (억불)	104	167	168	165	283	-

* 출처 : 산업부, 수출입은행

한-EU FTA 이행채널을 통해 EU가 도입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제도(CBAM) 등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타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요구해왔다. EU 주요 인사 방한, EU 출장 등을 통해 유럽의회대표단, EU 집행위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등과도 지속 협의해왔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세이프가드, GDPR 적정성 결정 등 통상현안에 대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필요 시 주한EU 및 EU 회원국 대사들 면담 등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2)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EU 시장 진출 뒷받침

국내 산업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정책 및 경제법안에 대해 국내 업계의 EU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입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EU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소개하는 세미나와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CBAM에 대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1.12월 'CBAM 인포세션'을 EU 집행위와 공동 개최하였다. EU 집행위 조세총국, 기후총국, 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등 EU 담당관들이 직접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CBAM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 업계, 정부, 학계에서도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EU의 역외보조금 시행에 앞서 역외보조금 법안 및 이행법안에 대한 이해 및 국내 업계 사전대비를 돕기 위해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60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로펌과 함께 ▲역외보조금 규정 및 이행법령 ▲경쟁법적 검토 ▲공공조달 ▲기업결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림 3-2] 컨퍼런스 개최 등 주요 활동 내역



〈한-EU 무역위원회개최('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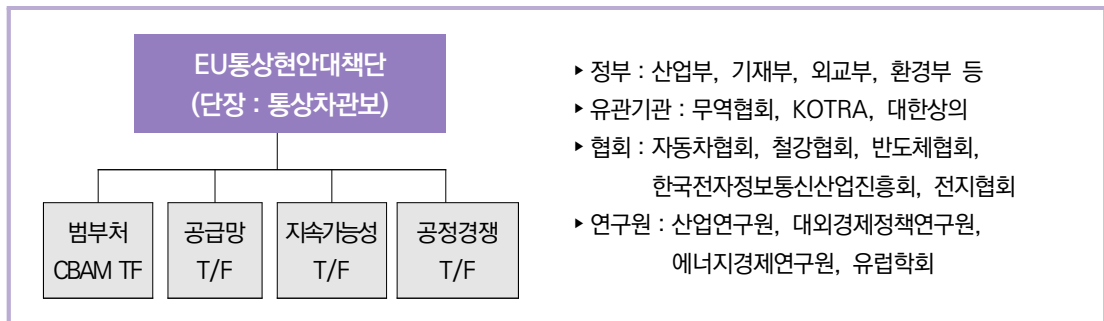
〈한-EU 통상정책포럼('21.10)〉

3. 향후 계획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등을 위해 美 상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미측에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요구가 없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우리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IRA에 대해서는 배터리 업계 등 미국 진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며 손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U가 추진중인 입법안은 입법 완료시까지 관련 정부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對EU 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도 정부는 EU와 양자 현안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긴밀히 협력·대응해오고 있었으나, 미-중경쟁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EU에서도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수 입법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종합 대응창구를 마련하였다.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 업계, 학계 그리고 연구계가 함께 EU의 입법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여 법안 분석 및 부담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하고, 선제적으로 우리의 입장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제2절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협력 추진

통상협력총괄과 사무관 마선영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문성용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이정훈

1. 개요

2018년 무역에서부터 시작된 갈등은 ‘첨단기술 패권경쟁’으로 심화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각각의 동맹국들까지 포함하며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을 띠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유인하는 등 리쇼어링 확대에 힘썼고, 동맹 및 파트너와 연합하여 동맹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판 수출통제리스트와 수출통제법을 제정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조치들로 중국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고, 경제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진했다.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COVID-19 사태와 맞물려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을 경험하면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의 위험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의 경우 2021년 말 발생했던 요소 수급 애로를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인 중국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을 배제하기보다는 그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또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전략적 대상국을 선정한 후 협력 수준, 국가별 경험 추진 주체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공급망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공동 연구 개발(R&D), 민간투자를 비롯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통상협력 전략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치 아래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국, 일본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추진함은 물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원자재·중간재 교역 증가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세안·서남아 지역,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신흥 협력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과 강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했다.

2. 추진 현황

1) 중국·일본,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추진

1) 추진 방향

최근 미·중 갈등의 심화,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시장 불안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의 교역대상국이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중국과 상호호혜적인 교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한중 협력 채널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재·서비스 등 중국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한일 관계의 경우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로 인하여 정부 간 교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국은 여전히 상호 5위권 내의 교역대상국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를 지속 지원하면서 협력 시너지가 높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 주요 정책성과

중국과는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과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다양한 경제행사를 통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기존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서비스, 소비재 등 유망분야 등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하이, 산둥성, 장쑤성, 산시성 등 중국의 주요 지방에서 산발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 부품 등의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29차 산업자원안보 TF'(22.3월), 중국 진출기업 및 공급망 점검회의(22.4월) 등을 통해 중국 현지 공관,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기업 애로 및 공급망·물류 영향을 점검했으며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와 소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중국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와이어링하네스) 생산 공장들이 방역 문제로 조업이 중단되면서 국내 자동차 기업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도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면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장 가동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중국 정부에서 요소·비료 등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중국의 요소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요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요소수가 필요한 국내 디젤 차량, 특히 화물차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종합상사 등과 함께 제3국 요소 수입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소통하여 기존에 우리 기업이 계약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중 협력 채널의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앙·지방정부 등과 다층적인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계기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상무부장 간 대면 면담을 통해 양국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중국 공업신식화부와 ‘제4차 한중 산업장관회의’(22.1월),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22.1월) 등 정례 채널도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등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교류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6회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22.11월) 개최 계기 산업부장관-중국 산둥성 당서기 간 고위급 화상 면담을 통해 산업·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 및 물류·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면담에서 와이어링하네스 등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칭다오항 환적 물류 원활화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산둥성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제4회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22.11월),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22.12월) 등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와 네트워킹을 추진하였다.

2022년 한중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포럼’(22.8월), ‘한중 공동 번영 포럼’(22.9월) 등 산업계 협력 행사를 개최하여 그간의 한중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도 참여하여 중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푸젠성 샤먼시에서 개최된 ‘제22회 중국 국제 투자무역상담회’(22.9월)에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의 한국 홍보관에서 우수 한국 상품을 홍보하였고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박람회인 ‘제19회 중국-아세안 엑스포’(22.9월)에서는 특별파트너국으로 참여하여 한국관을 운영하였다. 중국 정부에서 개최하는 ‘아세안+3 공급망 협력포럼’(22.7월),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국제포럼’(22.9월)에도 고위급 축사를 통해 국가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원자재, 제조업 중심의 협력뿐만 아니라 소비재, 서비스, 新 인프라 등 유망분야에서 협력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등 영향으로 한중 간 기업인 이동과 교류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포럼’을 개최(21.6월, 22.10월)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구체적인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였다. 중국 정부의 신형 인프라 건설 정책 등 인프라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한중 플랜트 산업 협력 활성화 포럼’(22.11월)을 개최하여 스마트 기계, 산업 인터넷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일본과는 양국 경제계 간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양국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표적인 한일 경제협력 행사인 '한일 경제인 회의'('21.11월, '22.5월)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으며, '한일 산업기술 페어'('21.11월, '22.11월) 등을 통해 양국 기업 간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미래차, 화학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양국 경제단체 간 '한일 재계회의'도 3년 만에 재개되어 한국에서 개최('22.7월)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양국의 기업인들은 수출규제와 양국 간 경색국면으로 인하여 비즈니스상 불확실성이 크다며, 하루 빨리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켜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한·중·일 3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도 3국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매년 개최하여 공급망, 탄소중립 등 공동 과제 대응 및 지역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부산에서 개최된 제20회 회의('22.11월)에서는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과 함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해 중국과 일본에 지지를 요청하였다.

한편,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는 2022년에 발효 8년차를 맞이하기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초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모두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어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을 도모하는 통일된 무역 규범이 마련되었다. RCEP은 그동안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한일 간에 사실상 한일 FTA 체결 효과를 지닌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정부 간 고위급 교류 및 경제통상 협력 노력에 힘입어 2022년 한중 교역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한일 교역도 최근 800억 불 이상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5] 한-중, 한-일 교역액

한-중 교역액(단위 : 억불)					한-일 교역액(단위 : 억불)				
구 분	2019	2020	2021	2022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수 출	1,362	1,326	1,629	1,558	수 출	284	251	301	306
수 입	1,072	1,089	1,386	1,546	수 입	475	460	546	547
교역액	2,434	2,415	3,015	3,104	교역액	759	711	847	853

* 한국무역협회

2 동남아·서남아, 인태전략 下 맞춤형 파트너십 강화

1) 추진 방향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요인의 증가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유망시장인 동남아·서남아 지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2년 1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 및 이와 연계한 「신정부 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전략에서 우리 정부는 ①현재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에 집중된 협력을 다른 아세안 및 서남아 국가들로 확대하고, ②핵심광물 및 첨단산업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③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를 비롯한 신통상 분야에 대한 공조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주요 정책성과

우리 정부는 일관된 對동남아·서남아 경제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각종 통상협정과 양·다자 고위급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을 비롯한 신통상이슈 및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포함된 세계 최대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2월 발효)과 함께 한-캄보디아 FTA('22.2월 발효), 한-인도네시아 FTA('23.1월 발효), 한-필리핀 FTA('21.10월 타결) 등 양자 FTA를 추진하여, 역내 원활한 교역·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2.5월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과 한-싱가포르 DPA('23.1월 발효)를 통해 동남아·서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신통상 질서 수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 등 아세안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방안 및 자유무역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고,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 등 각종 양자 장관급 및 고위급회담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FTA, 양·다자협의체 등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는 우리 해외투자 및 수출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및 각종 현지 수출입규제를 비롯한 기업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베트남·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요 협력국과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MOU('22.2월)」, 「한-인니 그린투자 MOU('22.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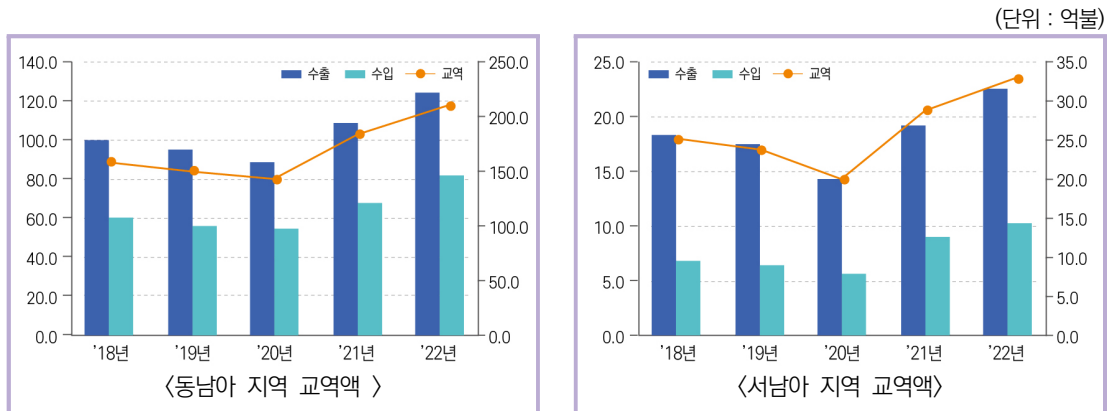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22.11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22.12월)」, 「한-베 포괄적 전력산업 협력 MOU('22.12월)」 등 각종 MOU를 체결하여 미래 공급망 안정성 확보, 신통상 질서 구축 및 미래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서남아 국가의 중심지인 인도와도 수차례의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22.1월, 6월, 9월) 등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고, 인도 코리아플러스 MOU 갱신('22.5월) 등을 진행하여, 우리 해외투자·수출기업의 각종 애로 해소와 원활한 기업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와 동남아·서남아 지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년에는 각각 역대 최대 교역액을 기록하였다. 동남아 지역과의 교역은 '20년 143.8억불, '21년 176.5억불, '22년 207.4억불로 연평균 20.1% 증가하였고, 서남아 지역과의 교역도 '20년 20.0억불, '21년 28.3억불, '22년 32.9억불로 연평균 28.4% 증가하였다. 특히, '22년 對아세안의 무역수지는 42.4억불, 對서남아 무역수지는 12.5억불을 기록하는 등 아세안·서남아 지역은 우리 경제의 주요 교역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투자 측면에서도 동남아 지역 연 100억불, 서남아 지역 연 3억불 수준의 현지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자동차·전자·철강·화학 등을 중심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동남아 및 서남아 시장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그간 우리 기업 현지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에도 생산거점 설립과 가동이 본격화되는 성과도 거두어, 특정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공급망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림 3-3] 동남아·서남아 지역 교역액



* 한국무역협회

③ CIS, 지정학적 요소를 감안한 전략적 협력 추진

1) 추진 방향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침공을 침략전쟁이라 비난함과 동시에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대대적으로 대러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서방 기업들의 대거 철수, 현지 생산 공장들의 가동 중단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그간 추진해 오던 러시아 중심의 통상정책을 수정해야만 했다.

미·중 갈등, COVID-19, 러-우 전쟁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원개발과 연계한 조선 및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등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상대국의 제조업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우리 기업 진출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했다.

2) 주요 정책성과

'21.9월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 Eurasian Economic Union) 통상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EAEU FTA 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EAEU 5개국과의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21.10월,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등 분야별 협력 전략을 논의하였으며, '21.12월에는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공급망 이슈를 논의하는 등 한-러 양국 간 고위급 추진하며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 외, 한-러 드론 모빌리티 컨퍼런스('21.9월),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21.11월), ICT·소재부품 투자포럼('21.11월) 등을 통해 양국간 신산업 비즈니스 협력 확대도 추진했다.

중앙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제2차 한-카자흐 워킹그룹('21.5월)을 추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신규 경험 프로그램 「Fresh Wind」를 개편했다. 카자흐스탄 정상방한 계기 한-카자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21.8월)을 개최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제5차 한-우즈베크 워킹그룹('21.7월), 제11차 한-우즈베크 무역경제공동위('21.11월) 등을 개최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고위급 면담 계기 에너지, 교통·인프라, 섬유·조선, 물·환경 등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해 나갔다.

오프라인 협력을 대체하여 온라인 협력도 활발히 추진했다. 우리기업의 신흥국 진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 상담회 및 양자 경험 웨비나를 개최하였고, 온라인 전시관 및 디지털 경제협력 파트너십도 개최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MDB별 조달정책 및 주요 발주처 유망 프로젝트 정보를

소개하고 산업부-ADB 조인트 포럼('21.11월)을 통해 발주처와 우리기업간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해외수주지원협의회, EPC 상생협력포럼 등을 통해 유망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EPC 기업들의 애로를 지원하기도 했다.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ODA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국 대상 프로젝트 5건, 기술지도 4건 등을 추진했고, 우즈베키스탄과는 디지털산업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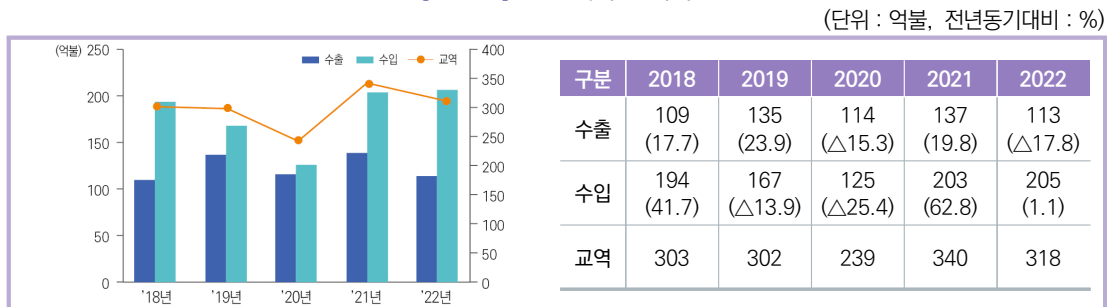
[표 3-6] 중앙아 ODA 추진 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21년	'22년
프로젝트 (5)	우즈베키스탄 국가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2.3	2.5
	우즈베키스탄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29.5	36.8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산업기술혁신센터 조성 지원	-	9.5
	우즈베키스탄 친환경(CNG) 농기계 보급지원	-	7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 구축	-	3.5
TASK (4)	우즈베키스탄 농기계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	-	2.1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애로기술지도사업	5	5
	키르기즈공화국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	2.1	5.45
	타지키스탄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	2.1	5.45
총 계		41.0	77.2

양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교역의 증가가 이뤄졌고 '21년 기준 수출액 137억불, 수입액 203억불로 교역액은 340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기준 19.8%, 수입액 기준 62.8% 증가한 수치였다. 다만 '22년에는 러우전쟁의 여파로 對 러시아 수출이 감소하면서 CIS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8% 감소하였고, 교역액은 318억불로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하였다.

[표 3-7] CIS 지역 교역액



* 한국무역협회

제3절 ▶ 신시장 미래협력 기반 구축

아주통상과 사무관 김민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이충녕
중남미대양주통상과 사무관 김민수

1. 개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자원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과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규범화 및 기후변화 관련 각국의 통상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요 공급처이며 플랜트·원전 수출 대상지역으로, 풍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산업·경제·자원협력 중점 대상지역이다.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 수출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증축하고 있으며, 특히 카타르 등 천연가스 생산국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한-중동 간 적극적인 투자 협력이 요구된다. 한편, 사우디, UAE 등 중동 주요국들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ICT 육성 등 산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크지 않고 정치 불안 및 사회·경제적 인프라 부족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높은 지역이지만, 또한 높은 인구증가율 및 풍부한 자원보유량 등을 감안 시 수출 확대와 자원개발협력 대상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가나, 남아공, 케냐 등 아프리카 주요국들은 빈곤 해소, 자원의존 경제구조 전환 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 추진현황

① 중동, 新 중동분 조성 추진

중동은 한국의 에너지 주요 공급처이며 플랜트·원전 수출 대상지역으로, 풍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산업·경제·자원협력 중점 대상지역이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 수출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증축하고 있으며, 특히 카타르 등 천연가스 생산국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한-중동 간 적극적인 투자 협력이 요구된다. 한편, 사우디, UAE 등 중동 주요국들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ICT 육성 등 산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동은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에너지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고 있다.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의 64.4%(6.6억 배럴), 천연가스 도입량의 32.0%(15백만톤)를 공급했다.

[표 3-8] 중동지역 국가별 원유 도입 현황

구분	2022년			2021년		
	물량(백만B)	순 위	비중(%)	물량(백만B)	순 위	비중(%)
사 우 디	340	1	33.0	282	1	29.4
쿠 웨 이 트	104	3	10.1	102	3	10.6
이 라 크	87	4	8.4	60	4	6.3
U A E	85	5	8.2	57	5	6.0
카 타 르	48	6	4.7	51	8	5.3
전 체	1,031	-	100	960	-	100

* 에너지통계월보

[표 3-9] 중동지역 국가별 천연가스 도입 현황

구분	2022년			2021년		
	물량(천톤)	순 위	비중(%)	물량(천톤)	순 위	비중(%)
카 타 르	9,727	2	21.0	11,464	1	25.0
오 만	4,757	4	10.3	4,415	5	9.6
U A E	375	13	1.0	243	12	0.5
전 체	46,394	-	100	45,932	-	100.0

* 에너지통계월보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동지역은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자원을 공급받는 한편, 이 지역에 인프라·플랜트 수주를 통한 플랜트 기자재 수출, 자동차(부품 포함), 전자제품, 선박 및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은 2014년 348억불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까지 하락했으나, 2021년 소폭 증가 후 2022년에는 12.3% 증가하며 크게 반등했다.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입은 '12~'14년 1천억불을 상회한 이후 등락을 지속하다 2022년 전년 대비 67.9% 증가하며 지난 20년 중 가장 가파르게 반등했다.

[표 3-10] 대 중동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34,790 (7.7)	30,413 (△12.6)	26,228 (△13.8)	24,380 (△7.0)	21,668 (△11.0)	17,661 (△18.6)	14,675 (△16.9)	15,600 (6.3)	17,524 (12.3)
수입	119,121 (△5.6)	68,505 (△42.5)	54,126 (△21.0)	70,153 (29.6)	86,071 (22.7)	71,999 (△16.3)	44,725 (△37.9)	65,189 (45.8)	109,459 (67.9)
수지	△91,152	△93,898	△84,331	△38,092	△27,899	△45,773	△60,384	△49,589	△91,934

주 : ()은 전년도기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중동 지역분류 기준)

[표 3-11] 대 중동 수출입 품목 현황(2022년)

(단위 : 백만불, %)

구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품목명	금액	증감율	비중	품목명	금액	증감율	비중
1	승용차	1,733	34.1	16.9	원유	62,811	73.0	68.1
2	무기류	584	-3.5	5.7	천연가스	13,808	59.5	15.0
3	자동차부품	423	-0.2	4.1	나프타	10,186	61.1	11.0
4	선박	407	280.2	4.0	알루미늄괴	1,122	25.3	1.2
5	합성수지	373	17.2	3.6	중유	944	46.6	1.0

* 한국무역협회

1) 추진 방향

대다수 중동 주요국들은 에너지자원이 전체 수출 및 재정수입의 약 60~90%를 차지하는 에너지자원 의존적 경제구조로서 석유화학 등 자원과 연관된 산업 외에는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며, 자동차, 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동 산유국은 산업의 다각화를 에너지전환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표 3-12] 중동 주요국 산업다각화 전략 주요내용

국가명	산업다각화 주요 내용	협력채널
01 사우디 Saudi Vision 2030	▶ 민간분야 GDP 기여도 65%, 비석유부문 수출비중 50%, 비석유 재정수입 증대 등 중장기 국가운영계획 ▶ (중점 육성분야) 조선, IT, 방산, 관광, 광업 등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
02 UAE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 '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다변화된 고부가 가치 경제 건설 ▶ (중점 육성분야) 항공, 우주, 제약·의료장비, 식품, 기계 등	한-UAE 산업기술정책 전략회의
03 카타르 National Vision 2030	▶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선진국 도약, 지속적인 경제 성장 목표 ▶ (중점 육성분야) 에너지, 건설, ICT 등	한-카타르 고위급전략협의회

* 코트라

탈석유(Post-oil) 시대에 대비한 중동 주요국들의 산업다각화 노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동 주요국들과의 전략산업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정상 경제외교 및 정부간 양자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자금원 역할을 하는 중동 국부펀드와의 투자 협력을 통한 민간 협력기회 발굴도 추진해나갔다.

2) 주요 정책성과

① 정상 아중동 3개국(UAE, 사우디, 이집트)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1월 UAE(1.15~18일), 사우디(1.18~19일), 이집트(1.19~22일) 등 아프리카·중동 주요국들을 방문하였다. 정상 순방을 통해 아중동 3개국들과의 경제협력을 다각화하는 한편, 미래 산업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UAE와 사우디에서 개최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1.16일, 두바이)’ 및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1.18일, 리야드)’을 통해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 MOU 등을 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간 FTA 협상 재개를 선언함으로써 중동지역과 무역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집트에서는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1.20일, 카이로)’ 및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개시 선언을 통해 미래지향적 파트너로서의 기반을 조성했다.

② 사우디 왕세자 방한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는 2022년 11월, 3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모하메드 왕세자의 공식 방한 계기, 11월 17일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한-사우디 양국 기업은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신산업 등 분야에서 290억불 규모, 26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한국과 사우디 양국은 총 26건의 계약과 MOU 등을 통해 정밀화학, 뿌리산업(주단조) 등 제조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네옴 등 사우디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 분야와 청정에너지(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울산으로 확정된 S-Oil의 9.3조원 규모 석유화학 2단계 사업은 단일 규모로는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울산) 및 일자리 창출, 국내 정유 산업 고도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게임,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분야의 MOU가 다수 체결되어 한-사우디 양국간 협력이 에너지·건설과 함께 산업, 문화 등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프리카, 성장모델·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1) 추진 방향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크나, 국내 정치 불안, 만연한 부패, 국가 신용리스크 및 취약한 제도, 인프라 기반 등 성장 제약요인도 상존하는 대륙이다. 또한 자원 부존량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등 자원 양극화가 심하고, 국가별 경제구조, 경제성장단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이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각국 경제를 성장모델에 따라 농업기반형 경제, 제조업기반형 경제, 산업화이행형 경제, 자원기반 성장 경제로 구분하고, 아프리카 내 여러 지역경제공동체를 고려해 권역별로 유형화한 후, 성장모델별·권역별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표 3-13]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 유형별 특징

성장모델	유형별 경제구조 특징	발전전략 방향	주요국
농업기반형 성장국가	• 농촌인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농업 부문이 압도적인 최빈국	경제발전의 기초 인프라 구축, 농공업 융합허브 구축, 초기 산업화	에티오피아, 차드, 시에라리온, 말리, 짐바브웨 등
제조업기반형 성장국가	• 수출다변화와 경제적 변화를 이룬 국가 - 다변화된 10개 이상의 상품이 수출의 75%를 차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 글로벌 소싱기지 구축	남아공,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나미비아 등
산업화이행형 국가	• 아직 경쟁력을 갖지 못한 내수시장형 제조·서비스업 존재 - 6~10개 상품이 수출의 75%를 차지, 농업 분야의 점차적 감소 진행	기초 인프라 구축, 수출 제조업 육성, 물류·ICT·교육·의료 지역허브 구축	세네갈,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카메룬 등
자원기반형 성장국가	• 원유 등 천연자원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 - 1~2개만의 상품만으로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	비자원부문으로 경제구조 다각화, 국가별 맞춤형 자원기공단지 구축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리비아 등

* 출처 : 산업연구원

2) 주요 정책성과

우리 정부는 성장모델별·권역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고위급 인사 교류를 진행하여 경제협력 모멘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21.11월에는 모잠비크 대통령이 방한 (LNG운반선 출항·명명식 참석)한데 이어, '22.11에는 국무총리가 모잠비크에 방문하여 LNG·핵심광물 등 에너지 공급망 협력 논의를 진행하여 통상협력이 강화되고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22.11월 동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인 케냐 통상투자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FTA 노하우 공유 및 부처간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를 통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2.12월 서아프리카 경제중심지인 가나에 국무총리가 방문하여 대통령과 면담을 갖는 한편, 이를 계기로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을 한국에 초청해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광물, 교통·운송,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아프리카 정세 동향 파악 및 협력 의제 발굴을 위한 아프리카 전문가 포럼,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전문가 포럼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현안 논의를 이어나갔다. '21.8월에는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면담 및 서한 전달을 통해 기업 해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21.7월 남아공 폭동 사태 때에는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부·무역관을 통한 동향을 파악하고, 고위급 서한을 남아공 측에 발송해 지원을 요청하였고, 남아공 정부의 폭동으로 피해받은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 '21.11월 에티오피아 내전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는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현지 정세·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기업인 등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3-14] 대 아프리카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10,850	10,161	9,767	8,117	12,020	13,841
수입	7,085	9,079	7,492	5,739	9,749	15,130
수지	3,765	1,082	2,275	2,378	2,271	△1,289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표 3-15] 대 아프리카 품목별 교역 현황('17~'22년)

(단위 : 백만불)

순위	수출 품목		순위	수입 품목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7,250	1	원유	12,472
2	석유제품	10,258	2	동제품	5,968
3	자동차	7,606	3	석탄	5,024
4	합성수지	4,167	4	철광	3,633
5	기타 석유화학제품	1,816	5	천연가스	4,138

* 출처 : 한국무역협회

3) 중남미, FTA 네트워크 확대 및 핵심광물 등 전략적 공급망 협력 추진

① 추진 방향

중남미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자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간 지정학적 갈등·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재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대륙이다.

특히, 미국의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정책에 따라 공급망이 미주지역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FDI 유입 등 수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리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하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중남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은 칠레('04), 페루('11), 콜롬비아('16), 중미('21)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멕시코, 에콰도르, 메르코수르 (MERCOSUR) 등 다른 중남미 국가·권역들과도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남미 지역과 전략적으로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남미 新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② 주요 정책성과

아시아, 북미, 유럽에 이은 우리의 4대 수출시장인 중남미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양측의 교역규모는 '01년 132억불에서 '21년 542억불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과 중남미는 교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한국은 그간 중남미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1차 상품 및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형태의 교역구조를 시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20년, '21년, '22년에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21년 對중남미 수출액은 258억불, 수입액은 284억불을 기록했으며 '22년 수출액은 266억불, 수입액은 327억불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중남미 각국에 투자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다양한 중남미 국가들의 현지 산업,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표 3-16] 대 중남미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28,095	27,768	26,337	19,501	25,817	26,590
수입	17,081	19,332	20,342	20,381	28,439	32,739
수지	11,015	8,436	5,996	△880	△2,623	△6,149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표 3-17] 대 중남미 품목별 교역 현황('17~'22년)

(단위 : 백만불)

순위	수출 품목		순위	수입 품목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0,706	1	식물성물질	12,467
2	자동차부품	16,160	2	동제품	10,962
3	자동차	15,159	3	정밀화학원료	4,638
4	철강판	12,749	4	기호식품	4,270
5	반도체	8,483	5	석탄	2,60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중남미가 성장하는 신흥시장이자, 공급망 다변화 등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에 걸쳐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22년은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국무총리의 남미 3개국(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순방 등을 통해 한-중남미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하였다.

우선 FTA 관련,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한-중미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업부는 기체결 FTA의 이행에 노력하는 한편 對중남미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멕시코, 에콰도르, 메르코수르(MERCOSUR)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도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21.3월에는 한-중미 FTA가 파나마에 대해 발효됨으로써 전제 발효되었고, '21.9월에는 한-중미 FTA 제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1.8월에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제7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21.12월에는 한-콜롬비아 FTA 제3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편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태평양동맹(PA)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22.1월에는 태평양동맹(PA) 공동선언문에 한국과의 협상 개시 의지가 언급되었으며, 현재에도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22.3월에는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 협상 개시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에콰도르의 경우, '22.3월에 한-에콰도르 SECA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22.11월에는 키토에서 8차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진전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한편 '21~'22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인적 교류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고위급 방문 등 교류는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교류는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산업,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21.8월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였고, '21.11월에는 콜롬비아 부통령이 방한하여, 한국과 콜롬비아 간 FTA 이행을 강화하고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21.8월에는 멕시코 에너지부 장관이 방한하여, 한-멕시코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21.11월에는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여, 한국과 코스타리카 간 통상·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적극 모색하였다. '21.11월에는 칠레 광업부 장관 방한 계기에 한-칠레 저탄소 수소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한-중남미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22년에는 '22.10월에 국무총리가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각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신산업, 핵심광물, 수소·신재생,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칠레 방문 시에는 양국 광업기관간 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화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중남미에 진출하였거나 중남미와 관련 있는 국내 기업,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과의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측 기업 및 전문가들과 중남미측 기업, 전문가 및 정부 인사들 간 교류 및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국내 관계자들과 중남미 측 인사들이 참여하여 비즈니스와 경제협력 어젠다를 논의하는 연례 포럼인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21년(제25차), '22년(제26차) 개최하였고, 중남미 시장진출 전문가 협의회를 연중 수시 개최하여 중남미 관련 기업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22년 한-중남미 수교 60주년을 맞아 향후 새로운 60주년의 통상·산업·에너지 협력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22.11월 주한 중남미대사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중남미 국가 주한대사관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였다.

1. 개요

1) 디지털 통상

최근 글로벌 통상의 중심축은 기존의 FTA를 통한 상품·서비스 개방 논의에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탄소중립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다양한 이슈에서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전세계적으로 생산방식과 소비행태, 무역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켜왔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은 소위 ‘비대면 경제’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디지털 통상이란,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와 같이 실물 상품과 대면 서비스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방식을 통해 거래되는 거래방식의 변화는 물론, 온라인 콘텐츠와 데이터 전송 등과 같이 새로운 거래대상의 등장을 포함한다. 품목과 분야별로 자유화 수준을 설정하는 상품, 서비스와 달리, 디지털 통상은 교역 대상과 방식 전반에 대한 규범 도입이 필요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적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통일된 디지털 통상규범은 정립되지 않았으며, 주요국들은 양자, 지역, 다자간 논의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우리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통해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협력기회를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그린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자국의 능력에 맞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RC)” 원칙에 따라 다양한 탄소중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국의 상이한 경제상황을 근거로 한 탄소중립 정책이 국제교역에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을 발생시키고 위장된 무역제한 조치로 작용하여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린통상은 친환경 기술의 확산 및 기술혁신 촉진 등 외국의 각종 기후변화 대응,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협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정책공조,

친환경 제품 규범 마련, 탄소 고배출제품 수입규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의 효과적인 그린통상 대응은 환경 규범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이 보다 손쉽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역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IRA, EU의 CBAM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각국의 탄소중립을 근거로 한 보호주의 무역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통상대응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추진 현황

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202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서명('22.11월), 한-EU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22.11월),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진행('22.1월~), IPEF 디지털경제 협상 개시('22.12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10개 조항 합의 도출('23.3월 기준)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1) 양자

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서명

2022년 11월 제11위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앞서있는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의 양자 디지털동반자협정(이하 '한-싱 DPA')에 서명하였다(2023년 1월 14일 발효). 양국은 2019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10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협상 타결선언 이후 국내 절차를 거쳐 서명 및 발효까지의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한-싱 DPA는 최근의 디지털통상협정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 규범 측면에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온라인 거래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서비스 및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등과 관련한 규범을 담고 있다. 또한 AI, 핀테크, 디지털 ID 등 디지털 신기술 관련 협력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무역규범을 통해 실제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한-싱 DPA 서명과 더불어 양국 간 3개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해각서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양국 간 디지털 협력사업 발굴 채널인 디지털경제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 공동연구 협력, ▲전자통관 서류 관련 데이터 교환 협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싱 DPA는 앞으로 우리가 확장해나갈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의 모델이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DEPA, IPEF 디지털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 있어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18]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 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온라인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

② 한-EU 디지털통상 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 합의

2022년 11월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한-EU 간 비구속적 성격의 디지털통상 원칙에 합의하였다. 2007년에 체결된 한-EU FTA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전자상거래 규제 이슈에 대한 대화유지 의무 등 단 2개 조항에 불과하다. 동 원칙은 양측 간 디지털 규범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디지털 교역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소비자 신뢰, ▲기업 신뢰, ▲디지털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총 18개의 규범 및 협력 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는 2022년에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2021년 9월 발표)’을 근거로 한국, 싱가포르, 일본 3개국과 디지털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는데, 우리는 3개국 중 최초로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한 합의를 디지털 파트너십 내 포함하였다. 또한, 양측은 디지털 통상 원칙을 기초로 기존 FTA의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논의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관련 논의를 본격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2) 지역

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추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이하 ‘DEPA’)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 간 체결(‘21.1월 발효)한 복수국 간 디지털무역협정이다. 우리는 향후 DEPA가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이 되어 역내 글로벌 디지털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1월부터 DEPA 가입협상을 진행중이다.

DEPA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무역원활화 및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통상규범과 함께, 디지털 ID, 정부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관련 제도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22년 8월 중국과 캐나다의 DEPA 가입 절차도 공식 개시된 바, DEPA 가입을 통해 아시아(싱가포르, 중국) 대양주(뉴질랜드), 아메리카(캐나다, 칠레) 등 대륙별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디지털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 협상 진행

인태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4개 필라(무역, 공급망, 청정 에너지, 공정경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경제는 무역 필라의 핵심의제로, 기존의 디지털 협정에 포함된 내용들에 더하여 신규 규범 및 협력 요소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총 1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IPEF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내 공통된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는 한편, 디지털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되어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IPEF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우리 디지털 기업의 진출 관심 시장인 아세안 7개국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IPEF 민관전략회의 출범 계기 ‘디지털통상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협력수요를 청취하고 있다.

3) 다자 : WTO 전자상거래 협상

우리는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WTO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2019년 5월 호주, 싱가포르, 일본을 공동의장국으로 한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되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88개국이 협상에 참여중이며, 참여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매월 전체회의 및 조항별 소그룹 회의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리측 제안문이 최종 협상 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지국 확보 및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23년 3월까지 총 10개 조항(① 스팸 메시지, ②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③ 온라인소비자 보호, ④ 정부 데이터 공개, ⑤ 투명성, ⑥ 전자계약, ⑦ 종이없는 무역, ⑧ 개방 인터넷 접근, ⑨ 전자적거래 프레임워크, ⑩ 사이버보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1월 다보스포럼 계기 통상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2023년 말 실질타결’이라는 협상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데이터, 소스코드,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등 핵심조항을 중심으로 협상을 가속화해나갈 예정이다.

2 그린

정부는 환경규범이 조성되고 있는 국제무대뿐만 아니라, 자국에게 유리한 환경규제를 도입하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규범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새로운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범 조성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주자로서 2019년 12월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그린딜”을 공표하였으며, 21년 7월에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위한 각종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공개하였다. Fit for 55 법안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강화된 유럽내 환경 규제로 인하여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철강을 포함한 6개 탄소집약제품(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외국기업은 EU 수입업자를 통하여 유럽기업이 유럽내에서 지불하는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본격 시행 과정에서 적용대상 품목이 화학,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10월부터 25.12월 까지 전환기간 동안 수출기업은 EU내 수입업자를 통하여 수출량, 수출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및 원산지에서 기납부한 탄소가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26.1월부터는 수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1톤당 1개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증서 가격은 EU ETS 배출권 경매 가격과 연동하여 결정된다. 또한, EU는 CBAM 제도 적용 품목에 대한 ETS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34년까지 완전히 철폐하도록 예정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산업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CBAM 도입으로 인해 EU ETS 대상 역내기업에 비해 EU CBAM 대상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EU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법안 초안 발표(‘21.7.14) 즉시 산업계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 요구사항을 담은 정부의견서를 총 3차례 EU측에 전달하였다. EU CBAM 입법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이사회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우려사항을 직접 전달(‘22.12)하고 한국의 탄소저감 노력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한-EU FTA 이행위원회(‘22.12), 시장접근위원회 등 여러 WTO 정례회의 계기에 우리 요구사항을 EU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2)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른 탄소감축 노력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 이행기간('21~) 이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기후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글래스고 기후협약'이라고 불리는 합의문은 1.5℃ 기온 상한 유지,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 선진국의 재정지원 확충, 손실과 피해 기금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의 당사국총회가 파리협정의 세부규칙 완성을 위한 협상이었다면 COP26부터는 이행 행동을 위한 협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17개 규칙 중 16개 규칙은 COP24('18년, 폴란드)에서 합의를 하였고, 남은 하나인 국제탄소시장 관련 지침을 COP26에서 최종 타결하였다.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협약'의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에 손실과 피해, 에너지, 해양, 산림, 조기 경보, 정의로운 전환 등을 더하여 포괄적인 '샤름 엘셰이크 이행계획'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감축 의욕 향상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2026년까지 감축 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효과적 대응을 위해 그간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기후협상에 참여해왔다. 사전 정부대표단 논의를 거쳐 쟁점 의제에 대한 국가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감축 이행을 위한 감축 작업프로그램, 국가간 협력을 통한 국외 온실감축사업 등을 위한 국제탄소시장 지침 등에 대한 합의에서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선진국-개도국 간 중간자 관점에서 합의 도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매년 탄소중립 홍보관 운영을 통해 한국 산업계의 감축노력을 공유하고 최신 감축기술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1) 디지털통상

우리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동시다발적 디지털 협상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권역별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대를 목표로 한다. 또한, 우리 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규범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한편,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DEPA 가입절차를 2023년 중으로 마무리하고, IPEF 디지털 협상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복수국 간 협상에서의 논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 의견제시 및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EU, 한-영국 등 기존 FTA상의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중동지역 등 신흥시장과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싱 DPA의 이행 차원에서, 2023년 중 양국 디지털 비즈니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1차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하여 그간의 협력 성과와 관심사항 공유, 기업 네트워킹을 통해 양국 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2) 그린통상

향후에는 탄소국경제도, COP28의 감축작업프로그램 등 기존 협력채널에서의 논의가 성숙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청정경제 협상, 기후클럽 등 새로운 다자채널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친환경 시장진출을 촉진할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1) EU 탄소국경조정법안

CBAM은 2023.10.1.일부터 전환기간이 개시되어 수출기업은 수입품에 내재된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EU측에 보고해야 하며, 2026.1.1.일부터는 CBAM 인증서 비용 구매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다. 올해는 최종법안의 발효와 세부 시행규칙을 담은 이행·위임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CBAM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의 이행법안 제정과정에서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개별국가가 일방적인 탄소가격 및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의 적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논의를 통해 국제표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국내적으로는 CBAM 시행에 대비하여 「범부처 CBAM 대응 TF」를 본격 발족('23.1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환기간 시행에 앞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CBAM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간 합동으로 CBAM 보고의무 이행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추세인바,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탄소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 기술개발, R&D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23년부터는 각국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감축 작업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감축 작업프로그램의 논의 의제가 결정된 후, 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전문가·업계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COP28에서는 5년 주기로 각 당사국의 파리협정 목표에 대한 공동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파리협정의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개시된다. 정부는 그간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감축노력을 설명하는 등 동 이행점검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Part 4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대



제1절 ▶ 전략적 FTA 추진

1. 개요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사무관 박용균

우리나라는 2000년대 FTA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개방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003년부터 FTA 로드맵을 수립, 추진해왔다.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등 59개국과 21건의 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 외연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재산 보호 강화, 국내 제도 투명성 증진 등을 통해 국내 경제 선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미-중간 경쟁,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가치 사슬(GVC) 재편,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대두 등으로 산업·자원 정책과 연계되는 새로운 통상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FTA 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부는 CPTPP 등 메가 FTA 논의 적극 대응,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과의 양자 FTA 확대, 디지털, 환경·기후변화, 노동 등 신통상이슈 주도 등을 큰 방향으로 하는 새로운 FTA 추진전략을 수립·추진 중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경제블록이며(전세계 GDP 13%, 교역액 15%) 높은 수준의 자유화, 규범 등이 형성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주요회원국 아웃리치 등을 통해 대내외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2022년 1월 발효된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주요국인 캄보디아, 첨단기술 강국인 이스라엘 등과 신규 양자 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통상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MERCOSUR, 에콰도르 등과 FTA 협상도 지속 추진중이다.

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논의 내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싱가포르와 타결하였으며, 2022년 12월에는 EU와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 속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통상원칙을 채택,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새롭게 마련한 FTA 추진전략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혁신 성장과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2. 추진 현황

1 신규·협상중 FTA(2021~2022)

1) 한-이스라엘 FTA 발효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사무관 심주영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하였으며, 2021년 5월 서울에서 협정문에 정식 서명, 2022년 9월 국회 비준을 완료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한-이스라엘 FTA 발효 계기 홍보설명회를 통해 FTA 주요 내용 및 활용전략 등을 소개하였으며, 2022년 12월 1일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표 4-1]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

- **상품** 양국은 전체 품목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 약속
 - 우리 관심품목인 자동차(7%) 및 부품(6~12%), 냉장고(12%), 섬유(6%), 화장품(12%) 등 관세 즉시철폐
 -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 단계적 철폐

기준	우리측	이스라엘측
품목수	95.2%	95.1%
수입액	99.9%	100.0%

- **서비스/투자**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 도입,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 개방 상호 약속
- **규범** 지재권 전반 보호 확보, 침해시 구제장치 강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의체계 마련
- **협력**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IT·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분야 기술협력 등

이스라엘은 첨단기술 및 지식 기반 산업에 특화된 나라로서,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 강국 이스라엘과 맺은 최초의 첨단기술 협력 중심의 FTA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중동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는 경우 첨단제품 개발·출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1]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 및 설명회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21.5월, 서울)〉



〈한-이스라엘 FTA 홍보설명회('22.11월, 서울)〉

2)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사무관 오 현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는 2012년 제1차 협상 개시 후 총 7차례의 공식협상 후 중단되었으나,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되어 3차례 공식협상 이후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되었다. 2020년 12월 협정문에 정식 서명, 2021년 6월 국회 비준을 완료하였다. 2022년 11월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계기 홍보설명회를 통해 FTA 주요 내용 및 활용전략 등을 소개하였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수교 50주년이 되는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를 발효할 예정이다.

[표 4-2]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내용

- **상품** 양국은 품목수 기준 한국 95.5%, 인니 93%, 수입액 기준 한국 97.3%, 인니 97% 관세 철폐, 한-ASEAN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 13% 제고

기준	우리측	인니측
품목수	95.5%	93.0%
수입액	97.3%	97.0%

* 기존 한-ASEAN FTA 자유화율(품목수/수입액) : (한)90.2%/93.6%, (인니)80.1%/88.5%

- **서비스**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 신규 개방 및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이 한-ASEAN FTA 대비 개선*

* (유통 서비스) 51%→67%,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55%→67%

- **협력** 경제협력 챗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콘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인도네시아는 니켈, 주석, 금, 보크사이트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 명의 인구를 가진 ASEAN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 향후 CEPA 산하 경제협력위 개최를 통해 공급망 협력 포함 향후 지속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2] 한-인니 CEPA 서명식 및 설명회



3) 한-캄보디아 FTA 발효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사무관 송수진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제1차 협상 개시 후 총 4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20년 11월 최종 타결하였으며, 2021년 10월 협정문에 정식 서명, 2022년 9월 국회 비준을 완료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한-캄보디아 FTA 발효 계기 홍보설명회를 통해 FTA 주요 내용 및 활용전략 등을 소개하였으며, 2022년 12월 1일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하여 양국 간 무역·경제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3]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 **상품** 품목수 기준 한국은 95.0%, 캄보디아는 89.1%의 최종 철폐율 달성
 -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화물 15%, 승용차 35%)와 및 부품, 건설중장비(15%) 등 관세 철폐,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기준	우리측	캄보디아측
품목수	95.0%	89.1%
수입액	91.9%	72.1%

- **원산지**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주요 관심품목 및 업계 애로사항 중심 원산지 기준 개선

※ 서비스와 투자 협정은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협상 협의 및 개시 예정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 승용차, 건설 중장비 등에 대해 캄보디아의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 우리는 의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와 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 외에도,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위기 발생시 협력유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그림 4-3]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 및 설명회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21.10월, 화상)〉



〈한-캄보디아 FTA 홍보설명회('22.11월, 서울)〉

4) 한-필리핀 FTA 타결

자유무역협상총괄과 주무관 조희경

양국은 2019년 6월 1차 협상 개최 이후 2년 4개월 간 5차례 공식협상, 수석대표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21년 10월 26일에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하였다

한국과 필리핀의 양자 FTA는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정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한-필리핀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다.

한-필리핀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되었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의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對필리핀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될 예정이며, 우리는 농수임산물에 대해 대부분 기체결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면서 필리핀에 대한 바나나 시장 개방으로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셰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하여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필리핀 FTA는 최근 주요 국제적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부속서에 별도 규정하였다.

양국은 한-필 FTA 타결 이후 잔여 기술적 쟁점을 추가 논의하는 한편 영문본 법률검토를 완료한 이후 각각 조약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는 협정문 국문번역에 대한 검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3년 주요계기에 한-필리핀 FTA 정식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 4-4]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10,594	12,037	8,363	7,127	9,656	12,314
수 입	3,702	3,569	3,656	3,086	3,894	5,177
무역수지	6,892	8,468	4,707	4,041	5,762	7,128
총교역액	14,296	15,606	12,019	10,213	13,550	17,49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5) 한-에콰도르 SECA 협상

자유무역협상총괄과 사무관 모덕춘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은 2015년 개시되어 2016년 5차 공식협상 이후 중단되었다가 2021년 출범한 Lasso 우파 新정부의 적극적 대외 개방정책 일환으로 재개되었다.

에콰도르는 우리의 중남미 지역 5대 수출시장이나 중남미 지역에서 상대적 미개척지지로 한국은 공산품을, 에콰도르는 농수산물과 에너지·광물자원 등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에콰도르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한류 관련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예측 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부품 등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과 에콰도르 광산 개발 추진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건설중 장비와 함께 라면·김·건강음료 등 현지에서 인기가 상승중인 유망 품목의 수익 증진이 예상된다.

또한, 에콰도르에서 최근 한류 인기와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으로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시청각(드라마, 음악, OTT), 유통, 온라인게임, 컴퓨터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서비스 시장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 미체결, 예측의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인 상황에서 SEC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투자자 권리 보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콰도르와 교역·투자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석유매장량 3위, 금·은·구리·아연 등 부존자원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 높은 시장이자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미국 달러 사용으로 외환 위험성이 적은 점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중남미 경제권과 연대강화를 위한 중심거점으로서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

[표 4-5] 한-에콰도르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609	782	479	378	761	771
수 입	128	117	250	91	207	210
무역수지	481	665	229	287	554	561
총교역액	737	899	729	469	968	98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6) 한-MERCOSUR FTA 협상

자유무역협상총괄과 사무관 권지은

한-메르코수르 FTA는 인구 약 3억명에 육박하는 중남미 거대시장과의 교역 확대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2015년 4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FTA 추진에 합의 하였으며, 이후 공동협약체 및 예비협의를 거쳐 2018년 8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후 총 5차례 공식 대면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자 2020년부터는 비대면으로 2차례 공식협상 및 2차례 회기간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하였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관세동맹으로, 1991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4개국 합의를 통해 탄생하였다. 메르코수르는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67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조 달러 수준으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메르코수르에 44억 달러를 수출하고 53억 달러를 수입했다. 2011년에 133억 달러를 수출하고 75억 달러를 수입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중남미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양국이 제조업-농업 등 상호보완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메르코수르 TA의 타결은 양국 간 경제성장 및 교역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지난 22년 3월 회기간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주요 쟁점이었던 농산물 시장개방 및 위생검역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룬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이 시장접근 및 규범수준을 제고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4-6] 한-메르코수르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5,477	6,603	5,693	5,406	4,463	5,313	5,818
수 입	4,462	4,529	4,488	5,391	5,346	207	210
무역수지	1,015	2,074	1,205	15	△883	△3,325	△5,077
총교역액	9,939	11,132	10,181	10,797	9,809	13,951	16,713

*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기체결 FTA 이행·개선

1) 한-미 FTA

미주통상과 사무관 강정현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양국간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대미국 교역은 1,916억불로 전년대비 13.3% 증가하여 대세계 교역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한-미 FTA는 서비스 부문에서도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 양국간 서비스 교역은 567억불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30.9%)하였다. 양국간 상품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지속됨에 따라 서비스 교역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표 4-7]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對美 교역	1,156	1,138	1,097	1,193	1,316	1,352	1,316	1,691	1,916
	(11.6)	(△1.6)	(△3.6)	(8.8)	(10.3)	(2.7)	(△2.6)	(28.5)	(13.3)
對세계 교역	10,982	9,633	9,016	10,522	11,401	10,455	9,801	12,595	13,700
	(2.1)	(△12.3)	(△6.4)	(16.7)	(8.4)	(△8.3)	(△6.3)	(28.5)	(8.8)

[표 4-8] FTA 발효 후 對美 서비스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 출	181	178	148	146	149	163	180	174	261
수 입	291	287	288	285	313	306	313	259	306
무역수지	△110	△109	△140	△140	△163	△143	△133	△85	△45
총교역액	472	465	436	431	462	469	493	433	567

또한 양국은 FTA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이행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교역과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는 양국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한-미 FTA 제6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10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와 경제적 유대의 핵심 기반으로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었다. 양국은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와 관련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비자, 원산지 증명 등 한-미 FTA 이행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 공동위원회와 연계한 민관합동 세션을 개최하여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2년 3월에는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USTR, 의회 등과 공동으로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더욱 발전적인 통상관계를 구축해나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2) 한-EU FTA

구주통상과 사무관 정다연

역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2021년 기준 세계 제2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선진시장으로 우리의 제1위 투자국이자, 제3위의 교역파트너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지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 모든 주요 무역규범을 망라하고,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현대화된 FTA를 EU와 체결함으로써, 중국 등 여타 경쟁국 대비 우리제품의 EU시장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EU FTA의 관세 철폐 및 시장개방 효과에 따라, 한국과 EU는 2022년 역대 최대치인 1,363억불의 교역규모를 달성했다. 특히 2022년에는 엔데믹 이후 제조업 생산이 정상화되어 對EU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무역적자규모도 10년내 최저를 기록하였다. 2022년 기준 주요 품목별로는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EU産 의약품, 자동차, 가방 등의 수입이 확대되었다.

투자 분야에서도 양측간 협력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신고기준으로 EU의 우리나라 투자 누계액은 1,168억불로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22년 EU 투자는 전년대비 22.6% 증가한 113.8억불로 투자대상국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표 4-9] 한-EU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488	517	481	466	540	577	528	476	636	681
수 입	562	624	572	519	573	623	558	551	659	682
총교역액	1,050	1,141	1,053	985	1,113	1,200	1,086	1,027	1,295	1,363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국과 EU는 고위급 채널인 무역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16개의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이행채널들은 지난 10년간의 운영을 통해 FTA의 체계적인 이행 및 양자 통상현안의 효율적인 협의 채널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과 EU는 한-EU FTA 이행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무역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FTA의 효율적인 이행 및 양자 통상현안 해소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제10차 한-EU 무역위원회는 2022년 11월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를 통해 양측 수석대표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집행위원은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상품 시장접근, 디지털 통상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의 FTA 이행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한-EU FTA 디지털 규범이 현재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논의를 위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을 채택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시장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21년 EU의 복합식품 규정 강화로 제한된 식육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EU에서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국제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한-EU는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교역과 투자촉진 등 더욱 격상된 파트너십으로 발전토록 노력할 계획이며, 자유무역의 모범사례로서 양측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그림 4-4]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3) 한-중 FTA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최은희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해로,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3,104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역관계 발전에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중요한 규범적 틀로 크게 이바지해 왔다. 양국은 한-중 FTA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FTA) 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산하의 상품무역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지식재산권위원회,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운영하며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애로도 해소하고 있다. 2022년 1월에 개최된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등 최신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우리 수출업체가 고대하던 원산지증명서 개정도 제4차 공동위원회를 통해 얻은 큰 성과 중 하나이다. 본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1건당 최대 20개 품목까지만 기재할 수 있어 20개가 넘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한 번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여러 건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양측의 공동위원장은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부속서인 원산지증명서 기재 품목 수의 제한을 없애는 결정문에 서명을 하였고, 각각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 개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양국 수출 기업들은 2022년 6월 12일부터 새로이 간소화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양국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위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공동위 결정문에 서명하는 모습)

[표 4-10] 한-중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1,459	1,453	1,371	1,244	1,421	1,621	1,362	1,326	1,629	1,558
수 입	831	901	903	870	979	1,065	1,072	1,089	1,386	1,546
총교역액	2,290	2,354	2,274	2,114	2,400	2,686	2,434	2,415	3,015	3,104

4) 한-영 FTA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서기관 김미송

한-영 FTA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대비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6월 타결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정식 서명 및 10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인 2021년 1월 1일 자동적으로 발효하였다. 양국 간 교역은 발효 전 89억불에서 2022년 말 기준 121억불로 증가하는 등 한-영 FTA는 양국 통상 관계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 왔다.

한편, 양국은 한-영 FTA 협정문에 따라 한-EU FTA와 동일한 협정의 개선을 위해 2022년 2월 한-영 FTA 무역위원회 개최 계기 통상장관간 공동선언을 통해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양국 국내절차 완료 후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영국은 유럽 내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양국간 FTA 개선을 통해 영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규범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1] 한-영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62.9	81.2	63.6	55	45	60	63
수 입	52.1	63.2	68.1	42	44	58	58
무역수지	10.8	18	△4.5	13	1	2	5
총교역액	115.0	144.4	131.7	97	89	118	121

5)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사무관 박정원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서 2003년 2월 정식서명 및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4년 4월 1일 발효하였으며, 한-칠레 FTA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은 발효 직전 15.8억불에서 2022년말 기준 83.2억불로 5배 이상 성장하였다.

칠레측의 요청과 핵심 광물자원 부국인 칠레와의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감안 2015년 4월 우리 정부의 칠레순방 계기 양국은 한-칠레 FTA 개선에 합의, 2016년 11월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선언 이후 2021년 10월까지 총 여섯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칠레측의 국내 상황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10월 우리 국무총리의 칠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상 재개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2022년 11월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차기 협상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12] 한-칠레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1,611	1,530	1,807	1,214	867	1,573	1,511
수 입	3,704	3,802	4,475	3,966	3,543	4,859	6,813
무역수지	△2,093	△2,272	△2,668	△2,752	△2,677	△3,286	△5,302
총교역액	5,315	5,332	6,282	5,180	4,394	6,432	8,324

6) 한-아세안 FTA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사무관 송수진

한-ASEAN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2007년 6월 발효 이후 지금까지 FTA 이행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행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ASEAN 시장 접근성 확대 및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추가 자유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21년 7월 개최된 제18차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서 RCEP 타결에 따른 민감품목의 추가 자유화 방향 및 한-ASEAN FTA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양측간 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하였다.

[표 4-13] 한-아세안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74.5	95.2	100.1	95.1	89.1	108.9	124.9
수 입	44.3	53.8	59.8	56.2	54.8	67.7	82.5
무역수지	30.2	41.4	40.5	38.9	34.2	41.1	42.3
총교역액	118.8	149.1	150.7	151.3	143.9	176.6	207.4

7) 한-호주 FTA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사무관 오 현

한-호주 FTA는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과의 FTA로 2014년 12월에 발효하였다. 자원 부국이자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호주와 공동위원회 및 상품, 에너지광물자원, 및 금융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통상 및 경제 협력의 견고한 플랫폼을 구축해 오고 있다. 2021년 7월 개최된 제30차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위원회에서는 광물,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자원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 및 기타 저탄소기술, 에너지효율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22년 4월 개최된 제5차 공동위원회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 공급망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표 4-14] 한-호주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7,501	19,862	9,610	7,891	6,187	9,745	18,753
수 입	15,176	19,160	20,719	20,608	18,714	32,914	44,929
무역수지	△7,675	702	△11,108	△12,718	△12,527	△23,169	△26,176
총교역액	22,677	39,021	30,329	28,499	24,901	42,659	63,682

8) 한-튀르키예 FTA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사무관 박정원

튀르키예는 인구 8,478만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유럽·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시장 잠재력 및 거대시장 인접성 등 신흥시장으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post-BRICs 국가로, 2013년 5월 1일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고, 2018년 8월 1일 서비스투자협정이 발효되었다. 이후 공동위원회 및 관세위원회 개최를 통해 협정의 원활한 이행 점검, 양국간 교역·투자 및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오고 있으며, 2022년 3월 제5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정 이행 현안, 원산지 검증, 통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4-15] 한-튀르키예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5,385	6,156	5,980	5,298	5,545	7,025	7,723
수 입	742	782	1,189	1,189	1,317	1,235	1,389
무역수지	4,643	5,374	4,791	4,109	4,228	5,790	6,334
총교역액	6,127	6,938	7,169	6,487	6,862	8,260	9,112

9) 한-콜롬비아 FTA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주무관 정희정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신흥 핵심 소비시장과의 FTA로 2016년 발효하였다. 2021년 12월 개최된 제3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체결 및 활용을 통해 한층 강화된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수출 편의 증진을 위해 최신 HS코드(HS 2022)를 적용한 품목별원산지기준(PSR)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산하 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통상 협력 확대 방안 논의를 시작하고, 그린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분야의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 4-16] 한-콜롬비아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853	816	1,012	1,143	598	898	940
수 입	433	651	834	718	683	704	815
무역수지	420	165	178	425	△85	194	125
총교역액	1,286	1,467	1,846	1,861	1,281	1,602	1,755

3 FTA 활용 지원

통상협정활용과 사무관 이선덕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FTA 네트워크 확대에 의한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다양한 FTA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전문가 컨설팅·교육,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온라인 상담·정보제공, 인력양성 등이 있다.

1) 전문가 컨설팅·교육·설명회

중소·중견기업은 FTA 활용이 어려운 주된 이유로 잦은 인력 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권역별로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는 FTA 활용지원센터(종합센터(서울) 1개, 지역센터 18개)를 구축하고, 센터별 전문가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협정별 양허안 확인방법, 적정 품목(HS 코드) 분류 방법,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방법 등을 1:1 교육,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래 한국무역협회 내에 한·중 FTA 전담지원 조직인 '차이나데스크'를 설치·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2022년에만 한·중 FTA 활용 및 비관세장벽 등 관련 상담을 총 4,587차례 진행하였으며, 104개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한편, 2015년 중국 북경을 시작으로 FTA 체결국 소재 코트라 무역관 내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두고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의 FTA 활용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등 10개국 15개 센터에서 코트라 직원, 현지채용인력 및 자문단 등 총 85명의 인력이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지원 사례 : RCEP 및 한·중 FTA 활용 설명회(중국 광저우)

- 일시/장소 : 2022. 6. 16.(목) / 후이저우 르네상스 호텔
- 협업·후원 : 주광저우총영사관, 후이저우 상무국, 후이저우 CCPIT
- 설명회 주요내용 : RCEP 발효에 따른 한·중 비즈니스 기회 설명, RCEP 및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사례
- 참석자 : 현지 수출입 바이어 대표 및 관계자 112명



〈개회사 및 센터 소개〉



〈설명회 현장〉

2)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및 컨설팅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영세·중소기업은 아직까지 FTA 특혜관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동일한 국가와의 중복된 협정 체결로 인해 개별 기업의 FTA 활용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례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의 기본세율과 한·중 FTA 특혜세율, APTA(아태무역협정) 세율, RCEP 특혜세율 중 기업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각 협정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토록 복잡 다단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레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KNETET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Korea를 무료로 보급하고, 개별 기업이 자체 보유한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류의 발급·관리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준 총 28,094개사가 FTA Korea에 가입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총 187,516건의 원산지 판정 서류를 발급받았으며, 수출기업 107개사가 자체 ERP 시스템과 연계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원산지관리 업무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 편의기능 개선과 더불어 연관 컨설팅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컨설팅 지원 사례 : 가공식품 제조업체 'H사'

- 소스, 드레싱, 피클 등을 생산하여 미국, 중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하는 H사는 FTA 체결국향 수출확대 및 품목수 증가(250+ α (옵션) 여종)로 인해 원산지관리 업무가 과중해져 애로 호소
 ☞ FTA Korea Plus(+Data Mapper) 프로그램 적용으로 원산지관리 업무시간 단축
- H사의 원산지판정 근거 및 관리체계 관련 컨설팅 수행으로 품목별 원산지관리전략 도출
- 시스템에서 처리된 원산지판정 정보 및 근거서류를 자동으로 영구보관 처리함으로써 사후검증 대응력 또한 강화(관련법상 원산지증빙서류 의무보관기간 : 5년)

3)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FTA 콜센터 1380은 FTA 활용 관련 상담을 위해 2013년 6월 개통되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0'만 누르면 전문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고, 품목분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FTA 활용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상담이 가능하다.

2022년에는 1380 콜센터를 통해 총 22,906건(일평균 약 93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문의사항별로 분류하면 원산지증명서 작성(37.2%), 품목분류 및 관세율 문의(13.6%), 수출입 인증 문의(10.7%) 순이다.

과거에는 FTA 특혜관세 활용에 국한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투자 정보, 수출금융 정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방안 등 수출기업에 대한 종합 상담 및 정보제공 창구로 고도화되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FTA 활용과 관련된 우리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종합관리하는 'FTA 통합 플랫폼(okfta.kita.net)'도 구축·운영 중인데, 개별 기업은 이를 통해 FTA 활용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거나 문의를 할 수도 있고, 1380 콜센터를 통해 제기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4) 인력양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잦은 인력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FTA 활용의 주된 애로사항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등학교, 대학교, 중소기업 등 각 단계별로 FTA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출 실무와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취업 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교육 수료자와 지역 소재 수출 중소기업 간 취업을 연계·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 있다. 교육 수료생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2020년 78.4%, 2021년 84.7%, 2022년 78.2%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2022년 직업계고 전체 졸업자 취업률인 57.8%(교육부,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20.4%나 상회하는 높은 수치이다.

[표 4-17] 최근 3년간 취업연계형 FTA 실무과정 수료생 취업률 현황

구분	수료생	대학진학 등	취업자	취업률*
2020년	122명	20명	80명	78.4%
2021년	171명	14명	133명	84.7%
2022년	147명	23명	97명	78.2%
합계/평균	440명	57명	310명	80.9%

* 취업률(%) = {취업자 / (수료생 - 대학진학 등)} × 100

그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 FTA 강좌 지원사업, 중소기업 재직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FTA 활용 컨설팅 교육사업을 통해 전주기 FTA 활용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제2절 ▶ 다자간 통상 네트워크 강화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사무관 이 연

1. 개요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다자간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인태지역 주요 경제협력체인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중 또는 참여를 추진 중이다.

최근 공급망, 디지털, 탈탄소 등 신통상이슈의 등장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 시장개방 논의를 중심으로 하던 통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면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디지털, 탈탄소 등 신통상이슈 논의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IPEF, CPTPP, RCEP 등 역내 경제블록 중심의 다자간 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통상이슈를 포괄하는 경제협력체에 선제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추진현황

1 IPEF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주무관 박수진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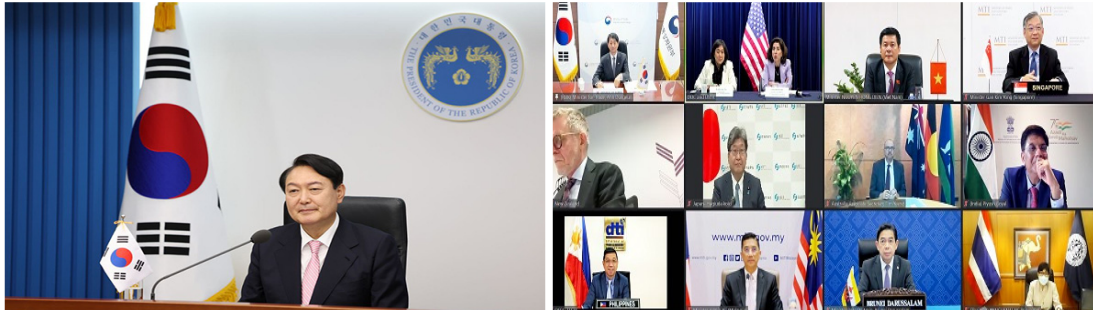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통상의 중심축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이동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디지털로의 전환 등에 대한 대응이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한 시장개방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다루지 않은 공급망, 청정에너지, 반부패 등 새로운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경제협력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 주도로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참여 하에 인도태평양 지역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으로서 IPEF가 공식 출범('22.5.23)하였다.

* 출범 배경 :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에 기반한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We recognize the COVID-19 pandemic has underscored the imperative of working closely together to ensure that economic recovery and advancement are grounded in resilience, sustainability, and inclusivity.) ('22.5.23일, IPEF 출범선언문)

[그림 4-5] 2022년 5월 23일 IPEF 출범 화상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



* 출처 :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2) 진행 경과 및 참여 의미

① 진행 경과 및 주요 내용

출범 후, 14개 참여국은 ▲ 무역, ▲ 공급망, ▲ 청정경제, ▲ 공정경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22년 9월 IPEF 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4개 분야별 협상에서 다룰 의제를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 및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22년 말 호주에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표 4-18] IPEF 4개 분야별 주요 의제(2022.9월, 각료선언문 중심)

필라1 : 무역	필라2 : 공급망
“팬데믹 이후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농업·식량안보, 노동·환경, 무역원활화, 투명성 등의 무역규범 및 협력”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노동, 환경, 농업, 무역원활화, 경제협력, 경쟁, 모범규제관행, 서비스 국내규제, 포용성 등에 대한 무역 규범 및 협력 강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 마련,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 및 인력 개발 공조
필라3 : 청정경제	필라4 : 공정경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 모색”	“공정경제 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 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 창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공정경제 환경 조성 목표 하, 조세 투명성 제고, 반부패 협약 이행 강화,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확대

② 참여 의미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3개국이 함께 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 참여 14개국의 GDP는 전세계 약 40%, 인구는 32%를 차지한다. 또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각 국가의 특성, 장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에 참여하는 14개국 기준, 전세계 인구의 32%, GDP의 40%에 해당

참여국	인구 / GDP	우리와의 교역규모
14개국 (한, 미,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25.5억명 (전세계의 32.2%)	5,791억 달러 (우리 총교역 규모 대비 40.9%)
		

* 기준 : '21년 출처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표 4-19】 한·IPEF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수 출	금액	184,456	225,842	229,279	220,121	206,725	261,181	305,563
	증가율	△4.5	22.4	1.5	△4.0	△6.1	26.3	17.0
수 입	금액	154,747	184,271	200,206	192,160	182,320	237,261	273,591
	증가율	△0.8	19.1	8.6	△4.0	△5.1	30.1	15.3
무역규모		339,203	410,113	429,485	412,281	389,045	498,442	579,154
무역수지		29,709	41,571	29,073	27,961	24,405	23,920	31,972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특히, 14개국간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IPEF 출범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질서를 주도하고, 공급망 안정화 및 다양화,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20] IPEF 4개 분야별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필라1 무역	선제적 규범·표준 수립으로 우리 기업에 우호적 통상질서 마련 • 인태지역 공통의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우리 기업의 아세안 디지털 시장 진출 확대 지원 • 통관애로 해소 및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 지원, 식량공급망 및 농업기술협력 등을 기반으로 식량안보 강화
필라2 공급망	공급망 정책 공조 및 민간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한 위기 대응 메커니즘 마련 추진 • 인프라 확충, 제조·생산 현대화,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라3 청정경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쏘지구적 노력에 동참 • 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혁신기술에 관한 국가간 협력 강화 •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전환 간 균형 잡힌 접근을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생산·교역 확대 등 협력 추진
필라4 공정경제	참여국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해외 투자·진출 여건 개선, 시장참여 기회 확대 •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효율적 행정관행을 통한 조세 행정 개선 •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 이행 논의를 통해 공정한 기업 환경 구축

2 CPTPP 가입 추진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사무관 이 연

1) 의의 및 논의 경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3%, 교역액의 15%, 인구의 6.6%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권역으로, 우리나라의 對CPTPP 교역규모는 우리 전체 교역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디지털, 환경, 국영기업 등 새로운 통상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통상규범을 통해 역내 실질적 무역장벽 완화를 지향한다.

CPTPP는 2006년 발효한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간 P4(Pacific 4)을 태동으로 하여, 참여국 확대 등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30일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6개국 간 정식 발효하였다. 이후 베트남(2019년 1월), 페루(2021년 9월), 말레이시아(2022년 11월), 칠레(2023년 2월)에 CPTPP 발효함으로써 브루나이를 제외한 10개 회원국에 발효가 완료되었다.

CPTPP는 후속 가입이 가능한 협정으로, 현재까지 영국(2021년 2월), 중국·대만(2021년 9월), 에콰도르(2021년 12월), 코스타리카(2022년 8월), 우루과이(2022년 12월)가 CPTPP 신규 가입을 신청하였다. 최초 가입신청국인 영국은 2021년 6월 가입 협상을 개시, 2년여 간의 협상 후 2023년 실질 타결을 앞두고 있다.

2) 가입추진 배경 및 경과

정부는 2013년 11월 CPTPP 참여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나, 기존 참여국 간 협상이 가속화되면서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CPTPP 타결 이후에도 관련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의 참여 실익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2021년 1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공식 표명한 후, CPTPP 회원국 비공식 협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국내제도 정비 등 CPTPP 가입을 위한 대내외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대외 비공식 협의를 통해 우리의 CPTPP 가입 관심을 회원국에 전달하고, 가입 절차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 대내적으로는 CPTPP 규범을 검토하여, 디지털 통상, 수산 보조금,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CPTPP 11개 회원국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질 GDP는 0.33~0.35%, 소비자 후생은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농수산업의 경우, 기체결 FTA 대비 추가 관세 철폐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4-21] CPTPP 가입시 경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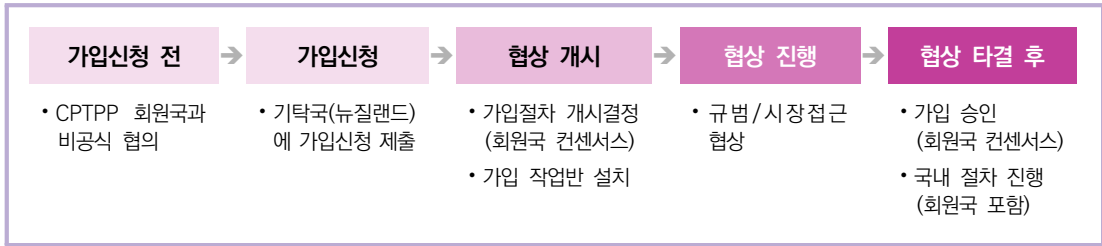
구분	거시경제(KIEP)	제조업(KIET)	농업(KREI)	수산업(부경대)
경제영향	실질 GDP 0.33~0.35% 증가 소비자후생 30억불 증가	1.18~1.82조원 생산증가*	853억원~4,400억원 생산감소*	69억원~724억원 생산감소*

* 15년간 연평균

2021년 12월 정부는 CPTPP 가입추진 관련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여, 약 30회에 걸친 지역별, 업종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계에서는 수출시장 안정적 확보, 공급망 강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 가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반면, 농수산업계는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및 새로운 규범 도입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며 CPTPP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부는 2022년 3월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4월 「CPTPP 가입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CPTPP 가입신청 전 국내 절차로 국회 보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나, CPTPP는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농수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대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주요 다자 및 양자 회의 계기 기존 CPTPP 회원국과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림 4-6] CPTPP 가입 절차



3 RCEP 발효 및 기업활용 지원

1) RCEP 발효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사무관 박정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ASEAN 10개국을 포함하여 ASEAN과 양자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 간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아태지역 거대 경제블록 형성 및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고 2013년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약 8년에 걸쳐 총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RCEP은 2019년 11월 협상 타결, 2020년 11월 최종 서명을 거쳐 2021년 12월 비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협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 후 60일째 되는 날인 2022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되었다.

[표 4-22] RCEP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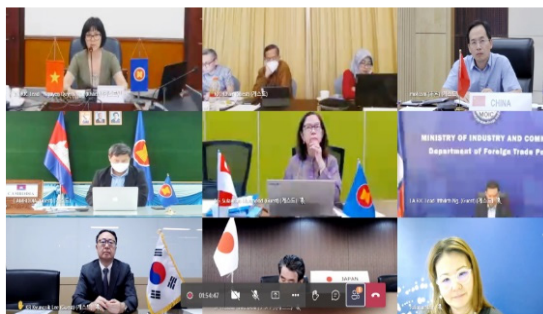
• 상품 우리측은 상대 당사국에 전체 품목 수 기준 94% 이상, 상대 당사국은 83~ 100%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 약속						
기준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우리측	품목수	94.6~96.6%	98.2%	97.9%	92.0%	83.0%
	수입액	90.0~99.99%	99.7%	96.2%	90.7%	76.0%
상대측	품목수	91.9~94.5%	100%	100%	91.1%	83.0%
	수입액	51.4~100%	100%	100%	85.9%	78.0%

• 서비스 기체결 FTA 및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 / 호주, 중국, 뉴지는 기체결 양자 FTA 수준에서, 일본은 WTO 서비스협정 대비 온라인게임 등 추가개방 • 투자 ISDS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협정 발효 2년내 ISDS 조항 관련 논의 개시, 개시 3년 내 타결기로 합의 • 기타규범 한류 콘텐츠 보호, 정부조달시장 개방, 경제기술협력 활동 강화 등						
--	--	--	--	--	--	--

RCEP의 발효로 선진국-개도국-최빈개도국이 모두 참여한 경제협력체가 최초 출범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과 경제 기술 분야 협력이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SEAN 국가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구축됨으로써 역내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우리 기업의 對ASEAN 진출 가속화 및 교역구조 다변화 등이 기대된다. 또한 RCEP을 통해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상품·서비스 교역 및 경제·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투자 자유화 수준 향상 등 통상규범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상호 투자 확대, 인적교류 확산 등을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등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당사국은 발효 초기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2022년 4월 및 8월 두 차례의 RCEP 공동위원회와 9월 1차례 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당사국들은 상호호혜적 경제 관계 발전의 기반 확립을 위해 RCEP 사무국 설치 및 예산 분담방안, 이행기구 작업계획 등 이행체계 구축·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기술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림 4-7] RCEP 이행 관련 회의



〈RCEP 공동위원회(‘22.4, 8월, 화상)〉



〈RCEP 장관회의(‘22.9월, 시엠립)〉

2) RCEP 기업활용 지원

통상협정활용과 사무관 양용태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2011년부터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 19개 FTA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컨설팅, 교육·설명회,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FTA 활용능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22년 2월 1일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MEGA) FTA’인 RCEP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ASEAN 신흥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기체결된 FTA 효과와 더불어 추가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매년 FTA활용지원사업을

통해 RCEP 관련 컨설팅, 설명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RCEP 활용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FTA 수출활용률(%)이 있다. 수출활용률이란 FTA 체결국과 무역 거래에 있어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 수출액 중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통한 FTA 활용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RCEP으로 신규 FTA 효과가 발생한 일본의 수출활용률의 경우, 발효 초기('22.2월) 19.0%에서 '22.12월말 기준 39.1%로 상승하였다. 아울러, '22년도 전체 RCEP 활용 실적은 총 39,998건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수출액은 약 33억불 상당이며, 그중 일본은 35,324건 C/O발급, 수출액은 약22억불(67.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FTA활용지원의 노하우가 신규·메가 FTA인 RCEP에서도 성과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23] RCEP 활용실적('22.2.1~12.31)

(단위 : 발급건수, 천불)

구분	수출*	
	건수	금액
전체	39,998	3,318,548
일본	35,324	2,233,504

* 수출 : RCEP C/O 발급실적

① RCEP 활용 및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산업부는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사업 내 'OK FTA 컨설팅'을 통해 RCEP 협약 체결국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FTA 서비스'에서는 전국 19개(서울 1곳, 지역 18곳) FTA 지원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가 1380 콜센터, 이메일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통해 FTA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2년도 RCEP 활용 상담 실적은 전체 FTA 활용 상담 14,740건 중 한-아세안(17.2%), 한-중(11.2%), 한-베트남(9.6%)에 이어 네 번째인 8.6%에 달한다.

[표 4-24] RCEP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 성공 사례

- ② (RCEP 활용 관세절감) 초정밀 다이아몬드 공구를 생산하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던 A사는 FTA 체결국가에 수출시에는 관련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옴. RCEP 발효 후에는 일본 수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부의 FTA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RCEP 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함. 이로 인해 5.2%인 일본의 기본관세를 **무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수출에 성공 (RCEP 협정 관세율 실효 : 5.2%→0%(△5.2%p), 수출액 : 800천불)
- ③ (RCEP 누적원산지 규정 활용 관세절감) 감광성 필름을 생산하는 B사는 주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가공 후 태국, 베트남 등에 수출하는 업체임. 생산원가 중 중국 수입 원재료 가격비중이 높거나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로는 관세절감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RCEP의 누적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아 관세절감 혜택**을 얻음 (RCEP 협정 관세율 실효 : 3%→0%(△3%p), 수출액 : 150천불)
- ④ (RCEP 활용 일본시장 첫 진출) 합성필라멘트사를 국내 **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C사는 FTA 미활용 기업이었음. RCEP 발효 후 일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자 **산업부의 FTA 컨설팅 지원**을 받아 **사내 FTA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고,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RCEP을 활용한 신규 수출**에 성공 (RCEP 협정 관세율 실효 : 4%→0%(△4%p), 수출액 : 15천불)
- ⑤ (RCEP 활용 일본 수출 확대) 국내에서 제조된 낚시바늘 등 **낚시용품**을 수출하던 D사는 수출실적은 많지만 FTA 활용경험은 없었음. RCEP 발효 후 일본 거래처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아 **산업부의 FTA 컨설팅 지원**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함. 일본 거래처의 원산지증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거래관계가 유지, 확대될 수 있었음 (RCEP 협정 관세율 실효 : 3.2%→2.9%(△0.3%p), 수출액 : 500천불)

② RCEP 활용 설명회 및 공동 가이드북 발간 등 정보제공

산업부는 관세청 및 FTA 지원기관(무역협회, 코트라) 공동으로 'RCEP 활용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고('22.2월), 지역상공회의소 등 內 설치된 18개 지역센터에서 RCEP 유망업종 중심 활용전략에 대해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22.1월~2월, 총19회). 또한, 산업부·관세청·무역협회·코트라와 공동으로 각자의 전문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여 'RCEP 활용 공동 가이드북('22.11월)'을 발간하는 등 관련 정보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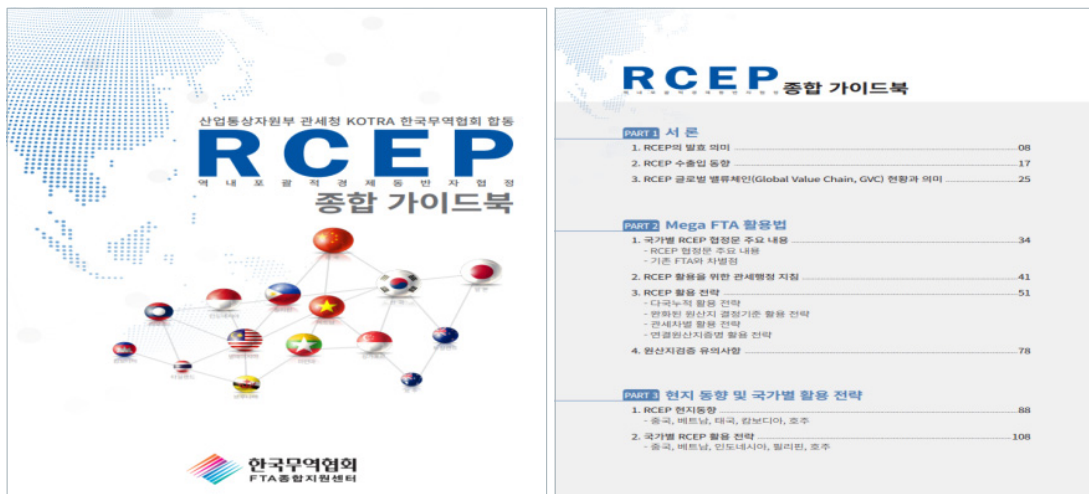
[표 4-25] 강원 지역 RCEP 활용 설명회 개최 사례

☑ 강원 지역 RCEP 활용 설명회

- 일시 : 2022. 2. 15.(화) 14:00~17:00
- 장소 : 강원도경제진흥원 대회의실(원주)
- 주관 : 강원FTA활용지원센터, 강원중소벤처기업청, 강원경제진흥원, 차이나테스크 공동
- 내용 : RCEP 협정 개괄 소개, RCEP 원산지 운영의 실제 및 활용방안 등
- 참석 : 도내 무역업계 담당자 64명(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



[그림 4-8] RCEP 활용 공동 가이드북



③ RCEP 활용지원을 위한 해외 FTA지원센터 신규 개소

산업부는 중국, 베트남 등 10개국 KOTRA 해외무역관 내에 총 15개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FTA 체결국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 홍보 및 상담·컨설팅, 수출전시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RCEP 발효를 계기로 일본 도쿄('22.11월) 센터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23년 상반기 내에는 말레이시아 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RCEP 역내 주요 국가 대상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3. 향후 계획

산업부는 IPEF, CPTPP, RCEP 등 경제협력체를 통해 역내 다자간 공조를 강화하고 교역 확대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 미래 성장동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EF 협상 과정에서 국내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국익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CPTPP 가입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농수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구체적 보완대책 방향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요 회원국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측 가입추진 관련 대내외 상황을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CEP 회원국 간 협력 및 이행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지원사업 역시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RCEP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통상법무기획과 사무관 김일한

주무관 배성미

①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자국우선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의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각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입규제의 대표적 형태인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는 WTO 협정문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WTO 회원국에게 허용된 권리로서, WTO 협정문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사용하고 있어 WTO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표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수입규제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국가들의 수입규제 조치는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 정부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는 최근 5년간(2018~2022) 연평균 약 26건이다. 최근 2년 동안 인도(7건), 미국·튀르키예(3건), 우크라이나(2건) 등 총 23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가 12건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6] 최근 5년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현황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7건(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3건)
29건	25건	41건	41건	16건	• (인도) 우르소데옥시콜산 : 반덤핑 조사개시(1.24) • (인도) 광섬유 : 반덤핑 조사개시(5.6) • (마다가스카르) 수성 및 유성 도료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6.1) • (인도) 서스펜션PVC 수지 : 반덤핑 조사개시(9.16) • (인도) 유압식 굴착기 : 반덤핑 조사개시(9.30) • (인도) 페로몰리브덴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9.30) • (인도) 4-t-부틸페놀 : 반덤핑 조사개시(12.21)

* 출처 : 무역협회

2022년 12월 현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26개국 총 198건(규제중 180건, 조사중 18건)으로, 형태별로 구분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151건, 상계관세 10건, 세이프가드조치가 37건이며, 품목별로는 구분하면 철강·금속 94건, 화학 40건, 플라스틱·고무·가죽 23건, 섬유 13건, 전자·전기 8건, 기타 20건이다.

[표 4-27] 對韓 수입규제 현황(건수, '22.12월 기준)

분류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EU	태국	인니	호주	브라질	일본	말련	영국	기타	합계
규제중	46	14	17	14	12	8	8	7	6	6	3	3	1	35	180
조사중	0	6	1	0	1	0	0	0	1	0	1	1	0	7	18
합계	46	20	18	14	13	8	8	7	7	6	4	4	1	42	198

* 출처 :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자 면담, 고위급 서한 및 정부 의견서 발송, WTO 정례회의 등 다양한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상대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전략을 논의해왔다. 또한, 국제법상 위법한 수입규제의 경우 WTO에 제소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관세장벽의 경우, WTO 회원국들의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 통보 건수가 2006년 1,033건에서 2020년에는 3,354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가 실제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 Specific Trade Concerns)도 2020년 214건으로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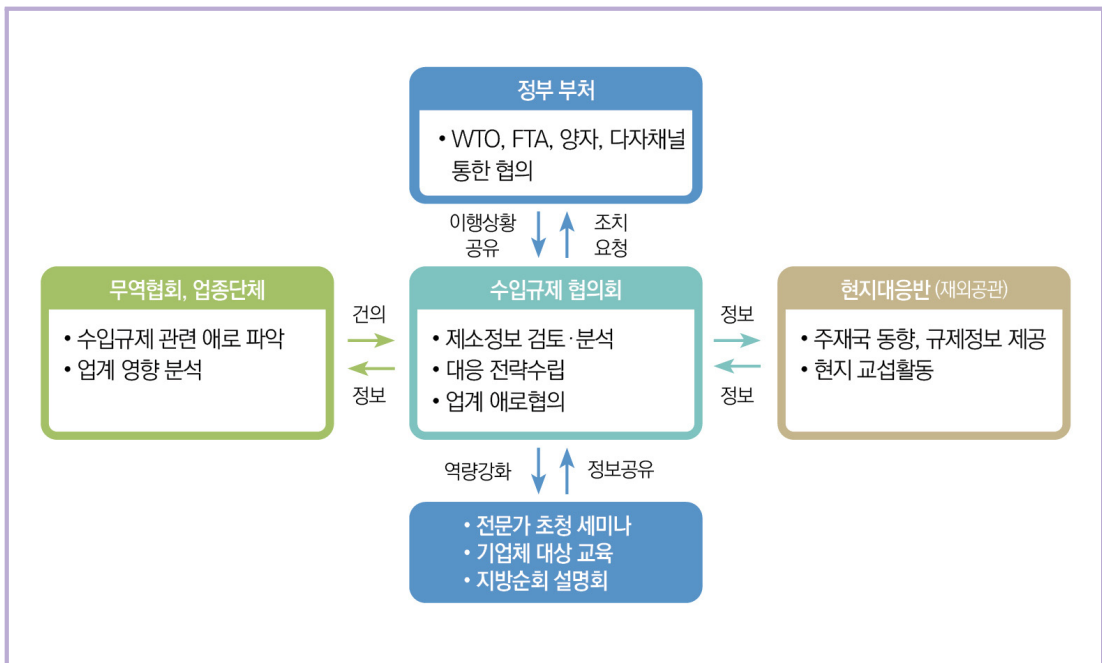
외국의 비관세장벽은 기업들에게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상대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협상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개별 기업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기업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동향을 파악하고 민관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2 수입규제 대응

1) 수입규제 대응체계

2016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수입규제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무역협회가 수입규제협의회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 중이며, 동 협의회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주요 업종단체 및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림 4-9] 수입규제 대응 종합 체계도



2) 수입규제 대응 현황

첫째, 민·관 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철강 232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해 업계 및 협회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동 협의회를 통해 초기단계부터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미국·EU 주요인사들 면담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둘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주요 신흥국의 수입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사례를 논의하였다. 특히, 상대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제품에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 기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민·관이 함께 효과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하여 덤핑·상계관세를 산정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 특정국가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어 조사당국이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

셋째, 수입규제의 경우 조치상대국 정부에 의해 취해지는 것으로, 조치상대국과의 양자 면담, FTA 공동위, 무역구제위원회 등에서 수입규제를 제기하고, 고위급 서한 발송, 조치국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반덤핑위원회·보조금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넷째, 수입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규제 조치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 관련 협정 및 상대국의 관련 법제도 등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치 상대국 정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과 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전문가 고용 비용과 대응자료 준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주선·지원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42건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표 4-28] 규제형태별·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건수, '22.12월 기준)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제중	조사중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북미 (2개국)	캐나다	11	1	1	.	.	.	12	1	13
	미국	35	.	9	.	2	.	46	.	46
중남미 (4개국)	아르헨티나	3	.	.	.	.	.	3	.	3
	브라질	6	.	.	.	.	.	6	.	6
	코스타리카	0	.	.	.	1	.	1	.	1
	멕시코	5	.	.	.	.	.	5	.	5
아시아 (10개국)	중국	14	.	.	.	.	.	14	.	14
	인도네시아	1	.	.	.	6	.	7	.	7
	인도	11	4	.	.	3	2	14	6	20
	일본	3	1	.	.	.	.	3	1	4
	말레이시아	3	1	.	.	.	.	3	1	4
	필리핀	.	.	.	.	2	.	2	.	2
	파키스탄	8	.	.	.	.	.	8	.	8
	태국	8	.	.	.	.	.	8	.	8
	대만	3	.	.	.	.	.	3	.	3
	베트남	1	.	.	.	1	.	2	.	2
아프리카 (3개국)	이집트	1	.	.	.	.	.	1	.	1
	마다가스카르	.	.	.	.	1	2	1	2	3
	남아프리카공화국	1	.	.	.	3	.	4	0	4
유럽 (3개국)	EU	7	.	.	.	1	.	8	0	8
	영국	.	.	.	.	1	.	1	0	1
	우크라이나	.	.	.	.	3	3	3	3	6
대양주 (2개국)	오스트레일리아	6	1	.	.	.	.	6	1	7
	뉴질랜드	.	1	.	.	.	.	.	1	1
중동 (2개국)	GCC	1	1	.	.	1	.	2	1	3
	튀르키예	12	1	.	.	5	.	17	1	18
총 계 (26개국)		140	11	10	0	30	7	180	18	198

* 출처 : 무역협회

[표 4-29]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건수, '22.12월 기준)

국 가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고무		섬유류		기타		규제중	조사중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북미 (2개국)	캐나다	11								1	1	12	1	13
	미국	33		2		4		3		4		46		46
중남미 (4개국)	아르헨티나			1		1				1		3		3
	브라질	2				3		1				6		6
	코스타리카									1		1		1
	멕시코	3		1		1						5		5
아시아 (10개국)	중국	2		6		4		1		1		14		14
	인도네시아	3		1				2		1		7		7
	인도		2	9	1	3	1			2	2	14	6	20
	일본	1	1	2								3	1	4
	말레이시아	3	1									3	1	4
	필리핀			1						1		2		2
	파키스탄	1		5		1				1		8		8
	태국	8										8		8
	대만	3										3		3
	베트남	2										2		2
아프리카 (3개국)	이집트			1								1		1
	마다가스카르				1					1	1	1	2	3
	남아프리카공화국	3				1						4		4
유럽 (3개국)	EU	4		2						2		8		8
	영국	1										1		1
	우크라이나			1	1	1	1			1	1	3	3	6
대양주 (2개국)	오스트레일리아									6	1	6	1	7
	뉴질랜드		1										1	1
중동 (2개국)	GCC			1			1			1		2	1	3
	튀르키예	3		4		1		5	1	4		17	1	18
총 계 (26개국)		83	5	37	3	20	3	12	1	28	6	180	18	198

* 출처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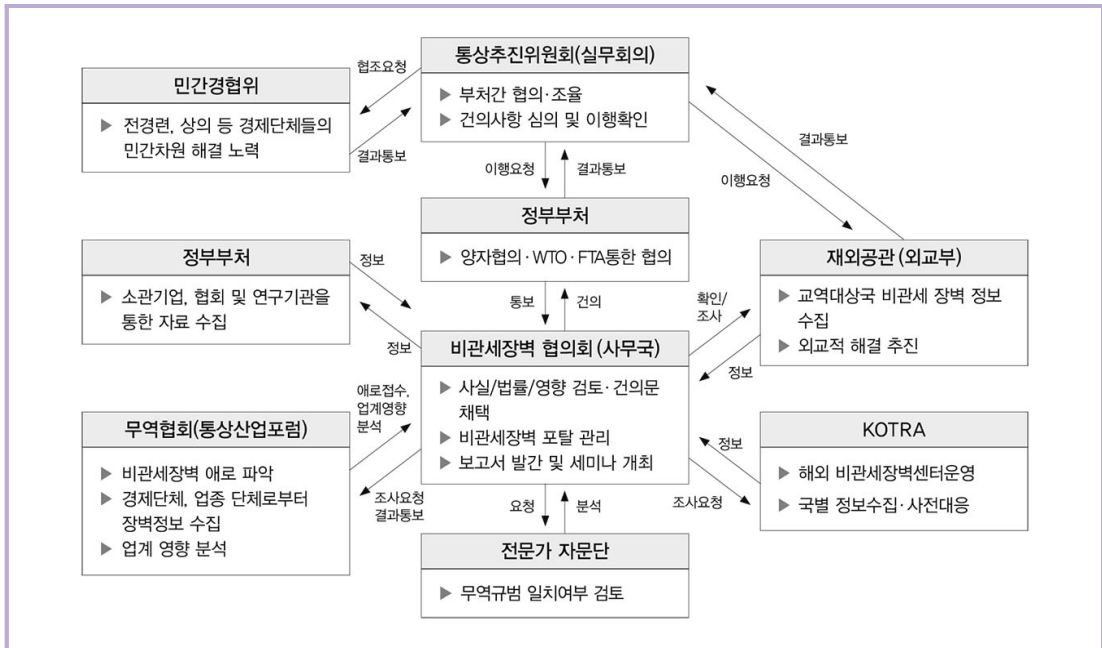
* 기타 : 전기전자, 제지, 생활용품, 농산물, 기계류 및 잡제품

3 비관세장벽 대응

1)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2013년 9월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비관세장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대응체계로서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구축하기로 논의·결정하였다. 동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업종별 협단체와 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한상공회의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평가하고, 추가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선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논의한다.

[그림 4-10]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1월에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까지 총 27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우리 기업 애로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협의회 설치 이후 국내(관계부처 등), 현지(공관·무역관) 공동 대응을 통해 2022년에는 우리 철강·화학 수출제품의 인도 표준국(BIS) 인증 취득,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기업의 사업 라이선스 발급 지연 해소 등 주요 비관세장벽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2)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

첫째, 정부부처, KOTRA, 재외공관 및 무역협회 등을 통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조치 사례를 발굴하고, 수집된 사례를 정리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 공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2년에는 ASEAN, 인도, 중국, 러시아, MERCOSUR 등 지역의 24개 무역관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 사례를 발굴하여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전문가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정부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먼저 한중 FTA, 한미 FTA 등 기체결한 FTA 이행위원회를 비롯하여 상대국 정부와의 양자협의체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를 의제화하고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기준(SPS), 서비스 투자 등 분야의 이행위원회와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축·운영하면서 비관세장벽 이슈를 상대국에 제기하고 있다. 한편, WTO TBT위원회·SPS위원회 등 다자 채널을 통해서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셋째, 정보·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도 지원하고 있다.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의 경우 우리 기업이 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비관세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 내에 ‘비관세조치 DB’를 구축하여 현재 16개 국가, 20개 품목, 12개 비관세조치 유형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복원 노력

세계무역기구와 사무관 손효정

1) WTO 개관

다자무역체제의 시작은 1948년에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라 할 수 있다. 관세·쿼타 등의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교역 촉진을 목표로 했던 GATT 체제하에서, 세계는 총 8차례의 협상 라운드를 통해 폭넓은 관세 인하 등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GATT 규범을 우회하여 보호무역 정책을 남용하는 등, 반세기 동안 지속된 GATT 체제도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86년에 GATT 체제 하 8번째 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가 개시되었으며, 약 8년간의 논의 끝에 GATT를 대체할 다자무역체제인 ‘세계 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1995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회원국 간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세계 각국의 상호호혜적 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그 전신인 GATT와 유사하다. 다만, GATT의 규율 대상이 주로 공산품 거래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WTO는 농산물거래와 함께 서비스·지식재산권·무역관련 투자조치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규범의 구속력도 한층 더 강해졌다. 그 결과 WTO 출범 후 25년간 세계 교역액이 4배 증가하고 평균관세율이 10.5%에서 6.4%로 낮아지는 등 무역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WTO 회원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말 기준 164개국이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24개 국가가 가입절차를 진행 중이다.

② WTO 위기 - WTO 개혁 필요성 대두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와 함께 WTO가 3대 기능 - ① 통상규범을 제정하고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협상·규범제정 기능, ② 회원국의 규범 준수·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이행·모니터링 기능, ③ 규범에 기반해 회원국 간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 기능 -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우선, 회원국 간 첨예한 이견과 컨센서스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로 ‘도하 개발 어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비롯하여 WTO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다자간 협상이 뚜렷한 성과 없이 오랜기간 공전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이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WTO가 회원국의 협정상 의무 준수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노정되면서 WTO의 기능에 대한 회의감도 커졌다. 게다가 미국이 WTO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상소위원 신규 임명을 거부하면서, 최종심으로서 WTO 분쟁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상소기구도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WTO 회원국들은 그간 국제 무역체제를 뒷받침해 온 WTO 체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WTO의 적실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③ 제12차 WTO 각료회의 주요 성과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지난 2022년 6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가 개최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017년 이후 5년만에 개최된 각료회의로, 지난 제11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각료선언 채택에 실패한 이후 MC-12에서는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MC-12 개최 당시 성과 창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와 식량위기 등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 기조가 만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MC-12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여 WTO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 의지를 결집하였다. 당초 보다 회의를 이틀 늦게 폐막하는 등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164개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토대로 최종 결과문서(Outcome Document)인 각료선언과 주요 의제별로 총 9개의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되었다.

[표 4-30] 제12차 각료회의 합의사항

구분	주요 내용
MC-12 결과문서 (WT/MIN(22)/24)	- WTO 3대 기능 개혁 논의를 개시하고 MC-13까지 논의 경과를 보고하며, 분쟁해결제도의 경우 '24년까지 정상화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 - 개도국 우대 의미 확인, 정확, 효과적, 유의미한 운용 강조 - 환경, 서비스 무역, 여성과 중소기업 중요성 강조
수산보조금 협정 각료결정 (WT/MIN(22)/33)	- 불법어업,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 금지 - MC-13 권고 목적으로 미합의 쟁점을 포하여 포괄적인 협정 달성을 위한 추가 조항 논의 계속(협정 발효 후 4년내 미합의시 협정 전체 실효)
TRIPs 관련 각료결정 (WT/MIN(22)/30)	- 개도국은 향후 5년간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으로 강제실시 가능 '22.12.17일까지 강제실시를 치료제/진단기기로 확대 적용할지 여부 논의
팬데믹 대응 각료선언 (WT/MIN(22)/31)	백신 등 의료물품의 수출제한 자제 및 무역원활화 촉진, 무역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
식량안보 각료선언 (WT/MIN(22)/28)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 식량안보 관련 무역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에 합의
세계식량계획 관련 각료결정 (WT/MIN(22)/29)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각료결정 (WT/MIN(22)/32)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위생 및 생물위생조치 각료선언 (WT/MIN(22)/27)	- WTO SPS 협정상 권리의무 재확인 - 작업계획(work programme)을 수립하여 MC-13에 보고
TRIPs 비위반 및 상황제소 각료결정 (WT/MIN(22)/26))	-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및 상황제소 유예조치를 MC-13까지 연장 - MC-13까지 지식재산분야에서 비위반 및 상황제소 적용 세부사항 검토
소규모경제 작업계획 각료결정 (WT/MIN(22)/25))	소규모 경제 작업계획 지속 합의

MC-12의 핵심 성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식량안보 및 팬데믹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에 합의하였다. 팬데믹 극복을 위해 개도국들이 향후 5년간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사용(강제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둘째, 2001년 이후 21년간 진행되어 온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되어 WTO의 다자협상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동 협상에서 미합의된 쟁점은 후속협상에서 논의하도록 남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기능 등 WTO를 개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WTO 전체 회원국이 WTO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혁 논의 개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WTO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4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가입하고 1995년 출범한 W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무역·수출에 기반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이 과정에서 WTO의 무역규범과 분쟁해결제도는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업계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왔다. 이에 우리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WTO가 위기론을 극복하고 WTO의 3대 기능이 복원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

1) WTO 개혁 노력 동참

우리는 다자무역체제를 중시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WTO 개혁 논의에 기여해 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이다. 오타와그룹은 총 14개국 - 캐나다(의장국), EU,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브라질,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케냐 - 으로, WTO의 개혁 필요성을 회원국들에게 환기시키고 개혁 논의를 선도할 목적으로 2018년 10월 결성되었다. 동 그룹은 2022년말까지 14차례의 장관급 회의 및 수차례의 실무급 회의를 통해 WTO 개혁 현안을 논의해 왔으며, 우리도 동 그룹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WTO 개혁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

WTO 개혁을 위한 회원국 간 결속을 다지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WTO 개혁 관련 세부 이슈별 논의에도 참여 중이다. WTO 개혁의 핵심 이슈인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가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2) WTO 분야별 협상 참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WTO 협상 기능의 정체는 WTO 체제가 비판받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이에 회원국들은 WTO에서 진행중인 협상에서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WTO에는 수산보조금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상) 이외에도 3가지 분야의 복수국 간 협상(Joint Statement Initiatives; JSI)도 진행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MSMEs(중소기업) 협상이 그 예로, 우리는 4개 복수국간 협상 모두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WTO 협상 기능의 활성화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3) 코로나19, 환경 등 전지구적 과제 논의에 동참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지구적 과제 해결에 WTO가 적실성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오타와그룹은,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앞으로의 보건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11월 WTO 차원에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제안하였다. 동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각종 필수 의료물품이 세계 전역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수출제한 등의 무역제한조치 최소화, 각종 무역원활화 조치 확산 등을 위한 WTO에서의 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는 이후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MC-12에서 팬데믹 대응 각료선언 합의에 바탕이 되었다.

또한, WTO에서 환경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 회원국의 주도 하에 2020년 11월 출범한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이다. 우리나라는 TESSD를 포함한 WTO 내 기후·환경 협의체에 적극 참여여 회원국들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의 역할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3. 주요 다자경제협력체 무역·투자분야 논의 대응

다자통상협력과 사무관 이지영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여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89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후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운영 중이다. APEC은 UN, WTO와 같이 국제조약의 기반 위에 설치된 국제기구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느슨한 포럼” 형태이며, 역내 경제협력력을 목표로 회원국 간 다양한 정책대화와 협의, 그리고 자율적 사업을 통한 협력 등 비구속적 성격의 이행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APEC 회원국¹⁾은 총 21개국으로,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주(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국가들 및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1) 2021년도 주요활동(의장국 : 뉴질랜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회의(11월 12일)를 비롯하여 상반기 통상장관회의(6월 5일), 하반기 합동각료회의(11월 8~9일)가 모두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6, 11월의 통상장관급 논의에서는 팬데믹이 역내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운데서도 필수물자 및 인력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며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방역조치를 기반으로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의 개방성·투명성을 유지한 우리 측 정책기조를 소개하고, WTO 규범 중심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역내 기업인들과의 대화(ABAC Dialogue)²⁾을 통해 보건 위기로부터의 무역·투자 회복방안도 논의하였다.

한편 실무급에서도 무역·투자 분야 다양한 협의체가 연내 화상 논의를 이어 간 가운데, 우리나라는 “GVC에서의 디지털경제의 역할” 연구 및 회원국 대상 워크숍³⁾을 진행하며 우리측 관심사인 디지털통상 분야에서의 선제적인 입지 강화를 모색하였다.

2) 2022년도 주요활동(의장국 : 태국)

2022년도에는 통상장관회의(5월 21~22일), 합동각료회의(11월 17일) 및 정상회의(11월 18~19일)가 모두 3년만의 대면행사로 개최되었다. 통상장관들은 자유로운 역내 이동 재개를 통한 무역·투자 지원 필요성 및 팬데믹 여파로부터의 회복 과정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취약계층도 고려하는 포용적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APEC 역내 지속가능 성장모델에 관한 “BCG경제에 관한 방콕 목표⁴⁾” 채택에 기여하였다. 또한 '22년 6월 개최된 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에 지지를 보내고,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동 성과의 충실한 이행 및 향후 논의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특히 통상각료급·실무급 회의 시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등 경쟁적인 기후대응조치 채택을 경계하며, 투명성·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대응하여 주요 우방국⁵⁾과 공동 언론보도문을

1) 편의상 “회원국”으로 표기하나, APEC은 경제협력체로서 각 회원은 국가(State)가 아닌 경제(Economy) 단위로 참여

2)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와의 글로벌 무역·투자이슈 논의, 정상회의 계기 통상교섭 본부장 대참

3)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QR코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 다양한 디지털 방식 활용을 통해 팬데믹 대응과 이윤창출을 한 모범사례를 공유

4) 11월 정상회의 계기 APEC 정상들에 의해 채택

발표,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인한 인도적 상황 악화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2 G20 무역·투자 논의 참여

G20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99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창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한 이래 매년 G20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는 G20 무역투자실무그룹(TIWG : Trade and Investment Working Group)이 연 3회 개최되어 무역투자 장관선언문 초안 작업 및 이전 장관회의 위임사항의 이행·점검을 담당하고, 연내 구체화된 논의를 기반으로 무역투자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G20(Group of 20) 국가로는 현재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와 EU,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고 있다.

1) 2021년도 주요활동(의장국 : 이탈리아)

2021년에는 G20 무역투자장관회의가 10월 11~12일간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개최되었다. G20 통상 장관들은 한 자리에 모여 보건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MSMEs의 녹색·디지털 전환, 서비스·투자 원활화, 정부보조·공정경쟁, WTO 개혁 등 신통상 이슈를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며 핵심 통상 이슈에서의 공조 의지를 다졌다.

우리나라는 동 논의에 있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정책 및 주요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우리 측 노력을 소개하고,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면서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G20국가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공급망 및 FTA 네트워크 등 양자 통상 협력기반도 강화하였다.

5)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

2) 2022년도 주요활동(의장국 : 인도네시아)

2022년도 G20 무역투자산업장관회의는 9월 21~2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G20 통상 장관들은 WTO 개혁을 통한 다자무역체제 강화, 지속가능한 투자·산업화, 팬데믹 대응과 국제보건체계,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등의 의제에 기반하여, 이전 회의에서 마련한 신통상이슈 논의를 계승하고 더욱 진전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의제 전반에 걸쳐, 한국 정부의 그간의 기여 노력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향후 G20의 공조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G20 회원국으로서 러시아도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공동선언문 협의 과정 및 회의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관련 발언 등에 있어 G20 내 G7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하였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무역세션 및 무역위원회 참여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촉진 및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 확대를 목표로 196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제 경제 분야의 논의·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매년 OECD 각료이사회와 무역위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우리 통상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주요 통상 이슈별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시 반영하고 있다.

OECD 회원국으로는 현재 유럽(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주(미국, 캐나다, 칠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시아/대양주(한국, 일본, 이스라엘, 튀르키예, 호주, 뉴질랜드)의 총 38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1) 2021년 주요활동(의장국 : 미국)

2021년에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통상 연1회 개최)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2차에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각료이사회는 5월 31일~6월 1일간 화상으로, 2차 각료이사회는 10월 5~6일간 파리에서 대면 개최되었으며, 미국이 의장국을, 우리나라가 부의장국을 맡았다. 각료이사회는 전체 주제인 “공통의 가치: 녹색의 포용적 미래 구축(Shared Values :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하 각국의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역 세션에서는 무역·투자정책 관점에서의 노동, 기후변화 대응, 공정경쟁 등 주요 통상이슈가 다뤄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환경 및 노동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각국의 환경·노동 관련 무역조치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정경쟁환경 보장을 위해 투명성 등 측면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산하 실무논의체인 무역위원회와 무역위 작업반은 2021년에 각각 2회, 4회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각국 탄소가격제도의 보호무역조치화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국제통상체제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2) 2022년 주요활동(의장국 : 이탈리아)

2022년 각료이사회는 이탈리아를 의장국으로 “우리의 미래 - 후손들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환(The Future We Want : Better Polici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a Sustainable Transition)”이라는 주제 하에 6월 9일~10일 이틀간 개최되었다. 무역세션에서는 다자무역체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및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전환을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무역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방안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국 조치를 다자무역체제와 조화시키고, 친환경 상품·서비스 교역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업·에너지 분야 핵심 공급망 협력 확대도 강조하는 등 新산업통상전략 추진을 위한 다자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무역위원회와 무역위 작업반은 2022년에도 동일하게 각각 2회, 4회 개최되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점 논의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특히 공급망 교란, 자원/식량안보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4. WTO 통상분쟁 대응

1) WTO 통상분쟁 개요 및 동향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최우진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DSU)는 분쟁해결기구, 패널 및 상소기구의 운영, 판정·권고 이행·감독, 불이행에 따른 양허정지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DSU에 따라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판정·권고 이행·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WTO 회원국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한 다른 회원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610여건의 분쟁이 제기되었고, 이 중 우리나라가 다른 회원국을 제소한 분쟁은 21건이며, 우리나라가 제소를 당한 분쟁은 19건이다.

정부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WTO 협정 위반 조치를 시정하고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통상분쟁 대응 현황

1) WTO 한·미 불리한 가용정보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박종민

미국이 2015년 제정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은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시 조사대상 업체가 최선을 다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업체에게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업체가 필요 정보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조사당국이 2차적인 출처로부터 얻은 가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WTO 반덤핑협정상의 관련규정에 비해 조사당국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한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반덤핑·보조금조사, 대용량 변압기 2차 내지 4차 반덤핑 연례재심시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9.49~60.81%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미국의 이러한 관행이 계속됨에 따라 WTO 제소방침을 결정하고, 2018년 2월 14일 WTO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4월 16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5월 28일에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후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측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됨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2021년 1월 21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전체 WTO 회원국에 회람되었으며, 판정결과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하였다. 다만, 미국의 AFA 제도 그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미측은 상기 패널 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2021년 3월 19일에 상소하였다.

2) 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박종민

2018년 1월 22일 미국은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동 조치는 2월 7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어,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20%~50%, 부품에 대해서는 0%~5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2018년 5월 14일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8월 14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9월 26일에 패널이 설치되었다.

2021년 2월 7일 미국은 세탁기에 대한 종전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2023년 2월 7일까지 2년 연장하여,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15%~35%, 부품에 대해서는 0%~3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2022년 2월 8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전체 WTO 회원국에 회람되었으며, 판정결과 우리나라가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모든 핵심쟁점에서 승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우리 측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법성에 관하여 제기한 실체적 쟁점 5개 전부, 그리고 절차적 쟁점 3개 중 1개에 있어 미국 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및 패널 판정 확정 등 후속 분쟁해결절차 진행에 관하여 미국 측과 협의 중에 있다.

3) WTO 한·미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박종민

2018년 1월 22일 미국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동 조치는 2월 7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태양광 셀·모듈을 대상으로 4년간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어, 태양광 셀에 대해서는 0%~30%, 모듈에 대해서는 3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2018년 5월 14일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의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8월 14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9월 26일에 패널이 설치되었다.

2022년 2월 4일 미국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종전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연장할 것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2월 7일 발효되어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기간이 2026년 2월 6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WTO 법리의 확립 및 우리 산업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향후 분쟁해결절차에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4) WTO 한·일 스테인리스 스틸바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정해린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 중인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3차 재심을 2016년 6월 개시해 2017년 3월에 관세부과 유지 필요성을 판정했다.

2018년 6월 18일 일본은 무역위의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13일 개최된 양자협의를 통해 해당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간 입장차로 인해 일본은 2018년 9월 13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고 2018년 10월 29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2020년 11월 30일 회람된 패널보고서에서 패널은 일본 측 제소장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일본 측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재구성하여 우리 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 외에도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월 22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본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5) WTO 한·일 조선보조금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곽슬기

2018년 11월 6일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 수주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 및 WTO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특히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대우·성동·STX조선의 구조

조정,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12월 19일 우리 정부는 일본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양측은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으며, 일본은 동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일본이 패널 설치 요청을 보류하고 1년여 기간이 지난 2020년 1월 31일, 일본은 2018년 1차 제소에 제기했던 사항에 더해 제소 이후 이루어진 우리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로 제기하며 새롭게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2020년 3월 30일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2차 양자협의를 통해 일측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측이 문제시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측이 우리 조치의 철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함에 따라, 양국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양자협의를 종료되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6) WTO 한·일 수출규제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최우진

2019년 9월 11일 우리는 일본의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수출규제에 대하여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에 송부하였다.

2019년 9월 20일 일본정부는 우리측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10월 11일 제1차 WTO 양자협의, 11월 19일 제2차 WTO 양자협의를 통해 입장을 상호 확인하였다. 그리고 11월 22일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는 잠정 정지기로 합의하였다.

2020년 6월 2일 우리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기로 발표, 6월 29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측 반대로 무산되었고, 7월 29일 2차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패널이 설치되었다.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원상복구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22년말 기준).

Part 05 급변하는 환경 속 무역안보 강화



제1절 ▶ 환경변화에 따른 무역안보 정책 추진

무역안보정책과 사무관 김미연
무역안보정책과 사무관 서현우

1. 개요

1 무역안보 환경 변화

1)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미국 행정명령('21.2)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정권은 교체되었으나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권의 대중국 정책에 이어서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의 공급망 교란 사태를 겪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비하여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17)을 발표하였다('21.2.24).

공급망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4대 품목(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광물자원, 의약품) 및 6개 산업(방위, 공공보건, 기술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의 공급망 현황과 대외 의존도 등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내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4대 품목은 100일 이내, 6대 산업은 1년 이내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미 행정부는 4대 품목('21.6.8) 및 6대산업('22.2.25). 공급망 검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고 핵심산업 관련 미국내 생산역량 확충, R&D 등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동맹·파트너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제시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 의존도 해소와 우방국 중심 핵심산업 공급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며 반도체 산업 보조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산업부는 무역안보국을 중심으로 미측의 정책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4대 품목별 협의체 및 업계 소통을 통해 한미 협력방안과 공급망 상황을 적극 점검하고 대응하였다.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산업안보 TF를 운영하고, 범부처 장관급 회의체로서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유사입장국간 공조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굴기 견제를 위해 독자적인 정책 외에도 EU 및 일본 등 인권·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EU 통상기술위원회(TTC)를 '21.6월에,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 또한 '21.11월에, 한-미 정상회담 계기 한-미 상무장관간 공급망·정책대화(SCCD)도 '22.5월에 발족하였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양자 협의체에서는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심사, 공급망 안정화 등과 관련한 협력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수출통제 사유로 국가안보 외에 “국가이익”까지 고려하도록 한 “수출통제법”을 제정, 발효하였으며('20.12월), 수출통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를 발표('22.5월)하였다. 중국과 이익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담('22.6월)”을 개최 하기도 하였다.

특히, 수출통제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국은 다자체제에서 만장일치로 합의(consensus)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외에도 독자적, 혹은 동맹국간 공조하에 별도의 수출통제 정책을 일종의 외교정책으로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후술할 대러 수출통제 공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수출통제라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진영간 결속과 대립이 심화되게 된 것이다.

2.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 對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통제

1) 대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통제 주요내용

산업부 무역안보국은 '22.2월 러-우 전쟁 발발에 따라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였다. 주요 조치로는 ① 전략물자 수출허가 불허, ②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통제, ③ 373개(명) 우려거래자에 대한 심사 강화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러시아, 벨라루스 대상 우리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을 차단하였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사용에 쓰일 것으로 판단하여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러시아를 둘러싼 군사외교적 민감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 향후에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 둘째,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반영하였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각국이 수출통제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57개 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통제를 결정하고, '22.3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 한국 자회사로의 수출 내지 고시 시행 전 既 계약분 수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57개 품목에 대한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 및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심사를 엄격히 운용하기 위해 러시아 및 벨라루스 관련 국제사회 제재대상자 373개(명)를 국내법상 우려거래자에 반영하였다. 우려거래자는 수출허가(상황허가) 심사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대러 수출통제 관련 국제공조 노력

유사입장국간 공조 강화 동향은 '22.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수출통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치에 공조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역외적용 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총 37개국이 FDPR 면제국에 등재되었다('22년말 기준).

산업부 무역안보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통제 당국으로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여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였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미국의 FDPR 면제국에 등재('22.3월)됨으로써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 관련 굳건한 신뢰를 확인하였다. 미국 외에 EU와도 대러 수출통제 관련 활발한 정보교류 등을 통해 EU의 대러 수출통제 파트너국가로 등재('22.6월)되었다.

2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대응

1)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22년 10월 7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중국의 고성능 컴퓨팅 능력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다. 산업안보국(BIS)은 수출통제를 강화한 배경으로 중국이

군사 현대화, 정보기관 지원, 국내감시에 대규모 AI 및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국가안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① 반도체

특정사양의 첨단 컴퓨팅 칩, 특정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제품, 미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presumption of denial)가 거부된다.

② 반도체 장비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및 고사양 증착장비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고, 한국 등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수출 허가가 발급된다.

[표 5-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구분	내용
반도체	①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② 특정사양(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③ 美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반도체 장비	①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생산목적 장비, * (로직칩)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D램) 18nm 이하, (낸드) 128단 이상 ② 고사양 증착장비

2) 정부 대응 현황

한미 양국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수출통제 당국 및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협의 결과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22.11)을 개최하여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관련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및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를 운영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 산업협력 대화(SCCD),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포괄허가 연장 등 반도체 수출통제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제2절 ▶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무역안보정책과 주무관 김영희

무역안보심사과 사무관 박우진

1. 개요

전략물자의 무분별한 거래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저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1949년에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에 대해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 사이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1950년에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을 설립하여 공산권 국가로의 전략적 물자 및 기술의 제공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최근에는 강대국 사이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걸프만, 팔레스타인,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종교, 인종,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지역분쟁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안보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며, 생화학이나 핵무기,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우려국가(concerned countries)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확산을 통제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로서 1978년에 핵무기를 통제하는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1985년에 생화학무기를 통제하는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1987년에 미사일 및 운반체를 통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1996년에 재래식무기를 통제하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 등이 발족하였고, 이를 통해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가 전쟁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에 핵공급국그룹 가입을 시작으로 1996년에 바세나르체제 및 호주그룹 가입, 2001년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고, 총회의장을 수행하는 등 국제안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내적으로는 1987년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하고,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 2003년부터는 상황허가

제도⁶⁾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4월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UN Security Council Resolutin, UNSCR)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경유, 환적 및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10월에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와 기술개발촉진법령(현재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공고'를 통합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를 제정·고시하여 수출통제기준의 명확화 및 기업의 이용편의성을 제고시키고, 2007년에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제도⁸⁾ 도입으로 무역거래자의 수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2007년)하여 전략물자의 판정,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및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기업보호 측면에서는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무역보복을 차단하는 한편, 국내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반면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위반한 기업은 우려거래자(DL, Denial List)에 등재되어 무역제한, 대외이미지 실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략물자는 전자·기계·화학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 걸쳐 있으며, 2022년 현재 총 1,704개가 지정되어 있다. 전략물자는 이중용도품목⁹⁾,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등으로 구분되며, 개인 또는 업체(이하 '수출자')는 수출 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출품목의 최종용도가 우려스러운 경우 등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 외에 전략물자의 3국간 거래를 중개하거나, 국내 항만·공항에서 경유·환적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3년 이내의 수출제한 또는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6)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은 수출 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7) 2009년 11월 2일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8)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 능력 등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포괄적 수출허가 신청,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9) 민간용으로 제조, 개발되었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표 5-2] 전략물자 지정현황(2022년 기준)

구 분			지정현황		예 시 * 전략기술은 해당 전략물자 관련 기술
			물품	기술	
별표2 (이중용도 품목)	1부	소재, 생화학	486	465	탄소섬유, 마레이징강, 동물 병원균 등
	2부	기계	133	141	공작기계, 치수검사기, 원심분리기 등
	3부	전자	177	177	통신용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
	4부	컴퓨터	23	26	슈퍼컴퓨터, 방사선 경화 컴퓨터 등
	5부	정보통신보안	70	59	라우터, 광섬유, 전파방해장치 등
	6부	센서, 레이저	179	182	고속카메라, 광센서, 고출력 레이저 등
	7부	항공전자	64	88	자이로스코프, 위성항법시스템 등
	8부	해양	34	43	잠수정, 수중용 로봇 등
	9부	항공우주	131	147	가스터빈엔진, 액체로켓추진시스템 등
	10부	원자력	130	130	원자로, 연료봉, 증기발생기 등
	소 계		1,427	1,458	
별표3(군용물자품목)			277	280	자동화기, 탄약, 함정, 무인항공기 등
합 계			1,704	1,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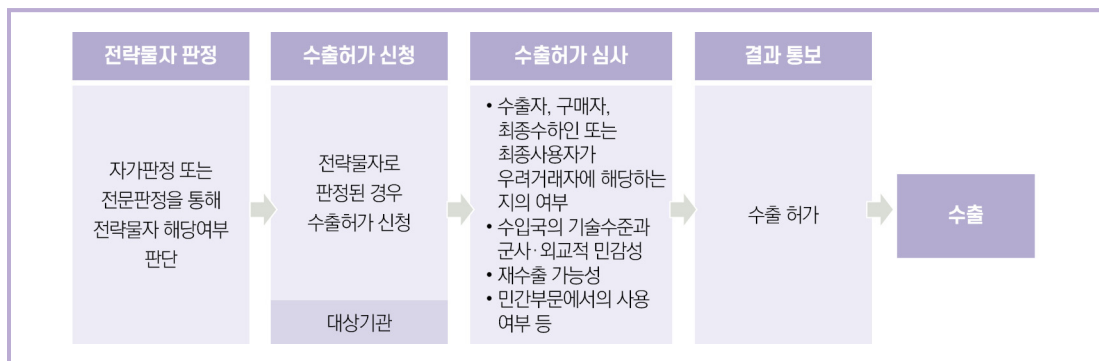
* 출처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4호)

[표 5-3] 전략물자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허가기관	소관 품목
산업통상자원부	이중용도품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제1부~제9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전용품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제10부)
방위사업청	군용물자품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인 품목, 별표3)

* 출처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4호)

[그림 5-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 출처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4호)

1) 전략물자의 판정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무역거래자의 신청에 의해 전문 판정기관¹⁰⁾에서 판단해주는 '전문판정'이 있으며,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결과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간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적 상황과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으로 기업들의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 신청 건수는 '18년 106,881건에서 '22년 105,349건으로 매년 10만 건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표 5-4] 전략물자 판정신청 추이(2018~2022)

(단위 :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판정	106,881	108,555	109,182	101,753	105,349
자가판정	75,555	71,717	75,460	68,398	68,929
전문판정	31,326	36,838	33,722	33,355	36,420

2) 전략물자 허가신청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수출대상 품목이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www.yestrade.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신청 전에 거래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여부¹¹⁾, 전략물자 해당여부, 거래관계자(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의 우려거래자 여부, 전략물자의 우려목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출지역, 수출허가 유형별로 구비하여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 기본서류는 허가신청서, 수출계약서, 전략물자판정서, 수출자서약서, 최종수하인진술서, 최종사용자서약서, 최종사용자의 수입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등) 등이다.

전략물자의 수출지역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목적지 기준으로 '가의1', '가의2', '나의1' 및 '나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1'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NSG, AG, MTCR, WA)에

10) 전문판정은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11) 전략물자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수출 후 7일 이내에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거래보고서를 해당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두 가입한 국가로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등 28개 국가이다. '가의2'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지만 한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중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로 일본 1개 국가이다. '나의1'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일부 가입 또는 비가입 국가이며, '나의2'지역은 UN 안보리 지정 수출 우려국가인 11개 국가이다. 전략물자의 최종목적지가 '가의1'지역이라도 '가의2'지역 또는 '나'목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출허가의 유형에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가 있다.

① 개별수출허가

수출허가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전략물자 수출신청 건별로 매번 허가기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 허가받는 형태이다.

② 포괄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초민감품목, 원자력 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및 기술을 제외한 전략물자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자율판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도록 일괄 허가받는 형태이다. 포괄수출허가는 다시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로 구분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 여부 및 수출 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품목, 그 수출 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 등 거래관계자가 거래품목의 대량 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임을 알았거나 ¹²⁾의심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12)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4호)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제1항 참조

통보받은 경우 수출신고 이전에 허가기관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UN이 지정한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하거나 특정품목¹³⁾을 이란, 시리아 등 우려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 필요하다. 한편, 2022년 3월부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동참하여, 별표 2-2(상황허가 대상품목)에 고시된 57개 품목을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황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필요한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개허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 포함)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나, 해당 중개 관련 당초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의1”지역인 경우에는 면제된다.

⑤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 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및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규정하는 운송사업자 등)는 허가 기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3) 전략물자 허가심사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근거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 허가의 일반원칙, 수출허가의 지침, 개별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는 허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MTCR 통제품목은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고, CWC(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해당품목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①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등 평화적 목적, ②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환경 보호와 직접 관련된 목적, ③ 화학무기 사용,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 독성 사용 이외의 군사적 목적, ④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다.

13)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4호)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제3항 및 별표2의2 참조

수출허가의 지침은 NSG 원자력 전용품목 및 이중용도품목, MTCR 통제품목, AG 통제품목, CWC 통제품목, ATT(무기거래조약) 통제품목, UN안보리결의 제2231호(이란제재) 해당품목 등 통제체제별로 규정¹⁴⁾되어 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 수입국,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사용용도의 신뢰성, 재수출 가능성, 거래관계자의 우려거래자 해당 여부 등의 사항을 심사하며, NSG, MTCR, ATT 통제체제의 경우 별도 요소도 고려하고 있다.

수출허가 심사는 상기 모든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출허가서를 발부하거나 거부 처리한다.

[표 5-5] 항목별 제출서류 및 주요 검토·확인 내용

항목	문서	주요 검토·확인내용	제출방법
신청서	개별수출허가 신청서	수출자, 담당자, 구매자, 제조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목적지 국가, 판정 정보 등	Yestrade에 직접 입력
계약설명	수출계약서, 신용장, 가계약서, 주문서 중 1부	실제 수출계약 여부 확인	Yestrade에 관련서류 첨부
품목설명	전문판정서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서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서 제출은 Yestrade상 판정발급 번호 조회, 기재로 대신함
	자가판정서 매뉴얼 또는 사양서 등	전략물자 해당 여부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전략기술 해당 여부	
서약서	수출자 서약서	수출자, 수출품, 수량,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자 홈페이지, 사용목적, 최종사용자 확인, 서약내용	Yestrade에 관련서류 첨부
	최종수하인진술서 또는 수입목적확인서 (단, CWC 제3종 화학물질을 CWC 가입국 이외로 수출시 수입국정부 발행 수입목적확인서)	최종수하인 직접사용 여부, 재수출 및 재판매 여부(최종사용용도 기재) 등	
	최종사용자서약서	대표자, 계약담당자, 기업 업종 및 업태, 구매계약 내용(사용용도 및 보관장소) 등	
기타	최종사용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최종사용자의 업태, 주소, 대표자명 등의 진위여부, 사용용도의 적합성 등	Yestrade에 관련서류 첨부

14)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4호) 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이나, '가의1'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허가를 처리해야 한다. 단,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관련 행정기관·국가·국제체제와의 협의, 현지조사, 자료 보완요청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수입국이 '나의2'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목적지 국가가 '가의1'지역인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의1'지역에 소재한 위탁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A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이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이다.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이다.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업체가 수출허가 대상품목과 최종사용자를 제외한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에 수출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기관은 수입국이 '나의2'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수출허가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외에 수출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수출허가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건수는 2020년 4,044건, 2021년 4,813건, 2022년 4,682건이다.

[표 5-6]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 추이(2018~2022)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허가건수	5,042	4,838	4,044	4,813	4,682

* 상황허가 실적 포함

4) 불법 수출 단속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에 따른 3년 이내의 전략물자의

수출이나 수입이 제한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역량 제고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 지정 제도

① 제도 개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 지정제도는 국내 수출기업의 자율적인 수출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이 수출통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및 거래상대방 확인 등의 수출관리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2005년 도입되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실시로 기업주도의 수출관리를 장려하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 규모·업종 등 기업별 무역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CP지정요건으로 일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업의 규모 및 역량에 따른 CP 운영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나의 체계로 운용하여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상황 및 수준별 지정요건을 차등화 하여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 자율수출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등급별로 구분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를 2014년 1월에 도입하였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받게 되면 포괄허가를 통해 별도의 허가 없이 일정기간(2~3년) 반복수출할 수 있는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개별수출 허가시 심사면제, 서류면제, 허가면제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표 5-7]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등급별 특례

구분	특례		A	AA	AAA
개별 수출 허가	가의1 지역		심사면제	심사면제	심사면제
	가의2 지역, 나 지역		-	-	서류면제
	같은 수출품목(동일HS번호, 동일통제번호)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제*	서류면제	서류면제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단, 재판매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1. 수출자의 최대주주 2. 수출자의 해외 본점 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 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4. 수출자의 해외 지점 (단 수출자가 본점)	가의 1지역	허가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허가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가의 2지역, 나 지역	서류면제*	서류면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최종사용용도가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수용 제품의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 국법인인 민간기업인 경우		허가면제	허가면제	허가면제
	가의2 지역, 나 지역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 소관체제 가입국으로 동 물자 수출 포함		15일 (*표시는 10일)	10일	5일
	계약 체결 없이 제5조(허가기관)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허가면제(단, 실적보고 시 기술 수출내역 보고)		-	○	○
	암호기능이 주요 기능 혹은 기능군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고, 공개되거나 상용화된 암호화 표준을 구현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민수용 소프트웨어 중 민간기업의 운영 효율화 및 판촉 지원 용도, 모바일 단말기 용도인 경우 허가 면제		-	-	○
	서비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설치하고,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별표2 제5부 제2장 주3에 따른 예외조항을 만족하는 경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허가 면제		-	-	○
	해외에서 국내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바세나르체제의 민감· 초민감 기술을 '가의1'지역에 견적, 입찰 제안서와 함께 통상적 으로 제공하는 경우 허가면제. 다만, 관련 품목의 설계, 생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의 기술은 제외		-	-	○

구분	특례	A	AA	AAA
포괄 수출 허가	사용자포괄허가 (‘가의1’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기간	3년	3년
	사용자포괄허가 (‘가의2’지역, ‘나’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기간	-	2년
	품목포괄허가	-	△ ‘가의1’ 지역만	○
		기간	-	3년
중개 허가	정기보고 주기	실적보고	반기	연간
		운영보고	연간	연간
		허가면제	-	○
		실적보고	-	반기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수출거래보고		7일	반기
			연간	

[표 5-8]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규모별·등급별 현황

규모	업태	등급	업체수	합계
대기업	제조 (유형1)	AAA	5	31
		AA	16	
		A	10	
	상사 (유형3)	AAA	2	9
		AA	3	
		A	4	
소계		40	40	
중소기업	제조 (유형2)	AAA	3	90
		AA	57	
		A	30	
	상사 (유형4)	AAA	2	25
		AA	16	
		A	7	
소계		115	115	
대학 연구기관	AA		2	2
	A		1	1
	소계		3	3
합계				158

② 해외사례

일본은 전략물자 자체통제장치(조직, 규범 등)를 갖추고,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혜택(포괄허가)을 부여하는 CP제도가 있으며, 통상 3년 동안 반복사용 가능한 포괄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구 분	화이트 국가	일반국가	
	일반포괄허가 (모든기업 가능)	특별일반포괄허가 (CP기업만 가능)	개별허가
처리기간	1주 이내	1주 이내	90일 이내
제출서류	2종	2~3종	3~10종
허가 유효기간	통상 3년	통상 3년	통상 6개월

미국은 수출관리 및 준수 프로그램(EMCP, Export Management Compliance Program)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이 이를 참고하여 자율준수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달리 지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Outreach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기업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략물자 관리능력 제고로 기업들이 수출통제 제도를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무역안보의 날’을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무역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인 홈닥터 사업을 진행하여 해당 기업의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도이행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략물자 온·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수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 집합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방문교육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군·경찰 등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품목식별 훈련 등을 통해 수사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대학에도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수출통제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무역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아웃리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9월에 개최한 「유엔안보리 결의(UN Security Council Resolutin, UNSCR) 1540 산업계 아웃리치 컨퍼런스」를 통해 UN, EU, ASEAN과 유관기관, 기업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확산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 및 각 국가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 개요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불을 상회하는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하며 글로벌 교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글로벌 교역이 보다 활발해 지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장벽이 낮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세계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기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품, 기술 등이 소수 무장세력이나 우려국가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장벽은 필요하겠다. 특히나, 기술은 그 속성상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생산방법 등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도 기술이전이나 학습 등을 통해 전수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만약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 및 관련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교역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재래식 무기, 핵무기,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의 확산을 통제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각각 구성하였고, 무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및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괄적으로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하여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 등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조약(BWC), 무기거래조약(ATT)을 근거하여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표 5-9] 4대 수출통제체제 개요

체제명	통제분야	설립(韓가입)	회원국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무기	'96년('96년)	42개
호주그룹(AG)	생화학무기	'85년('96년)	43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87년('01년)	35개
핵공급그룹(NSG)	핵무기	'74년('95년)	48개

2. 추진 현황

1 수출통제체제별 수출통제 현황

현재 수출통제 대상품목 1,703개를 국제체제별로 분류하면 바세나르체제에서 관리하는 품목 수가 962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는 이중용도 품목과 군용물자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품목으로는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이용을 위한 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 항공 추진장치 등이 있다. 또한 통제대상 군용물자 품목으로는 폭탄, 탱크, 항공기, 군함, 총기 및 그와 관련 기술 등이 있다. 구체적인 품목 명칭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10] 기술분야별 전략물자 해당품목

구분		전략물자 해당품목
이중용도 품목 통제리스트	Cat 1 신소재	알루미늄 파이프, 티타늄 튜브 등 금속 합금, 텅스텐 분말, 알루미늄 분말, 탄소섬유 등
	Cat 2 소재가공	베어링, CNC 선반, 밀링머신, 연삭기, 방전가공기, 표면증착장비, 치수측정기, 로봇, 유동성형기 등
	Cat 3 전자	집적회로, 반도체 증폭기, 축전지, 리튬전지, 신호분석기, 네트워크분석기, 주파수변환기, 반도체 장비 등
	Cat 4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신경 컴퓨터, 광 컴퓨터, 침입탐지시스템 등
	Cat 5 통신/정보보안	네트워크 서버, 통신장비, 무선영상 수신장비, 교환기, 광통신 케이블, 정보보안 장비 등
	Cat 6 센서 및 레이저	수심측량기, 음향 송수신기, 영상증배관, 열화상 카메라, 전자식 카메라, 중력계, 레이더 시스템 등
	Cat 7 항법/항공전자	가속도계, 위성항법시스템, 관성시스템, 자이로스코프, 항해장비 등
	Cat 8 해양기술	잠수정, 수상선, 수중카메라, 수중로봇, 수중관측시스템, 추진프로펠러, 펌프제트 등
	Cat 9 항공/추진장치	가스터빈엔진, 터보엔진, 진동시험장비, 로켓엔진, 무인항공기, 우주발사체, 로켓 등
	Sensitive List	Cat 1~9의 물자 중 중요도가 높은 민감물자
	Very Sensitive List	Cat 1~9 중 물자 중 중요도가 매우 높은 초민감물자
군용물자 품목 통제리스트	Item 1~22	활강무기, 탄약, 신관장치, 군용차량, 생화학 독성작용제, 방사성물질,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무인항공기, 항공기엔진, 군용 영상장비 등

핵공급국그룹에서 관리하는 품목 수는 287개이다. 이중용도 품목으로는 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 소재(알루미늄 합금 등),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펌프 등), 핵무기 기폭 및 측정장치 등이 있다. 한편 원자력 전용품목으로는 핵물질, 원자로, 중수 생산시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등이 통제되고 있다.

호주그룹에서 관리하는 품목 수는 251개이다. 구체적인 대상품목에는 화학작용제 및 전구체, 생물 작용제(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식물성 병원균 및 동물성 병원균, 이중용도 화학제조 시설, 장비 및 기술(열교환기, 종류탑, 펌프 등), 이중용도 생물장비 및 관련기술(발효조, 동결건조기) 등이 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서 관리하는 품목 수는 203개이다. 구체적인 통제대상 품목은 Cat I (WMD 운반 가능한 미사일 및 관련 기술)과 Cat II (Cat I 구성품인 이중용도 물자)의 분류 체계에 의해 구분된다. 우선 Cat I 에는 완성로켓시스템(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무인항공시스템(순항미사일) 등이 포함되며,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이상인 것이 통제대상이다. 이러한 사양을 만족하는 Cat I 관련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제조설비 포함) 수출허가 시 수입국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한편 Cat II에는 완성로켓시스템 및 무인항공시스템(사거리 300km이상, 탑재중량 500kg미만), 터보제트엔진, 추진제, 항법장치, 비행제어, 환경 챔버, 레이더 등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2 수출통제 통제기준 개정 실적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품목 및 통제기준은 무기 및 관련 제조기술의 발달, 국가별 기술수준 격차 등을 토대로 국제체제 회원국 합의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각 통제 대상품목과 통제기준은 기술발달로 인해 제외·완화 또는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체제에서의 통제대상 및 기준사양 개정은 국가별 경제 및 무역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품목별 기술·시장 분석 등을 통해 신중하게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2년에는 총 145건의 개정안건이 4대 수출통제체제에서 통과되었으며, 고성능 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 방안이 체제별로 논의되었다. 특히 바세나르체제에서는 전문가그룹회의와 기술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총 24건의 개정안건이 합의되었는데 자동차용 라이더에 사용되는 반도체 레이저를 통제대상에서 제외, 준궤도 비행체에 대한 통제기준을 명확화, 영구자석을 이용한 잠수정용 추진시스템에 대한 통제기준을 명확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중력계·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군용 암호화 장비 등에 대한 모호한 통제문구를 수정 보완하는 안건을 제안하여 통제대상 해당 여부를 명확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입에 애로를 다소 해소하였다.

한편 핵공급국그룹에서는 총 2건이 합의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동성형기 및 회전자 제조조립장비에 대한 통제기준이 현재 운용중인 제품의 사양과 일치되도록 수정 보완 되었다. 그 밖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에서는 총 7건의 개정안건이 합의되었는데 단순 편집 사안 외에 고체추진제 생산장비, 유인항공기 내 미사일 발사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준이 명확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호주그룹에서는 총 7건의 개정안건이 합의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화학무기의 전구체인 3-퀴뉴클리디놀의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한 통제기준을 신규 추가함으로써 대량파괴무기 수출관리상의 허점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3. 향후 계획

비국가행위자의 테러위협, 대량살상무기의 살상력 증대로 인해 수출통제체제의 역할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수출통제체제 논의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출하고 안건별 통제여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몽골, 말레이시아, 시리아 등 비회원국의 수출통제 제도 소개 및 홍보에도 기여하려한다.

수출통제의 목적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안전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관련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함으로써 민감품목 비확산을 통한 국제평화와 지역안보 달성 및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을 균형감 있게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 안보와 경제 관점에서 품목별 경제적 중요도, 기술 및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출통제체제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1. 개요

1)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

반도체, 5G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됨에 따라, 핵심기술의 보호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5G, AI, 빅데이터 등 정보사회 고도화로 기술의 국가 간 이동이 더욱 용이한 환경이 되었으며, 기업 인수·합병, 핵심인력 고용 등 기술탈취의 유형과 방식은 다변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가지는 반도체·OLED·이차전지·자동차산업 등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어, 해당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 처해있다.

2) 주요국 기술보호 현황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통제 대상기술을 최신화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심사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는 등 기술보호제도를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표 5-11] 주요국 기술보호 정책 현황

국가	분류		주요내용
 미국	기술	통제기술 최신화	• 국가안보 차원의 신형·기반기술 등의 수출통제 대상* 확대·운영 * 수출통제개혁법(ECRA) 제정('18.7), 핵심신기술(CETs) 19개 분야 104개 기술 지정('22.2)
		외국인 투자심사	• 핵심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시 신고 의무화, CFIUS 관할권 확대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제정('18.8월, '20.2월 발효)
		사이버 보안강화	• 사이버 보안 관련 민간협력, 동맹국 공동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대통령 직속 직위 신설, 영업비밀보호법 제정('16), 국방조달규정 개정('18)
	인력	R&D 보안강화	• 기술해외유출시 벌칙강화(최대 20년 징역)/침해법인 벌금상향(\$500만) * 외국경제스파이처벌강화법(EEPE) 개정('13)/연방영업비밀보호법 제정('16) • 외국 연구인력 비자심사를 통해 우려거래자의 전문지식 접근 차단

국가	분류	주요내용
 일본	기술	통제기술 최신화 • 정보기술에 대한 통제근거* 마련 및 특정중요기술에 대한 비밀특허제도** 도입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18.7, '19.1) // ** 경제안보법 제정('22.5)
		외국인 투자심사 • 외국인투자 심사범위 확대(주식취득비율: (기존) 10% → (확대) 1%)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시행령 개정('20.5)
		사이버 보안강화 • 민관 정보공유 네트워크(사이버범죄 대책센터)·협의회 등 활성화
	인력	R&D 보안강화 • 정부 R&D지원대학 연구실에 대한 정보*보고 의무화 추진('22년) * 외국기업 등의 연구자금 지원여부,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연구이력 • 외국 전문인력 비자심사를 강화하여 첨단·전략기술 불법이전 차단('22년)

3 우리나라 기술보호 현황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7년 4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시행한 이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 방향 결정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M&A 규제('11년), 수출 심의단계 축소('15년), 핵심인력 관리, 기술유출 처벌수위 상향('19년) 등 기술보호 통제수단을 강화해왔다.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개 분야의 기술을 지정하였으며, 수출허가, 인수합병 승인, 보호조치 의무부여, 유출행위 금지와 처벌조항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1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2.1~'24.12)을 수립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총리 주재)에서 산업부·과기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정보수사기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통해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했다.

2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안보포럼'을 운영하여 주제별 연구회, 전문가 자문, 보유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주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인수·합병 심의대상에 간접인수와 사모펀드 등을 통한 인수 포함, 외국인의 범위에 복수국적자 등 포함, 범죄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실시·시행명령·이행강제금 신설 등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 시의성있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리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발굴하고 보호 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기 위해, 2021년 1월에는 반도체·정보통신·생명공학·우주 4개 분야의 5개 기술의 신규지정 및 정보통신·우주 2개 분야 4개 기술의 해제를 진행하였고, 2021년 7월에는 반도체·전기전자 분야 2개 기술의 신규지정을 완료하여 총 12개 분야 73개 기술을 대상으로 시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4 기술보호제도 실효성 강화

국내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호조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도 강화해가고 있다. 그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유기관의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서면조사 위주로 점검하였으나, 조사 대상기관 확대·점검항목 현행화를 통해 강화된 현장 방문조사 중심의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보호조치가 미흡한 대상기관이 법정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시정명령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여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5 기술보호를 위한 인식제고 노력

산업기술보호의 날(10.27)을 통해 기술보호 유공자를 포상하고 국내외 기술·보호 동향을 공유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술보유기관 기술보호 관계자와 일반국민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반·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CEO·보안담당자·R&D인력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운영, 산업보안 관리자 자격제도 등을 통해 기술보호 인력의 산업보안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정책·제도 등 정보 안내와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산업보안 정보도서관(www.is-portal.net)을 운영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주도로 마련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가속화 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발굴하고 보호 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수출통제 기준을 고도화 하는 등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기술 보유기관 국내외 사업장의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현장 실태점검의 대상 확대·점검 항목 현행화·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술보호 제도의 이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Part 06 공정·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용



제1절 ▶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현황

무역구제정책과 행정전문관 박중희

1. 개요

무역구제제도는 덤핑과 보조금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입국의 방어수단이다.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처음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GATT 및 WTO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무역구제제도는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글로벌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교역규모 축소, 공급망 붕괴, 수요 부진 등의 상황이 각국 수출기업 피해를 확대하고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시장상황(PMS), 불리한 가용정보(AFA), 환율 상계관세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반덤핑 위주로 운용해오던 조치의 범위도 최근에는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까지 확대·다각화하고 있다.

그간 무역구제를 적극 활용하던 국가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에서도 무역구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아세안의 조사개시 건수는 2020년 4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나아가, 무역구제제도가 미흡하던 아세안의 국가들도 최근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아세안의 조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부 국가에서만 행해지던 무역구제는 이제 신흥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무역구제는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전세계가 쌓아 올린 자유무역의 가치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각국 간 무역구제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 관련 제도

이러한 무역구제에 대한 국제규범들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나아가 이들 협정들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이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 국내법으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표 6-1]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구분	근거규정		비고
	국내법	국제규범	
반덤핑제도	관세법	GATT 제6조①항, ②항 WTO 반덤핑협정	협의
상계관세제도	관세법	GATT 제6조③항,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세이프가드제도	관세법 불공정무역조사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없음	광의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없음	최광의

3. 한국 무역위원회 현황

① 무역위원회의 법적 성격

무역위원회는 1986년 제정된 대외무역법 제37조에 의거하여 1987년 7월에 출범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 심의·판정 및 구제조치의 건의 등 불공정무역조사법령상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9인의 무역위원회 위원들의 심리와 합의를 통해 의결하고, 이를 위원회 명의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절차에 따라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하고 판정하며,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판정한다는 의미에서 준사법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되 위원회의 각종 조사와 업무처리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기구로서 무역조사실을 둠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무역위원회 조직과 인력

1) 무역위원회 구성

1990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무역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위원 8명을 포함,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무역위원회의 위원은 산업·무역·통상 분야, 학계, 법조계 또는 회계 및 지재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질병, 기피·제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7조 제2항은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 피해조사,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불공정수출입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다.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조사실 업무를 총괄·관장하는 직위로서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개방형 공무원으로 보하며, 3~4급 과장급 4명과 기타 실무자로 4~5급 1명, 5급 17명, 6급 10명, 7급 6명 등 총 45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 반덤핑,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산업피해조사과 사무관 김준철/사무관 나강운

덤핑조사과 사무관 한정선/주무관 이용욱

불공정무역조사과 사무관 이상엽

1. 덤핑방지관세 제도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범위 내에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GATT 제6조를 토대로 만들어진 반덤핑협정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청, 조사절차, 덤핑판정의 요건, 증거, 부과방법 등 실체적·절차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국내법적으로는 산업 피해구제법 및 관세법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다음의 3가지 요건 즉, ①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고, ②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며, ③ 덤핑행위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덤핑이란 수출국내에서 정상적 거래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수입국으로 넘어가는 수출가격이 더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덤핑여부 결정을 위해 수출가격과 비교되는 기준가격으로서 당해 물품 공급국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수출국내 판매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즉,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 판매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생산비+합리적 관리비, 판매비 등 비용+정상이윤)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한다.

수출가격은 수출국의 공장도가격 기준 수출가격(조정된 수출가격)을 사용한다. 그러나,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 등으로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입자가 최초로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구성수출가격을 대신 사용한다.

[표 6-2]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조정요소

정상가격	덤핑가격	
	수출가격(EP)	구성수출가격(CEP)
수출국 통상거래가격	한국으로의 수출가격	한국내 재판매가격
• 운반비(-) - 운송비, 보험료, 창고료 등 • 판매조건의 차이(-) -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은행수수료 등	• 운반비(-) - 운송비, 보험료, 창고료 등 • 판매조건의 차이(-) -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은행수수료 등	• 운반비(-) - 운송비, 보험료, 창고료 등 • 판매조건의 차이(-) -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은행수수료 등
-	-	• 현지법인의 관련비용(-) - 현지법인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판매관리비, 관세·통관·운송부대비
• 과세상의 차이 - 관세환급(-) • 거래단계 차이(±) • 물리적 특성차이(±)	-	-
조정된 정상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조정된 수출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조정된 수출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한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 단계)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정비교의 원칙이라 한다.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덤핑판정 시 통상적으로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에서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가중평균수출가격을 비교(A-A방식)하여 덤핑을 판정하나,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거래비교단계에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기도 한다(transaction to transaction, T-T방식). 나아가 예외적으로 가중평균에 의한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에 의한 수출가격의 비교를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구매자, 지역, 시기별로 수출가격의 양태가 다양하고 조사당국이 A-A방식 또는 T-T방식에 의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되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덤핑차액이 매우 작거나(미소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 덤핑수입량이 소량이라고 결정하는 경우(미소물량, negligible imports volume) 즉, 최소허용기준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WTO반덤핑협정 및 관세법시행규칙에서는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또는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출물량이 3% 미만이고 수출물량이 3%미만인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의 합계가 7%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을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실질적 피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국내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실질적 피해는 수입제품 가격이 동종제품의 가격보다 낮으며, 이와 같은 가격 차이로 국내산 제품 가격의 인하 또는 상승억제를 초래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가동률, 재고 등의 주요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실질적 피해의 우려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해야 한다. 즉, 덤핑수입의 현저한 증가, 수출자의 공급능력 증가, 국내가격의 현저한 하락, 수출국내 재고상황 등을 종합하여 그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은 국내산업의 투자, 가동률, 손익, 시장점유율 등에서의 정상기대치 및 실제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인과관계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유발되어야 하며, 조사당국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근거로 입증해야 한다. 조사당국은 덤핑수입 이외의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이들 요소를 덤핑수입의 원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덤핑가격으로 팔리지 아니한 수입상품의 물량 및 가격, 국내의 수요감소나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과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등이 있다.

한국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총 190건의 반덤핑 조사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140건(73.7%)의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품목별로는 화학 67건, 종이·목재 33건, 기계·전자 20건, 제철·금속 28건 분야 등에 주로 집중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96건, 일본 55건, EU 33건, 미국 30건 순서이다.

[표 6-3] 연도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단위 : 건)

구 분		'8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반 덤 핑	전체*	61	11	7	5	4	6	8	3	6	6	6	5
	원심	42	4	7	3	3	3	6	2	1	2	1	2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반 덤 핑	전체*	5	10	4	5	7	6	8	5	6	6	190 (140)	
	원심	3	3	3	2	3	2	2	2	4	4	104 (69)	

* 당해연도 신청 기준, () 안은 조치건수

[표 6-4]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단위 : 건)

구분		중국	일본	미국	EU	대만	인도	말련
조사신청		96	55	30	33	19	21	17
조사중		4	-	-	-	-	2	-
긍정 판정	조치중	12	3	1	4	3	3	1
	조치완료	62	41	20	15	13	13	10
기타*		17	11	9	14	3	3	5

구분		인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캐나다	기타	계
조사신청		15	8	10	15	6	24	349
조사중		1	-	-	1	-	5	13
긍정 판정	조치중	2	-	-	2	-	5	36
	조치완료	6	5	8	6	5	3	207
기타*		6	3	2	6	1	11	91

* 기타 : 부정판정, 신청철회 및 신청기각 포함

[표 6-5] 품목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단위 : 건)

구분	화학	기계/전자	종이/목재	섬유	제철/금속	유리/도자	기타	계
조사신청	67	20	33	14	28	12	16	190
조치 중	7	-	5	1	7	1	-	21

2. 상계관세 제도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계관세제도는 GATT 1994 제6조, 제1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국제법적 근거를 두며, 이와 함께 국내법인 산업피해구제법 및 관세법의 규정을 기초로 운용된다.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존재하고,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행위와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두번째와 세번째 요건은 덤핑방지관세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GATT 제16조는 보조금의 개념을 모든 형태의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은 이를 구체화하여 ① 자국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있고 ② 재정적 기여에 의해 부여되는 혜택이 있으며 ③ 특정성이 존재할 경우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제1조는 재정적 기여를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접적 자금이전(무상이전, 대출, 지분참여 등) 또는 잠재적 자금이전(대출보증 등), 둘째, 정부세입 포기(세액공제 등), 셋째, 정부에 의한 SOC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구매, 넷째, 정부가 위와 같은 지원을 민간기관을 통해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런 관행이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은 혜택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제14조에서 보조금 유형별 혜택과 보조금액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지분출자가 국내민간투자자의 통상적 투자관행과 불일치하는 경우, 둘째, 정부대출이 기업의 상업적 차입과 차이가 있을 경우, 셋째, 정부의 대출보증이 정부보증이 없을 경우의 상업적 차입과 차이가 있을 경우, 넷째, 정부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또는 재화구매가 적절한 수준 이하의 보상을 받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혜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정성은 보조금이 특정 기업,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게 지원되는 경우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금지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은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수입물품 대신 국산물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내산업 피해의 입증 없이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조치가능보조금은 타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 즉, 산업피해, 관세양허의 무효화 또는 침해, 타회원국의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등을 초래하므로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없어 상계조치를 취할 수 없는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이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더라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잠정적용 규정(WTO 보조금협정 제31조)의 적용기간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다.

[표 6-6] 보조금의 종류

구분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내용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의무	원칙적 사용금지	사용가능	사용가능
규제	- WTO DSB 제소 및 대응조치 - 피해를 입은 국가는 상계관세부과 가능	- 상대방 국가에 실질적 피해를 줄 경우 - DSB 제소 및 대응조치 - 상계관세부과 가능	상계관세부과 불가능
WTO 통보	WTO협정 발효후 3월이내 통보	매년 6월 정기통보	

3. 세이프가드 제도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긴급대응조치를 말한다.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특징이 있다.

WTO 체제 하에서 회원국의 세이프가드조치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GATT 제19조와 UR 협상결과에 따라 1994년 제정된 WTO 세이프가드협정이다. GATT 제19조는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GATT협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의미에서 면책조항 또는 도피 조항이라고도 일컫는다. 이 도피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종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선별적 적용 가능성 여부, 세이프가드조치와 유사한 회색지대 철폐, 심각한 피해의 판정기준, 조사절차의 투명성 등에 관하여 UR 협상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의 세이프가드 협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GATT/WTO 협정 외에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4조(세이프가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8조와 동법 시행령 제87조 내지 제90조(긴급관세)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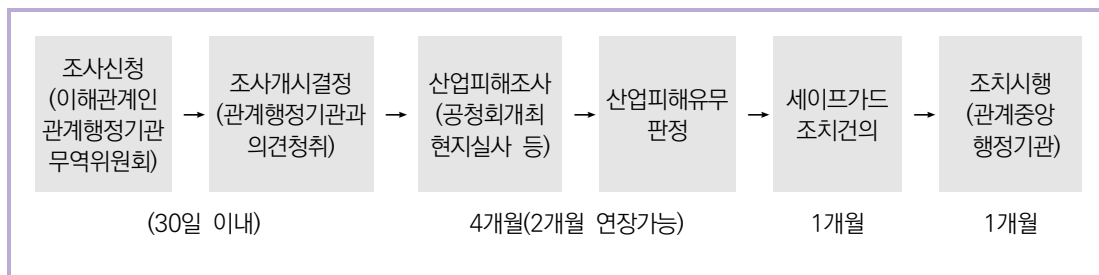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둘째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셋째는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이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 사실이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란 관세양허 이후 발생한 상황으로서, 양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하였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을 말한다.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수입증가는 수입수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 뿐 아니라,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포함한다. 즉, 수입 수량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할지라도 국내생산이 그 이상으로 감소폭을 보일 경우, 상대적 수입증가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였거나,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여기서 “심각한 피해”는 국내산업에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며, “심각한 피해 우려”는 그러한 피해의 발생이 명백히 급박한 상황을 말한다. 국내산업 피해의 유무에 대한 판정은 이러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위하여 조사당국은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관련 요인들, 특히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손실, 고용, 재고 및 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한편, 피해의 우려 여부에 대한 검토에서는 그러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수입증가가 피해발생의 원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증가 추세와 피해지표의 악화 추세간의 상호연관성이 존재하거나, 수입품 가격에 의해 국산품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증가 이외의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러한 피해를 수입증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그림 6-1]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이프가드는 총 34건이 제소되었고, 이 중 22건 (64.7%)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었다. 1994년 이전에 25건이 제소되었고, 1995년 WTO 출범 이후 9건이 제소되었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19건(55.8%)으로 가장 많고, 기계, 화학제품 순이다.

[표 6-7] 연도별 세이프가드 현황

(단위 : 건)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접수	25	1	3	-	1	1	-	1	1
신청철회	7	-	-	-	-	-	-	-	-
조사불개시	1	-	-	-	-	-	-	-	1
긍정판정	16	1	1	1	-	1	1	1	-
부정판정	-	1	1	-	-	-	-	-	-

구분	'03~'12	'13	'14	'15	'16	'17	'18	'19	'20~'22	계
접수	-	1	-	-	-	-	-	-	-	34
신청철회	-	1	-	-	-	-	-	-	-	8
조사불개시	-	-	-	-	-	-	-	-	-	2
긍정판정	-	-	-	-	-	-	-	-	-	22
부정판정	-	-	-	-	-	-	-	-	-	2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쟁 원리와 거래 질서를 침해하여 경쟁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를 의미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및 제조·판매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이 포함된다.

불공정무역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도덕한 행위 그 자체로서 일종의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내의 관련 산업에 손실을 초래하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방에 대해 피해를 유발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 시키고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등 대외교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동법 제4조 내지 제14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11조의3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22년까지 불공정무역행위는 총 397건의 조사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40건(35.2%)에 대해 수입·판매 금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유형별로는 지재산 침해조사가 254건으로 가장 많고, 원산지 표시위반 76건, 수출입 계약위반 등 65건 순이다.

[표 6-8]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신청현황

(단위 : 건)

구분	'8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지재산 침해	107	3	3	2	4	5	4	6	4	3	3	6	10
원산지 위반	42	3	3	6	4	-	1	-	-	1	2	3	2
허위·과장표시	-	-	-	-	-	-	-	-	-	-	1	-	-
수출입 계약위반 등	51	4	3	5	1	-	-	-	1	-	-	-	-
계	200	10	9	13	9	5	5	6	5	4	6	9	12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지재산 침해	5	8	7	7	9	12	8	9	13	3	5	8	254
원산지 위반	3	1	-	3	-	-	1	1	-	-	-	-	76
허위·과장표시	-	-	1	-	-	-	-	-	-	-	-	-	2
수출입 계약위반 등	-	-	-	-	-	-	-	-	-	-	-	-	65
계	8	9	8	10	9	12	9	10	13	3	5	8	397

[표 6-9] 지재산 유형별 신청현황

(단위 : 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계
81	4	125	18	17	9	254

[표 6-10]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결과

(단위 : 건)

제재	무혐의	관련기관 이첩	조사종결	조사중	계
140	107	40	100	10	397

1. 무역위원회 양자협력

무역구제 관련, 주요 교역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무역규모 증대에 따른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는 주요교역국과 협력채널을 통해 연례적으로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협력회의에서는 양국 무역구제제도 정책동향, 조치에 관한 정보 교환과 함께 상호 조사기법과 관행을 교류함으로써 양국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아울러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공유하며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통해 피해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1 중국

가장 먼저 협력채널을 마련한 중국과는 1998년 11월 한·중 양국정상의 ‘공동성명’ 후속조치로 종전의 중국 경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과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증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1999년 8월에 체결하면서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매년 정례협력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총 22회의 협력회의가 이뤄졌으며,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로 인해 무역구제 이행위원회가 구성된 바, 2016년부터 FTA 이행위원회를 병행하여 7차례 개최해 왔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FTA 이행위원회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한국측은 무역조사실장, 중국측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참석한다.

2 EU

EU와는 2002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의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방문을 계기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EU집행위 무역구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EU 무역구제협력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이듬해인 2003년부터 매년 협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EU와의 협력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7차례 개최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2012년부터 이전의 협력회의를 FTA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하고 있다. 2012년 11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해당 작업반회의는 총 7차례 개최되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EU와의 협력채널을 통해 선진국의 무역구제제도를 습득하는 한편 전 세계의 최신 무역구제 동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3 베트남

베트남과의 협력회의는 2009년 10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간 MOU체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역구제 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한 데서 시작되었다.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1차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 9월 2차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한·베 공동위원회, 베트남경쟁청 공무원 대상 무역구제 교육연수 등의 계기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지속해왔다. 2009년 체결한 MOU가 기간만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2016년 7월 한국 무역위원회와 베트남 경쟁청 간의 새로운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양국 간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분야 이행위원회를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협력채널을 통해 양 국가 간 무역구제제도 운영에 대한 양자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베트남 한국기업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양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인도

2017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MOU의 이행을 위하여 정례적인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한국측은 무역조사실장, 인도측은 무역구제총국장이 참석한다. 그 외에, 2018년 9월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에서 인도측은 조사기법의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희망하며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2019년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對한국 수입규제 2위인 인도와의 통상현안을 보다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사당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는 2013년 무역위원회 위원장 방미를 계기로 양국 기관간 실무자급 기술협의회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한국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이 미국 ITC·DOC를 직접 방문하여 무역구제 정책·조사기법·관행 관련 정보교류 회의를 개최하는 바, 2014년 11월 교류채널 구축 이래 총 5차례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위원회를 통상실 주관으로 개최하고, 동 회의 시 한국 무역위원회는 실무자급이 참석하여 조사실무 관련 정보를 보조한다.

2. 서울국제포럼

1 개요

무역위원회(1987년 설립)는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 정착과 선전화를 위해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제도·운영사례 연구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1989년부터 매년 개최하였고 2001년부터는 국제세미나를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으로 발전시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무역구제 관련 세계 동향과 주요 현안,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무역구제제도 발전과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對韓)수입규제기관과 국내기업인 간 소통을 위한 계기로도 활용하고 있다.

2 현황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WTO, GCC 등 국제기구,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조사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WTO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였고 특히 2015년에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WTO와 행사 운영을 공동 진행하고 참가국을 개도국까지 확대하는 등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위상 강화에 노력하였다

최근 COVID-19로 인해 2020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2021년은 영상회의로 진행하였다.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된 2022년에는 현장 행사(대면행사)로 진행하여 다른 해보다 열띤 토론 등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국제포럼의 주요 참석 기관은 WTO, 미국 상무부(DOC)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EU 통상총국, 중국 상무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인도 상공부,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등 무역구제 제도를 활발히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기관들이 참석하여 무역구제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2023년도 '서울국제포럼'은 10.13(금) COEX 아셈볼룸(201~203호)에서 국내외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예정이다.

전체 행사는 10.12(목)~10.14(토) 3일간 열리며, 환영만찬(10.12일), 본포럼(10.13일), 관장간담회와 조사관기술협의회(10.14일)를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네트워킹 오찬(10.13일), 문화탐방(10.14일), 그리고 행사기간 중 양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 6-11] 역대 포럼주제

년도	주제
'03년	무역구제의 동향과 전망
'04년	무역구제, 각국의 경험과 향후 방향의 모색
'05년	일몰재심
'06년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07년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 ①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② 무역구제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현황 ③ 향후 무역구제제도의 방향
'09년	세계 금융 위기와 무역구제 ① 세계금융 위기와 무역구제 ② 반덤핑 동향 ③ 상계관세 대응
'10년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향하여 ① 미국, EU, 중국,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② 캐나다, 인도, 베트남의 무역구제제도 ③ 무역구제제도의 미래
'11년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 ①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② 재심관련 이슈들
'12년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① 세이프가드제도의 현황 및 재설계 ② 무역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13년	세계 무역구제의 발전과 전망 ① FTA 시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 전망 ② 상계관세 제도 운영동향과 향후방향
'14년	WTO와 FTA 무역구제제도의 조화와 미래 ① 거대 경제권 FTA와 무역구제 제도 ② 각 국의 무역구제 제도 운용 경험
'15년	WTO 20주년, 무역구제체제의 성과와 도전 ① WTO 무역구제시스템의 평가와 발전과제 ② 각 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영 경험 ③ 세이프가드 조치
'16년	①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 ② 반덤핑 리뷰
'17년	① 법·규범에 따른 무역구제조사 절차 : 이행 및 도전 ② 2017~2020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과제
'18년	① 주제(세션1) :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 ② 부주제(세션2) : 무역구제제도의 조사절차 및 관행개선
'19년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21년	글로벌 통상환경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
'22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

Part 07 부산엑스포 유치 추진



제1절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기획팀

1. 개요

1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개요

1) 세계박람회 의미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는 세계박람회를 주관하는 정부 간 국제 기구로서 전 세계 171개의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BIE에서는 공인박람회를 두 종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표 7-1] BIE 공인박람회 구분

구분	등록박람회	인정박람회
주제	제한 없음	특정분야 주제
개최간격/행사기간	5년/6개월	등록박람회 사이/3개월
전시면적	제한 없음	최대 25ha(7만5,000평)
전시관 건립 경비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국 경비로 국가관 건설	개최국이 국가관을 건축, 참가국에게 유·무상 임대
개최사례	상해('10), 밀라노('15) 두바이('21), 오사카('25 예정)	대전('93), 여수('12), 아스타나('17)

이 중 등록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3대 글로벌 메가이벤트로 일컬어지며, 현재 유치를 추진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도 등록박람회에 해당한다.

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의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 내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다. 유치 성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7번째로 글로벌 3대 국제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유치 성공 시 61조원의 경제효과와 5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현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없는 개최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과정은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 국회 등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Korea One Team’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7-2]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 개최기간 : 2030.5.1~10.31(6개월) ■ 개최장소 : 부산시 북항 일원(343만㎡) ■ 주제 및 부제			
구분	내 용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부제	①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② 인류를 위한 기술 (Technology for Humanity)	③ 돌봄과 나눔의 장 (Platform for Caring and Sh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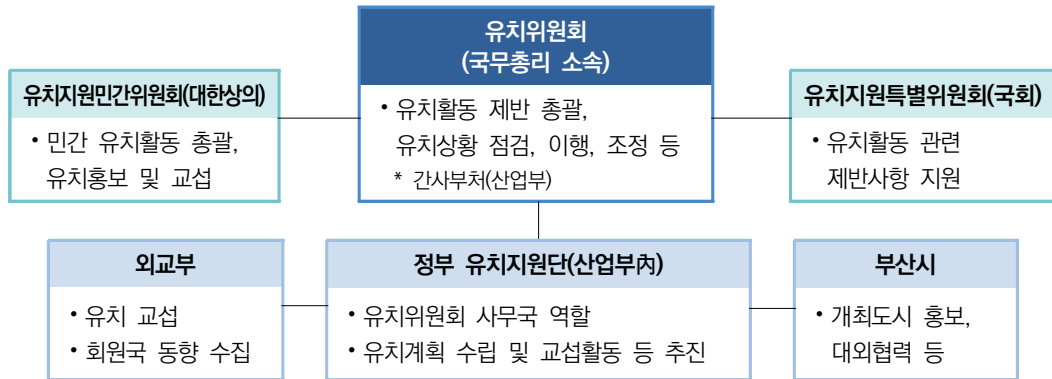
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체계

현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조성하였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범국가적인 유치활동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 유치위원회는 2021년 7월 창립된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유치위원회와 2021년 10월 조직된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민·관 합동으로 확대·개편하며 출범한 국무총리 직속의 정부 위원회 형태이다.

정부 유치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동안 국무총리, 대한상의 회장 주재로 2차례의 유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유치계획서, 대외 교섭활동 등의 유치활동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그림 7-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체계



2. 추진 현황

1 BIE 공식 일정 대응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유치활동에 참여중이다. 2022년 6월 20일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3년 4월 3~7일 현지실사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공식일정을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 경쟁 PT

2·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는 대통령 영상메세지와 함께 국무총리, 미래세대, 기업가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정부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대한민국의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세대의 새로운 플랫폼이자, 행동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공표하여 부산세계박람회의 역할과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며, 오징어게임 등 K-컬처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한국의 창의성, 역동성을 171개 BIE 회원국에 전달하였다. 글로벌 엑스포 전문 컨설턴트는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며 구체적이며 완성도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2) 유치계획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는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능력 및 개최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문서로 BIE 회원국의 지지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유치계획서 작성에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획, 작성 과정을 거쳤다. 기획 과정에서 이전 박람회 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부산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개발하는 등 기본방향을 확정하였으며, 작성은 전문가, 관계기관, 부산시 등이 100회 이상의 협의와 자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유치계획서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최고위급의 지지요청 서한과 함께 2030 부산세계 박람회의 6가지 차별화 포인트, Executive Summary 등을 추가 제시하여 박람회 개최의지와 역량을 강조하였다. 유치계획서는 국무총리 주재 유치위원회에서 확정 후 산업부 1차관이 BIE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여 2022년 9월 7일 기한에 맞춰 제출하였다.

3) 현지실사 준비

BIE 현지실사는 2023년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지실사에서는 정부, 국회, 민간기업 등 주요 인사와의 만남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개최 역량을 어필할 계획이다.

또한, 4차례의 유치계획 프레젠테이션에는 정부 고위급 인사,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엑스포 개최 동기와 주부제, 개최부지, 자원계획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며, 홀로그램과 UAM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연계하여 인상적인 PT를 만들기 되기 위해 노력중이다.

더불어, 실사기간동안 다양한 환영행사와 이벤트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시민 환영행사, 북항(개최부지) 방문, 광안리 불꽃쇼(불거리) 등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을숙도(친환경), 영화의전당(K-Culture), UN기념공원(평화) 등의 장소 방문을 통해 부산엑스포 주부제와 연계된 우리나라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부산시민의 유치 의지와 열망, 부산이 가진 최고의 접근성과 인프라,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가진 부산의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공항 및 기차역 등은 물론, 실사단 이동동선에 맞춰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언론·방송매체 등에 실사단 환영메시지와 준비된 부산엑스포의 메시지를 지속 노출할 것이다.

2 대내외 홍보

유치위원회는 국내 유치 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옥외광고 시안, 기념품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치홍보 활동 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 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판·TV·모니터 등) 등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파리에서 열린 170·171차 BIE 총회를 계기로는 주요 스포츠 옥외광고(센강, 상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현지 언론 인터뷰,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로지, BTS, 조수미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여 개최도시 부산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앞으로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도 연계하여 우리가 가진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도 어필할 계획이다.

3 대외 교섭활동

우리나라는 “Korea One Team” 원칙 하에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대외 유치교섭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와 협업하여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자회의 및 국제행사, 양자 면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유치교섭 활동을 실시하였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유치사절단(특사 등)을 지속 파견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KOTRA 무역관, 해외문화홍보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국을 1:1로 접촉 중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BIE 회원국(171개국) 대부분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교섭 진행했으며, 이를 통한 양자 협력 강화의 효과와 함께 외교 저변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그간 우리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부산에 대한 지지세 확대를 위해 유치교섭을 총력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말(잠정) 173차 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개최지 결정까지 범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171개 BIE 회원국 표심 확보를 위한 교섭활동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4·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심포지엄 등 남은 BIE 일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BIE 대표 상주국가(프랑스, 영국 등)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2021-2022 산업통상자원백서 - 무역통상편 -

- 발행일 2023년 6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 www.motie.go.kr |
- 제 작 파랑기획 044-865-9111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